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재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2008. 8.

국가인권위원회

집 필 진

권중돈(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구팀장)

김철중(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박지영(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교수)

이병만(은천노인복지회장)

이은영(춘천양지마을원장)

- 목 차 -

제 1 부 총 론

제1장 교재개발의 과정	5
I. 교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5
1. 교재개발의 필요성	5
2. 교재개발의 목적	7
II. 교재개발의 방법과 내용	7
1. 교재개발의 방법	7
2.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내용	9
III. 교재의 구성	10
IV. 교재개발의 의의와 한계	11
제2장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12
I.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	12
1. 인권의 개념	12
2. 인권의 영역과 내용	13
3. 인권의 발달	15
4.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8
II. 노인인권의 이해	26
1. 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	26
2.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원칙과 계획	28
III.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34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현황	34
2.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개념	35
3.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인권정책과 규정	38
4. 국내 노인복지시설 인권 관련 규정과 기준	50

제2부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 방안

제1장 건강권	61
I.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61
II.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73
III.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83
제2장 주거권	88
I.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88
II.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97

제3장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109
I. 인격권과 평등권	109
II.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14
III. 경제·노동권	125
제4장 정치·종교·문화생활권	131
I.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131
II. 문화생활권	135
제5장 교류·소통권	140
I.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140
II.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148
III. 시설중사자를 존중할 책임	156
제6장 자기결정권	163
I.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163
II. 서비스 선택 및 변경시의 자기결정권	166
III.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169
IV.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171
V.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173
VI. 이성교재, 성생활 및 기호품 사용의 권리	174
부록 : 1. 세계인권선언	183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87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5
4.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9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248

제 1 부 총 론

제 1 장 교재개발의 과정

제 2 장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제 1 부 총 론>

제 1 장 교재개발의 과정

I. 교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1. 교재개발의 필요성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바로 노인복지제도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의 욕구와 문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호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현재와 같은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문제해결이나 기초 욕구충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인권 관점에서 조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조영황, 2005).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현행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시급히 강화 또는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다양한 정책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해결이다.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의 정의,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신고의무, 응급조치, 보조인선입, 금지행위, 학대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해결에 국한된 것으로 적극적인 노인 인권보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노인 인권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 문제로 간주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내포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들 대책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표적 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대응은 더욱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이 원하지 않는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강제로 방에 가두거나, 노인의 수입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국

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침해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였다. 이에 반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 인권 보장을 2006년도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낮고, 국가가 적극적 의미의 노인 인권 보호대책을 제시한 것이 매우 최근의 일이므로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노인 인권 침해사례 1건이 시설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 인권보호는 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생활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인권 관점(right-based perspective)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생활노인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시설내의 인권 침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시설 운영자, 종사자, 생활노인 등 전체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지닌다(남구현 외, 2005; 김미옥 외, 2006).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6. 5.)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이 원론적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는 관계로 종사자들이 서비스와 실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지침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과 실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생활노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이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기존의 노인 인권에 대한 연구나 지침들이 인권의 영역별로 제시된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과정이 어떠한 인권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별로 인권 영역을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인권 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2. 교재개발의 목적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갖추고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재목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노인 인권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노인 인권의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국내·외의 노인 인권 및 노인복지시설 인권 기준을 검토하여 노인 인권의 개념과 영역을 구체화하고,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노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행동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의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서비스와 실천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종사자의 서비스 영역과 내용에 따라 노인 인권영역을 재분류하여 서비스 영역별로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 또는 실천을 위한 행동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종사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노인의 인권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구성원 모두가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갖출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관점에 근거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II. 교재개발의 방법과 내용

1. 교재개발의 방법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인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국내·외 노인 관련 인권법이나 인권기준을 검토하고, 노인 인권 전문가 회의

를 개최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1) 노인 인권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인 인권관련 선행연구 검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인권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인권기준을 분석하여 인권의 개념, 유형, 발달사와 노인복지시설천과의 관계 등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에 관한 국내·외 인권규정과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이나 행동원칙을 분석하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을 구체화하였다.

2) 노인 인권 전문가 회의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개발에는 노인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연구진,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 노인복지시설 협회의 관계자 등 노인 인권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해결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들 연구진은 필요시에 노인 당사자, 종사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수집하고, 수차례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교재 개발과정에 반영하였다.

3) 노인복지시설 인권 사례 분석

본 교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종사자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권보호 행동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시설이나 종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만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본 교재에서는 시설, 종사자, 동료노인, 가족, 자원봉사자, 방문객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동료노인, 봉사자 등이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원칙을 제시하려 하였다.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교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현장에서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교재 개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노인의 인권 보호 실태와 문제점,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생활노인과 종사자 인권 간의 함수관계,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의 책임성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노인

복지시설 생활노인과 종사자의 인권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내용

본 교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을 구체화하고, 이를 서비스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재분류한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원칙 또는 서비스 지침과 동료 노인간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구체화

본 교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발달 등 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교재의 주된 관심대상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게 적용해야 할 인권의 영역과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마련

노인에 대한 국내·외 인권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 나타난 인권의 영역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고 종사자의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따라 인권영역을 재분류하여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실천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행위 중의 상당 부분이 동료 노인들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이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료 노인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생활노인의 행동지침 마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지금까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인에게 최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다. 또한 노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장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인간봉사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당한 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억압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의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노인들의 서비스 요구 증가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생활노인의 책임과 관련된 지침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 시설운영자 그리고 생활노인들이 따라야 할 행동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교재의 구성

본 교육교재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인권영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각각의 인권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관점 형성과 그에 따른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육교재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과 세부적 권리를 보다 명확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이나 외국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일상생활 영역과 시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내용과 과정을 중심으로 생활노인이 갖는 인권영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 인권침해 사례, 인권 규범 및 기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교육교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 표 1-1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의 구성

구 분	세부 내용
제1부 총론	제1장 교재개발의 과정 1. 교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2. 교재개발의 방법과 내용 3. 교재의 구성 4. 교재개발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1. 인권에 대한 기본이해: 개념, 영역과 내용, 발달,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 노인 인권의 이해: 개념과 영역, 국제원칙과 계획, 3.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시설의 개념과 현황, 인권 개념,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인권 정책과 규정, 국내 인권 관련 규정과 기준
제2부 서비스 영역별 인권 실천 방안	제1장 건강권 1.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2장 주거권 1.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2.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제3장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1. 인격권과 평등권 2.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경제·노동권
	제4장 정치·종교·문화생활권 1.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2. 문화생활권
	제5장 교류·소통권 1.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2.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3.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권리
	제6장 자기결정권 1.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2. 서비스 선택 및 변경시의 자기결정권 3.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4.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5.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6. 이성교제, 성생활 및 기호품 사용의 권리

IV. 교재개발의 의의와 한계

본 교육교재는 인권의 개념과 영역, 국내외 노인 인권 관련 규정,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영역과 세부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인권의 기본안내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과정에 따라 종사자와 동료노인 등이 준수해야 할 생활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인권 민감성을 제고하고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전문화와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구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교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아동, 신체 및 정신장애인,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에 비하여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인권영역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교육교재의 개발 기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포괄성과 선언적 의미가 강한 인권 개념을 구체성과 실천을 증시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와 연계시켜, 생활노인이 갖는 인권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전략이나 행동원칙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연구 시점이 제도 시행 이전이라는 점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예측하여 기술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 행·재정지원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노인 등의 노력만으로 생활노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이 생활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행동원칙을 서비스나 실천에 온전히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제 2 장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I.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은 봉건사회의 몰락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측면과 인간의 해방이라는 보편적 사상의 발전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은 17세기 이후 서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인권이란 용어는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라는 Paine(1771)의 저서 제목과 동의어인 ‘인간의 권리(right of man)’에서 유래된 것이다(안치민, 2003).

이러한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광범위한 기본 가치들(염형국, 2004; 이해원 역, 2005)이 내포되어 있으며, 정태적 개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고 진화하는 역동적 개념이다(Ife, 2001).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고 시대와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내용과 영역이 다양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Sweet, 2003; 이창수 외, 2005; 김중섭, 2001). 또 다른 인권에 대한 관점은 자연법적 전통에 따른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모호함을 비판하면서, 인권 관련 헌장, 선언, 헌법, 협약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로만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Sweet, 2003). 이와 같이 인권 개념은 학자들마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권리(right of man)’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세계인권선언(부록 1 참조)에 의하면 인권은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N 인권센터(UN Center for Human Rights)는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의 개념은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며,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가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으며,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권리

이다(권중돈, 2006).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기존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 권리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엄형국, 2004; 국가인권위원회, 2004. 9.). 첫째,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천부적, 생래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권리 즉,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둘째,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 또는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넷째,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이외에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즉,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 되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2. 인권의 영역과 내용

인권 개념의 포괄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인권의 영역과 세부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권의 영역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1948)과 각종 국제적 인권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권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함으로써 평등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며 강제력이 높은 국제적 조약 형태로 제정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76)(부록 2 참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1976)(부록 3참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

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큰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토대로 인권의 영역과 세부적인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 표 2-1 > 국제 인권규정에 나타난 인권의 영역과 내용

인권영역	하위영역	세부 항목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명예, 명성, 정보통신, 통신, 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 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 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 향유권 포함), 인권질서 추구권
법절차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 자료 : 이창수 외(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망라한 기본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 한정된 기본권 조항으로 모든 인권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권을 결국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 뿐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제반 법률에서 인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인권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은 아니며, 이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인권은 인권사상

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은 인류가 인권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기본권은 결국 인권의 구체적 구현 형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기타의 법률에서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명기한 기본권은 ① 일반적 기본권(행복추구권, 평등권), ② 자유권적 기본권, ③ 사회권적 기본권, ④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그 영역을 분류할 수 있다(최용기, 1999).

< 표 2-2 > 법률에 나타난 인권영역

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평등권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불법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불가침, 거주 및 이전의 자유, 통신의 불가침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개인적/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보험,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문화권)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근로자의 3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모성의 보건상의 보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의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청구권	

* 자료: 최용기(1999). 법과 인권. 서울: 대명출판사.

3. 인권의 발달

인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정절에 달했던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권의 개념 역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인권의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18세기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집합적 권리로서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며 보편적 욕구 즉, 평화와

발전에 대한 권리와 파괴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을 발달과정을 Vasak은 인권의 3세대 인권론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이창수 외, 2005: 김미옥 외, 2006). Vasak은 제1세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을 연대권으로 분류하고,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로 제2, 3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 Wronka(1992), Ife(2000) 등도 인권을 3세대에 걸쳐 발전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인권의 3세대에 걸친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세대 인권 : 시민권과 정치권

1세대 인권의 발달은 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세대 인권은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정한 재판과 법 앞의 평등, 공민권, 사생활의 보장, 자기표현의 권리,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의 권리, 시민생활과 사회활동에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공공안전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합법적 사업을 보호받을 권리, 협박·희롱·고문·강요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Ife, 2000). 세계인권선언에서 1세대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12조),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의견·표현의 자유(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등이 있다.

1세대 인권은 시민권과 정치권으로 지칭되는 것으로, UN의 세계인권선언은 공정한 대우,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권리들은 소극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이혜원 역, 2005). 즉, 1세대 인권은 인권침해의 예방과 권리의 보호 또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세대 인권은 흔히 자연권(natural rights) 즉,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 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1세대 인권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시하지 않으며, 경제적 저개발 국가와 빈곤국의 국민들은 인권의 협소한 개념이 개인주의 이념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서구의 시각이며, 이는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이 없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미옥 외, 2006).

2) 2세대 인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세대 인권은 18세기 자유주의가 아니라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리고 여타의 집단주의 운동에 그 지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획득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1세대 인권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바꾸려하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아동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인권상황이 지속되었다. 즉, 자유는 확보하였지만,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토대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 개념과 실천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인권운동사랑방, 2000).

이러한 1세대 인권이 지닌 한계로 인해 인권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시민권과 정치권과 아울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동일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결국 2세대 인권은 국가가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로 불린다. 국가는 1세대 인권처럼 단지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며,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Ife, 2000; 이해원 역, 2005).

2세대 인권에 포함되는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23조),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등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3) 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 또는 연대의 권리

3세대 인권은 20세기 들어서야 인권으로 인식된 것으로, 1·2세대 인권이 개인적 수준의 권리라고 한다면 3세대 인권은 집단 수준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Ife, 2000). 인권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서구 사회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인권을 개념화하였으므로, 오늘날 인권 개념에는 서구적 인권관점과 가치가 짙게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권 개념화와 인권보장의 과정에서 서구 사회는 제3세계의 식민지화를 통한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인권을 신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제3세계의 대다수 국민은 억압과 착취를 경험했고,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서 오늘날 제3세계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권력과 자원, 부(富)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권 개념화에 있어서 서구적 관점을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권을 옹호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Ife, 2000).

제3세대 인권에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인권 문제들이 한 나라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 국가들의 단결과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3세대 인권은 바로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

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제3세대 인권의 내용들로는 자결권(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주의 자원·과학·기술·정보의 발전과 문화적 전통·유적·기념물 등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김미옥 외, 2006).

이와 같은 제3세대 인권은 집단수준에서 정의될 때만 의미가 통하는 권리들로서, 제3세대 인권의 실현으로 인해 개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 국민, 국가, 사회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인권 영역이다. 제3세대 인권은 한 국가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개발에 관한 권리,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와 같은 환경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 세계 국가들 간에도 적용되는 인권이다.

하지만 제3세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조약과 협정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또한 초보적 형태에 머물러 있다(Ife, 2000; 이해원 역, 2005). 그러므로 제3세대 인권은 인권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논쟁과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앞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기제들이 마련되어 갈 것이다.

4.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1) 인권 보장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인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 차별, 고독과 소외, 질병, 노동, 교육, 자유, 학대와 폭력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국제사회사업가협회(IFSW)(2002)는 인권이 사회복지의 심장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권훈련 매뉴얼(Human Rights Training Manual)을 제작하였다. 사회복지의 인도주의와 민주적 이상에서 태어난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 및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단과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신적 문제를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을 이 매뉴얼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윤리, 이론 및 서비스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민감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때 사회복지실천은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혜원 역, 2005).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이자 원조관계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에는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에 국제사회사업가협회의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IFSW, 2002; 김미옥 외, 2006).

< 표 2-3 > 사회복지실천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원칙

- 모든 사람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도덕적 배려로 정당화된다.
- 모든 개인은 자립(self-fulfillment)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인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어떠한 형태의 사회이든지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 없이 가장 최선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직은 인권전문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전문가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기본적인 사회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확실하고도 충분히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가 인권에 관하여 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하며, 인권 민감성을 갖추고 인권관점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자원을 사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때 사회복지실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인권보장은 사회복지실천과정을 통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은 인권에 민감할수록 더욱 전문적인 수준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인권 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

인권이 3세대에 걸쳐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의 강조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Ife, 2000). 특히 1세대의 인권이 주로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고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장

이었다면, 2세대 더 나아가 3세대 인권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인권 영역이다. 자유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1세대 인권이 발전하는 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과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옹호활동, 교도소나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난민 보호소와 난민노동 등의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경제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2세대 인권의 발달과정에서는 교육권, 주택권, 건강권, 직업권, 사회보장권 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들이 확충되었으며,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정이 인권보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집단적 권리와 연대를 통한 권리를 강조하는 3세대 인권의 발달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Ife, 2000). 더 나아가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개인 수준의 개입, 옹호활동, 조직 수준의 실천, 정책개발, 조사연구와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실천의 준거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한다.

< 표 2-4 > 인권의 발전과 사회복지실천

구 분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명 칭	시민권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기 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이념
인권내용	투표, 집회,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소득,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행위자	법률상담소, 인권감시단, 난민사업, 국제사면위원회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의 시장복지	경제개발기구, 지역사회개발계획, 그린피스 등
사회복지	옹호, 난민사업, 보호시설 종사자, 교도소 개혁 등	직접적 서비스, 복지국가의 운영, 정책개발과 옹호, 조사연구	지역사회개발(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개인 및 정신적 개발)

영국의 인권법에 제시된 생명권, 비인도적 또는 비하적인 처우와 처벌 금지, 자유권과 안전권,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결혼과 가족을 찾을 권리, 사유재산 및 소유의 평화로운 향유권과 관련된 조항은 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김미옥 외, 2006). 그리고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이론과 응용지식이 기반으로 두어야 할 원리로서 인권을 채택하고, 이를 정책선언(policy statements)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5 >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인권 관련 정책선언

- 사회복지사는 세계인권선언뿐 아니라 국제연합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해 정부의 비준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권리 및 아동노동, 아동매춘과 같은 아동착취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공공과 전문직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해야 하며, 한 사람의 권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정책과 실천, 편견적 태도, 증오, 인내심 없는 행동들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 자격기준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이행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정부 및 비영리 조직들, 기타 지역사회 의 여러 집단과 함께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강화시키도록 주도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인간개발과 인권의 발전을 위해 국제연합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내 기관 또는 정부 등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기반을 두어 실천해야 한다.
- 인권을 대표하여 옹호하는 사회복지사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위협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욕구모델, 사회정의모델, 시민권모델 등을 주로 활용해왔으며, 이들 모델은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권익옹호, 역량강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역량강화모델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권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강점관점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해주며, 이를 통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고양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도전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역량강화모델과 유사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이윤화, 2000; 양옥경 외, 2004). 역량강화모델은 강점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료의식을 갖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권중돈 외, 1998).

하지만 Ife(2006)는 역량강화접근이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right-based approach)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역량강화접근의 '역량'과 인권관점의 '인권'은 개념 규정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서로 다르다. 역량강화접근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거나 '역량을 빼앗긴'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권리가 있음을 인

지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즉, 역량강화접근은 개인을 '무언가(역량)가 부족한 존재'로 보는 반면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은 개인을 '무언가(권리)를 가진 존재'로 본다. Ife(2006)는 두 접근방식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이며, 사회복지사들은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을 채택하더라도 역량강화접근 방식을 버릴 필요는 없으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 상호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기존의 모델들을 폐기하거나 배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모델들을 확장시키며, 사회복지실천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정당성에 강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Ife, 2001).

인권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개인이 갖는 안전과 존엄, 경제적 기회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Ife, 2000; Skegg, 2000; 김미옥 외, 2006). 첫째, 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내와 국제적 영역 모두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인권관점은 사회복지에 내재된 욕구기반모델의 약점 즉, 가부장적이며 자선적인 시각과 사회정의 기반 모델의 약점 즉, 강제적 재분배의 암시 등에 대한 비판을 보완한다. 셋째,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접근은 자선(charity)보다는 자격(entitlement)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 틀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인권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은 아직 이론적인 틀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경험적 실천이나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중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은 이념적 가치관 및 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Ife, 2000).

첫째,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현대사회를 혼동되고 무질서하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 계획이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통제와 질서를 강요하는 고전적인 계몽주의나 가부장적 모더니즘 해결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둘째,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일종의 집합주의 이념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에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 모두 하나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권력과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클라이언트나 슈퍼비전 등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용어는 다른 용어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개인에 의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을 더 중요시 하며, 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이용자의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셋째, 인권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인권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천과정 자체에서 인권원칙이 지켜지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 즉 동료, 경영자, 지역 주민, 학생, 기타 전문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인권기반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거나, 면접과 서비스 계획, 프로그램 참여 등 모든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3) 노인복지실천에서의 인권관점

인권분야에서는 법률적, 제도적 접근 이외에 실제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Ife, 2006). 그러나 노인복지는 노인의 인권 문제의 해결과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는 노인복지 실천이 곧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실천행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복지실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담, 옹호나 지지, 평생교육, 지역복지활동 등 모든 것이 인권 증진을 위한 원조행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실천에 인권 관점을 도입한다고 하여 노인복지종사자에게 또 다른 역할이나 업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던 사고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노인복지 종사자에게 요구된다. 물론 사고의 전환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노인복지실천은 늘 노인의 문제와 욕구의 뒤꿈치를 쫓아가는 복지지체현상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권중돈, 2006). 인권관점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만이 노인 문제의 예방과 기초 욕구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권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교육교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고,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같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실천에 인권관점을 어떻게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인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급여나 서비스는 법과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인복지실천에서 인권관점에 입각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예: 차별금지법,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과 정비(예: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정), 문제해결 위주의 정책방향에서 인권관점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으로의 전환(예: 성인 보호 프로그램, 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대나 차별과 같은 노인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개입하는 소극적 인권보호에서 인권 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강화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노인 인권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급여액과 수가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만 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양성교육 과정이 단기양성교육과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 재정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화, 생활노인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급여 수준의 저하 등과 같은 종사자의 후생복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또는 시설간의 시설환경이나 서비스의 편차로 인한 차별적 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생활노인의 인권증진을 방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적 한계가 보완되어야만 종사자와 동료노인 등의 생활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며, 본 교재에서 제시하는 실천원칙들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사회복지대학 교육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정도에 불과하며 이 역시 필수과목이 아닌 관계로 노인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노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복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노인복지종사자들 대부분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교육훈련 기회를 갖는다고 하여도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사회복지 대학 교육과 노인복지 현장에서의 현임훈련의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노인복지종사자들은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약자 또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서비스의 객체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밝은 노후, 2004). 이와 같이 객체로서의 노인관을 지니게 될 경우 노인복지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는 문제해결이나 기초육구 충족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행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편의성과 효율성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실천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복지 종사자들은 노인들에게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며,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권중돈, 2002).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복지실천에 인권관점이 도입·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대학교육과 노인복지 종사자를 위한 현임훈련에서의 인권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본 교재가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시민 홍보 강화

현 세대의 노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자제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와 아울러 현 세대의 노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실시하고, 노인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지역자원이나 복지정보들이 상세히 담긴 노인 인권가이드북(예: Senior's Right)(Sember, 2004)을 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인권 의식의 강화에 기여하고 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노인이나 노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노인 인권이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4) 권리에 근거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복지실천에서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욕구보다는 권리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은 욕구 중심접근방법(needs-based approach)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인의 미충족 욕구, 문제나 결함을 찾아내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었다. 욕구중심 접근방법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를 결정하고,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인이 느끼는 욕구(felt need)'가 아닌 '전문가가 판단한 욕구(they need)'에 근거한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노인의 진정한 욕구나 권리는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노인요양시설이 집은 집이되 집이 아니다', '시설에서 실시한 욕구사정과 케어플랜(care plan)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테러의 도구(instrument of terror)'라고 표현한 시설 생활노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Kane, 2001; Tulloch, 197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노인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권관점에 기반한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의 문제나 결함을 해결하고 노인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노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실천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의 출발점이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욕구사정'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5) 노인 권익옹호사업의 강화와 인권 네트워크 구축

노인복지 종사자는 노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노인들의 권리 요구가 정부의 정책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과 정부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노인 권익옹호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 지킴이 프로그램, 노인권익옹호센터, 독거노인을 비롯한 위험군 노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 단위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민단체, 노인복지단체나 협회, 법조계 등과의 노인 인권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6) 노인복지 서비스 매뉴얼 개발

노인 인권보호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서비스, 급여 등은 서비스 공급자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방향과 내용,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 종사자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 경력과 업무능력, 업무 인수인계 절차 등에 따라서도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종사자 요인에 의해 노인 인권보호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과정에서의 실무원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I. 노인 인권의 이해

1. 노인 인권의 개념과 영역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 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다. 노인의 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석준, 2001)이며, 노인 인간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박수천, 2005)이다. 이와 같은 노인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추상적이며,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만을 위한 국제인권선언이나 인권조약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기준, 원칙 또는 행동원칙이 있다. 1982년 유엔총회에서 인준한 국제고령화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는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분야의 62가지 정책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1991년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서는 노인의 존엄성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인은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4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2년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부록 4 참조)에서는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를 위하여 117개의 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2).

1969년 백악관 노인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노인헌장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9가지로 명기하고 있다. 노인헌장에서는 노인이 '①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②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노후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④ 여가·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⑤ 노후의 필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⑥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⑧ 생존이나 사망 시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⑨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권중돈, 2006).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 2조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3가지 권리 보장을 노인 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밝은 노후(2004)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신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용, 노인이 가치와 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권리영역을 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라는 6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미혜(1999) 역시 위와 같은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①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②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④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⑤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는 8가지를 노인 인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혜경(2001)은 노인들이 갖는 복지권에 ① 의식주 보장의 권리, ② 수발청구권,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보장의 권리, ④ 노동과 적당한 소득보장의 권리, ⑤ 재산상의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원칙, 법과 지침, 선행연구에 따라 노인인권의 내용과 영역이 각기 상이하긴 하지만, 노인의 인권 역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도 노인 인권의 영역을 ①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의 일반적 기본권, ② 신체적 자유권과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문화·종교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③ 건강권,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등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④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만 본 교육교재를 활용하는 주요 대상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 영역의 분류가 아닌 서비스 영역분류에 따라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정치·종교·문화생활권, 교류 및 소통권, 자기결정권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서비스 영역별로 해당하는 인권 영역과 인권의 세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원칙과 계획

1)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계획의 역사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이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노인의 권리 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서는 사회권이 중심이 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박수천, 2005).

1980년대 들어와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연합의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1982년 국제연합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국제적인 기준이며, 건강과 영양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0).

1990년에는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자립(Independence) 등 5개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또한 2002년 채택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는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를 위하여 117개의 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2).

한편 사회보장 측면의 노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국제적인 활동은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며, 1967년에는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128호 협약'으로 노령연금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인권보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OECD는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을 근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노인 인권증진에 기여하였으며, 199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7대 원칙'을 제시하였다(박수천, 2005, 이석준, 2001).

< 표 2-6 >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표

년도	제목	주요내용
1948	UN 노인의 권리선언	안심, 안전, 존경 등 10가지 권리 제시
1952	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가 제시한 9가지의 사회적 위험에 노령보장이 포함됨
1967	ILO 장애·노령·유족연금에 관한 128조 협약	노령연금지침제공, 국가별 특성반영
1982	UN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 노인인권의 정책·사업의 실천적 지침 제공(62항 권고), NGO의 자발적 활동 장려
1991	노인을 위한 UN원칙	국제행동계획 중 인도적 측면 강조, 5개 원칙(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18개 권리 명시
1998	OECD 고령사회대비 7대원칙	퇴직관련정책; 공공부채, 퇴직 후 소득, 조기 퇴직, 금융시장과 연금제도, 생산인력, 보건정책; 시설보호 대 재가보호 총괄; 전략적 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 자료 : 박수천(2005).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2004). 인권백서, 340.

2) 유엔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비엔나 계획

이 계획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국제적인 행동원칙이다. 이 계획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되고 같은 해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준이 되었으며, 흔히 '비엔나(Vienna) 계획' 또는 '국제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하위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가 권고되어 있다.

3)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을 5가지 주요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노인은 소득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스스로의 힘을 통해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은 그들의 존엄성, 신념, 욕구 및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 받아야 하며, 그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주거시설 또는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라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언급이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UN원칙은 노인의 존엄성 보호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여 각종의 학대로부터 노인보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자신이 집단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7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자립 (Independ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p>참여 (Particip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 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p>보호 (Ca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p>자아실현 (Self-fulfill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존엄 (Dig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4)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 행동계획은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2002년 유엔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행동계획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서문, 행동을 위한 권고, 이행과 후속조치라는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등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행동지침을 권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2).

< 표 2-8 >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주요내용(부록 4 참조)

<p>I. 서 문</p> <p>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b)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세우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노후의 달성(c)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기(d) 노인들이 단일한 동질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후에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과 참여와 같은 것은 물론, 전 생애를 통한 개인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를 위한 기회 제공(e)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f) 특히,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평등 달성(g) 사회개발을 위하여 가정, 세대간 상호의존,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h)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i) 국제행동계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및 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 촉진(j)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술의 가능성을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k)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에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II. 행동을 위한 권고

A. 주요 방향 I: 노인과 발전

- 과제 1 : 사회와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
 - 목표 1 :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기여의 인식 행동들
 - 목표 2 :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행동들
- 과제 2 : 근로와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
 - 목표 1 :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 행동들
- 과제 3 :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 목표 1 :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 행동들
 - 목표 2 :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 행동들
 - 목표 3 : 노인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행동들
- 과제 4 : 지식,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
 - 목표 1 : 직업 지도 및 배치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전 생애를 통한 기회 균등 행동들
 - 목표 2 :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험의 이익을 인식하여 모든 연령계층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 행동들
- 과제 5 : 세대간 연대성
 - 목표 1 :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 행동들
- 과제 6 : 빈곤 해소
 - 목표 1 : 노인들의 빈곤 감소 행동들
- 과제 7 :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 목표 1 :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금, 장애보험과 건강급여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보호(보장)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증진 행동들
 - 목표 2 :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한 최저소득을 제공 행동들
- 과제 8 : 긴급상황
 - 목표 1 : 자연재해와 기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 기간과 그 이후 식량, 피난처,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 행동들
 - 목표 2 :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재건에 노인들의 기여제고 행동들

B. 주요 방향 II: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 과제 1 :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 목표 1 : 질병의 위험과 그 결과로 노년에 잠재적 의존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영향요소 감축 행동들
 - 목표 2 : 노인질병 예방정책 개발 행동들
 - 목표 3 :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 행동들

- 과제 2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 목표 1 :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또는 언어적 장애를 포함한 여타 이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철폐 행동들
 - 목표 2 : 노인욕구에 대응하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강화 및 그 과정에서의 노인참여 증진 행동들
 - 목표 3 : 노인욕구를 만족시키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 행동들
 - 목표 4 : 노인의 개발참여 및 일차보건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치료 서비스 강화 행동들
 - 과제 3 : 노인과 에이즈
 - 목표 1 : 감염노인과 감염되거나 생존한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향상 행동들
 - 목표 2 : 에이즈 감염노인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행동들
 - 목표 3 :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를 증진하고 인식하는 행동들
 - 과제 4 : 보호 제공자와 보건전문가의 훈련
 - 목표 1 : 노인 욕구와 관련된 보건전문가와 준 전문가들을 위한 향상된 정보와 훈련 제공 행동들
 - 과제 5 : 노인들의 정신건강 욕구
 - 목표 1 :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서비스와 관리 제공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보호서비스 개발 행동들
 - 과제 6 : 노인과 장애
 - 목표 1 : 장애노인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한 기능적 능력 유지 및 완전한 참여 증진 행동들
- C. 주요 방향 III :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 과제 1 : 주택과 주거환경
 - 목표 1 : 노인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가능한 주택선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화 증진 행동들
 - 목표 2 : 특히 장애노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 설계를 증진하는 행동들
 - 목표 3 :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증진 행동들
 - 과제 2 : 보호 및 보호제공자 지원
 - 목표 1 : 노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 제공 행동들
 - 목표 2 :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보호자 역할 지원 행동들
 - 과제 3 : 유기, 학대 및 폭력
 - 목표 1 : 노인에게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행동들
 - 목표 2 :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행동들
 - 과제 4 : 노화의 이미지
 - 목표 1: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 중요한 공헌에 대한 공중의 인식 향상 행동들

Ⅲ.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현황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 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현외성 외, 2000).

노인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81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뿐이었다. 1997년 노인복지법 5차 개정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2004년 10차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7년 노인복지법 12차 개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5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맞추어 무료, 실비, 유료라는 시설생활 비용 수납 여부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세부 유형을 단순화하였다.

< 표 2-9 > 입소생활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종류	시 설	설 치 목 적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재가 노인 복지 기관	주·야간보호 서비스기관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기관
	단기보호 서비스기관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6).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본 교재에서의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 21조에 의거한 노인복지시설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단기보호시설을 지칭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은 제시하면 앞의 <표 2-9>와 같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기원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이 많고 직위가 높은 문신들에게 토지와 노비 등을 주어 이들을 예우했던 기로소(耆老所)에서 찾을 수 있다(박차상 외, 2002). 현대적 의미의 양로시설로는 1921년 서울 동자동에 설치된 천주교양로원이 최초의 시설이며, 1927년 서울 청운동에 설치된 청운양로원이 두 번째이며, 그 이후 해방될 때까지 경북 칠곡의 혜생양로원, 전북 김제의 애린양로원, 부산의 신망애양로원, 경기 의정부의 경기자혜원 등 모두 6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 시기에 전쟁고아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늘어날 때 양로시설도 함께 늘어나 1956년에는 전국의 양로원 수가 3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변동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 1980년까지도 양로시설은 48개소에 불과하였으며 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수도 3,158명으로 5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차홍봉, 2004).

이후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270개소, 노인복지주택 12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543개소, 노인전문병원 40개소로, 총 86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3만 7천여 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의 수는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표 2-10 >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구분	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시설수(개소)	865	282	270	12	583	543	40
입소인원(명)	37,722	9293	8,013	1,280	28,429	24,185	4,244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6).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개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이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권의 보장이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을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생물학적 생존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적 개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2002. 12.)는 노인요양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권의 하위영역으로는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을 포함시키고, 사회권의 하위영역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적 지원, 방임, 자기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영역 및 하위영역별 세부 인권항목은 다음의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2-11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정의

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강제 노동	
		강제 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시설입소나 전원 결정에의 노인 참여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시설이용규범, 생활규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 정보 유출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의 사용	
	정신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의 사용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결정권	
		시설이 종교활동 참여여부 결정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목욕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정서적 지원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리고 옷을 벗기고 입힘	
		노인들 간의 통합	
방 임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자기방임		노인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거부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노인 인권 관련 국제행동계획이나 원칙과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에서는 생활노인이 갖는 권리를 11가지로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5.)

< 표 2-12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p>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6.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본 교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11가지 권리와 노인 인권의 영역 및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 또는

업무영역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정치·종교·문화생활권, 교류 및 소통권, 자기결정권이라는 7가지 인권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인권 영역에 속하는 하위영역과 세부적인 권리 또는 서비스 관련 내용은 다음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2-13 > 본 교재에서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건강권	1.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ADL훈련 및 기타 재활요법 등
	2.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복, 청소, 목욕, 대소변, 양치, 용모단장, 전염병, 식중독 등
	3.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급식, 간식, 특별식 등
주거권	1.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의 쾌적성,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 집단활동실, 생활실 환경 등
	2.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실종, 시설내 안전사고, 화재 등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1. 인격권과 평등권	평등, 행복추구 등
	2.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등
	3. 경제·노동권	개인금품의 관리, 유품품 처리, 강제노동의 금지,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1.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투표참여, 종교활동 참여 등
	2. 문화생활권	음악,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생활 참여 등
교류·소통권	1.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외출, 외박, 외부활동참여, 면회, 서비스정보 등
	2. 동료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동료노인의 사생활보호, 존엄한 대우, 집단따돌림, 폭언과 폭행 등
	3.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권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
자기결정권	1.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와 시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규범 설명 등
	2. 서비스 선택·변경시의 자기결정권	요양급여 정보, 서비스 정보제공과 선택, 서비스 변경, 가족통지 등
	3.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우편, 전화, 인터넷 이용 등
	4.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생활노인의 개인 정보 보호, 생활실환경 등
	5. 생활고충 및 불평 처리에 관한 권리	생활상담, 사례관리, 불평 및 건의절차 등
	6.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 권리	성생활, 이성교제, 음주, 흡연 등

3.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인권정책과 규정

1)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 성인보호서비스법, 노인복지법, 형법, 가정폭력방지법, 후견인 보호법, 시설학대법, 주(州) 장기요양부즈맨 프로그램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대

표적인 정책들로는 성인보호서비스, 정신건강사정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legal hotline or legal assistance developer), 장기 옴부즈맨 프로그램, 게이트키퍼(gate keeper program) 등이 있다. 장기요양시설 생활노인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장기 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LTCOP)이 가장 대표적이다.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노인법 Title VIII chapter 3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설의 불만사항 및 노인학대사례를 조사하고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방정부가 60%, 주정부가 25%, 지역사회가 15% 정도를 부담한다. 2000년 현재 591개의 지역사무소에서 15,497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급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며, 옴부즈맨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표 2-14>와 같다.

< 표 2-14 > 미국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의 역할과 책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접수된 불만사항을 조사, 해결한다. ○ 거주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부기관에 생활노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생활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법적, 기타 해결책을 강구한다. ○ 생활노인의 건강, 안전, 복지, 권리에 관련된 법과 규정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며 개정을 제안한다. ○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이슈와 관심사를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법, 규정, 정책, 조치사항에 대한 대중의 논평을 촉진시킨다.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 생활노인의 안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노인 및 가족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생활노인의 삶의 질과 케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창한다. |
|---|

(2) 일본

일본의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에 일부 노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지만, 2005년 11월 '고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 부양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설 생활노인의 학대에 대처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권리옹호사업, 재산상담기관, 고령자 학대방지위원회의 상담전화(help line),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전화(support line), 생명의 전화 등의 전화상담, 노인 성추행방지 프로그램, 후견인 지원센터, 성년후견인 제도(노인 재산의 관리나 수발, 신상감호에 관한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활용하는 제도), 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다.

일본의 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1997년 시작되었으며, 옴부즈맨 팀은 변호사가 2명, 대학의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4명, 시민이 2명, 사법서사가 1명, 전문직이 1명으로 총 10명으

로 구성된다. 이들 옴부즈맨은 시설에서의 학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시설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을 제언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특히 생활노인과 종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함)을 하며, 매월 옴부즈맨이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가족간담회나 직원회의에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시설에서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구속이 ①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증상의 진행과 같은 신체적 폐해, ② 노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가중과 같은 정신적 폐해, ③ 개호보험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 초래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구속 제로(zero) 작전을 펼친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일시적으로 환자의 신체를 속박하거나 행동을 억제하는 신체적 구속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산하에 '신체구속 제로 작전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체구속 제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호(care)의 질적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신체구속이 부당하거나 구속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생활노인과 가족은 그 의사를 시설 측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요양시설등록법(1991), 요양시설규제법(1984), 사회사업법(1968) 등에 근거하여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명기하고, Action on Elder Abuse(AEA; 노인학대 전국조직), Better Government for Older People(BGOP), Older People's Advisory Group(OPAG) 등을 통해 노인 인권증진과 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ction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 연구, 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 피학대 노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호사업, 무료 전화상담(elder abuse help line)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호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전화(helpline)로 신고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보호,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No Secret 프로그램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노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내 노인 보건복지, 노인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multi-agency)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4)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형법, 성인보호법, 성인후견인법, 요양시설법, 지역사회 보호시설법 등에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전국노인자문위원회, 국가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re on Elder Abuse) 등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후견인제도, 성인보호프로그램(성인보호 입법, 건강 및 사회서비스), 학대 의무신고제, 노인권익옹호센터(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 통합적 다분야 팀접근(옹호, 건강보호 및 사회서비스 조정 등), 위기의 전화, 응급서비스,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옴부즈맨제도(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 법률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심리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호주

호주에서는 노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 인권의 침해보다는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 인권관련 조직은 노인보호자문위원회, 노인보호 고충해결기구(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Scheme), 노인보호 사정팀(Aged Care Assessment Team) 등이 있다. 그리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보호 사정팀(노인학대에 대한 사정, 시설간 입소 의뢰, 사례조정,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활동 등), 시설별 고충해결 절차(internal complaint resolution) 운영 의무화, 노인보호 고충해결위원회(The 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Committees)가 있다. 특히 노인보호 고충해결위원회에서는 시설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충사항을 전화(1800 550 552)로 신고, 접수하면, 권리 침해사례와 관련하여 협상, 중재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노인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결정하고, 협상이나 중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 의뢰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및 지침

(1) 미국 장기요양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인권보호 원칙

미국의 노인법 제11조의 근거하여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호시설 옴부즈맨(Ombudsman) 프로그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표 2-15 > 미국 장기요양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화학적(chemical) 물리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평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로이 다른 거주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인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개인적, 의료적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 차별 없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 입소 이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퇴소나 전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받을 권리

* 자료: http://www.aoa.gov/eldfam/Elder_Rights/LTC/LTC.asp.

미국은 공법 100-203의 일부로 장기요양시설(Nursing Homes) 생활노인 인권보호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표 2-16 > 미국 장기요양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원칙

<p>가. 권리의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또한 시설입소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다.○ 혼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신의 권리가 주법에 의하여 대리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의하여 행사된다. <p>A) 권리와 서비스의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문서를 통하여 입소노인의 권리와 입소노인의 행위와 의무를 규정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공지 받아야 한다.○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와 실험적 연구에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시설시책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미리 제시할 권리가 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지 되어야 한다.○ 시설의 서비스와 비용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담당의사와의 접촉방법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담당의사와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 입소노인의 상태 및 치료방법의 변화 또는 전원과 퇴소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생활실이나 생활실 공유 노인에 변화가 있을 시 노인과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이 요청하는 거주실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대리자나 관심 있는 가족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최근자료로 유지하여야 한다.○ 입소노인으로서의 노인의 권리에 있어 변화가 있는 경우 노인과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B) 소지금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시설에 개인적인 자금을 맡길 필요는 없다.○ 시설에 맡겨진 노인의 자금은 노인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노인의 돈이 시설의 자금과 섞여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재정적인 상태보고를 분기별로 또한 노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잔여 부동산은 상속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시설의 모든 자금은 채권(security bond)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p>C) 자유선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보호와 치료, 관련된 변화에 참여하고 관련 변화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D) 사생활 확보

- 개인적 의료적 기록에 대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케어, 의료적 치료, 전화사용, 방문, 편지, 가족이나 입소노인 그룹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다.
- 전원과 퇴소시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은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E) 불평

- 차별이나 징계의 두려움 없이 케어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 불평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F) 조사결과와 검토

- 조사결과와 교정계획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와 교정계획 또는 그것들의 위치를 알리는 공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지되어야 한다.
- 불평등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G) 노동

- 시설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행해진 모든 서비스는 케어 계획안에 일의 성격과 그 배상금을 포함하여 잘 기록되어야 한다.

H) 우편

- 우편물을 즉각적으로 발송할 수 있고,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우편을 받아볼 수 있으며, 필기도구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I) 접근과 방문권

- 방문객을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에의 접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설은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J) 전화

- 사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K) 개인적인 소지품

- 공간이 허락하는 한 개인적인 소지품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가 있다.

L) 기혼자는 방을 공유할 수 있다.

M) 약물의 자기관리

- 다학제간 팀에 의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을 자기 관리 할 권리가 있다.

나. 입소, 전원, 퇴소관련 권리

A) 전원과 퇴소

-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또는 퇴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전원 또는 퇴소의 이유가 통보되어야 한다.
- 건강 또는 안전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전원 또는 퇴소가 통보되어야 한다.
- 전원 또는 퇴소 시에는 적절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옹호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한 전원 또는 퇴소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B) 병상 보유(bed-hold) 정책과 재입소에 대한 통보

- 노인과 그의 가족은 전원이나 그 전에 시설이나 주 정부의 병상보유(bed-hold) 정책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받아야 한다.
- 병상보유(bed-hold)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입소에 대한 명문화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전원, 퇴소, 서비스에 대하여 주거노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입소시 명문화된 통보가 있는 경우, 비의료급여 생활노인에 대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C) 입소원칙

- 입소나 지속적인 거주를 조건으로 하여 제3자에게 현금제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 시설이 입소노인에게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거나 청구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개인적인 부채를 발생시키기 않는 범위에서 지불에 대한 법적인 재정적 접근성을 갖는다.
- 의료보호 대상 입소노인에게 요청된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시설 입소나 지속적인 거주 조건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기부를 받는다.

다. 입소노인의 행위와 시설관계

A) 제한

- 규율이나 편리를 위하여 또는 의료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육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B) 학대

- 언어, 성, 육체적, 정신적 학대, 육체적인 벌, 비자발적인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다.

C) 직원

- 시설은 학대, 방임, 부당한 대우, 재산에 대한 적절한 전용으로부터 입소노인을 보호하는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 대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위반이 제기된 경우는 시설은 적절한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기된 위반의 경우는 심층적으로 조사되고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D) 삶의 질

○ 시설은 입소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케어 하여야 한다.

E) 존엄성

○ 입소노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입소노인을 존엄성과 존경을 갖고 대우하여야 한다.

F) 자기결정권

- 입소노인은 자신의 활동, 스케줄, 보건적 케어와 시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 선택에 의하여 방문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
- 선택에 의하여 집단을 조직하거나 참여 할 수 있다.
- 가족은 다른 가족과 함께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 시설은 집단모임을 위한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직원이나 방문객은 집단이 초대하는 경우 집단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 시설은 집단의 요구사항이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여야 한다.

G) 다른 활동에의 참여

○ 다른 입소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H) 욕구의 수용

- 입소노인으로서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생활실이나 공동 입소노인의 변경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 입소노인에게 중요한 시설내의 삶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가 있다.

I) 활동

○ 시설은 입소노인의 욕구와 관심사에 대응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J) 사회적 서비스

○ 입소노인의 안녕을 유지 또는 고양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K) 환경

- 가능한 한 입소노인이 개인적인 소유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사서비스와 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깨끗한 목욕과 침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잘 유지 되어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자료: http://www.aoa.gov/prof/international/resources/resources_rights_care_01.asp.

(2) 호주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현장과 윤리강령

호주 정부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현장(The 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17 > 호주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현장

<p>(1) 시설 입소노인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시민, 법적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권리 ○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케어를 제공받을 권리 ○ 건강상태와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착취, 학대, 방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차별이나 낙인을 당하지 않고, 케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부적절한 제한 없이 시설 내외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권리 ○ 개별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고 대우받으며, 개인적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존중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종교적 활동을 유지하고,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두려움, 비난, 또는 제한을 받지 않고 타인과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개인적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책임의 인식을 포함한 개인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어떤 행동이 입소노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지라도, 이러한 행동을 예방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됨 ○ 개인의 일상생활, 재정이나 소유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 ○ 시설보호서비스 내·외부에서 개인이 선택한 활동, 단체와 대인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시설보호서비스의 거주형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권리, 케어, 편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 ○ 불평을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 옹호자나 손해 배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한 보복이나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p>(2) 시설 입소노인의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내 다른 입소노인의 권리와 욕구를 존중하고, 전체 시설서비스의 욕구를 존중해야 할 책임 ○ 종사자와 시설운영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 ○ 가능한 한 자신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돌보아야 할 책임 ○ 가능한 한 자신의 의학적 치료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

*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t. of Health and Ageing(2005. 4). *The Residential Care Manual*.

또한 호주 정부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현장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공포하였다

< 표 2-18 > 호주 시설보호 윤리강령 및 윤리적 행동지침

<p>가. 시설보호 윤리강령</p> <p>노인복지분야에서는 시설보호서비스의 제공자나 수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맥락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시설보호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인 인권이 각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의 노력과 시설거주 노인과의 관계와 일치하게 우리는 시설 입소노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존엄한 존재로 처우 받을 권리 2)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3) 종교 및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4) 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 5) 개인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권리 6)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7)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p>그리고 우리는 입소노인이 어떠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든, 또는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취약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든 파트너가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으며, 윤리적 행동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나. 시설보호 윤리강령</p> <p>A) 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존경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시켜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물리적 안전을 도모하고, 종교적 영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독립성을 조장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 입소노인과 종사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편을 제기하고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고충처리기구(Complaints Resolution Scheme)와 옹호서비스와 같은 외부기관에의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 조직의 사업상 이루어지는 재정적 거래와 관련된 이해갈등에 대해 입소노인과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입소노인의 일상 지출은 청렴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 ○ 유산, 기증 또는 기부는 입소노인의 법적 재량과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종사자와 참여 전문가에게 안전한 직무환경을 제공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 종사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 입소노인과 가족의 문화적, 언어적 욕구를 지지하는 환경에서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선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 입소노인의 희망에 따라 영적 지도자와 종교적 집회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안녕에 대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케어에 대한 입소노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 입소노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입소노인이 입소비용 문제를 겪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사회적, 법적 또는 기타 조언과 원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소노인의 자가 처방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조직이 입소노인에게 욕구에 적합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소노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적정 수준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식사, 케어,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 제공되는 모든 케어에 대하여 입소노인, 가족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케어, 치료, 지지 및 보호를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질 높은 종사자를 적절히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종사자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의료적 처방과 관련하여 입소노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위험경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들이 실수와 부적절한 사건을 확인하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하고, 토론하여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해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적정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입소노인, 가족 및 종사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부부에게는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입소노인의 희망에 따라 가족과 다른 방문자의 방문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 입소노인의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시설 내에서 새로운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B) 시설 종사자 윤리강령

- 입소노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종사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여야 한다.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입소노인의 정서적 안정, 물리적 안전, 종교 및 영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입소노인, 종사자 자신 그리고 타인의 직무상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무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입소노인과 관계자에게 옹호서비스 및 불평처리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조직의 사업상 거래와 관련된 재정적 관계와 입소노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갈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입소노인의 일상적 재정지출을 청렴하게 처리해야 한다.

- 입소노인, 가족과 관계자, 다른 종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입소노인과 가족의 문화적, 언어적 욕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 케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소노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자기개발과 안녕상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입소노인과 관계자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권장해야 한다.
 - 입소노인이 입소비용 문제를 겪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사회적, 법적 및 기타 조언과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 시설의 모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입소노인의 건강과 안녕상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입소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케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 자신의 전문성, 자격 및 권위 내에서 최상의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 영양 기준과 개인적, 문화적 및 종교적 선호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는지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 입소노인, 가족 또는 관계자와 수시로 상의해야 한다.
 - 케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불평처리기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실수와 부적절한 사건을 확인하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하고, 토론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험경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 입소노인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관계 전문가, 동료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 시설과 설비를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 가족, 다른 종사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케어, 과정 및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C) 입소노인, 가족 및 관계자 윤리강령**
- 다른 입소노인,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해야 한다.
 - 다른 입소노인, 종사자, 제공자의 물리적, 정서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 케어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다른 입소노인, 가족 또는 관계자, 종사자,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적,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견해와 신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치료의 거부와 동의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서는 종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 없이 사회적, 재정적, 법적 또는 다른 조언을 구해야 한다.
 - 보건전문가에게 의학적 치료와 투약,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과 설비를 책임 있게 이용해야 한다.
 - 다른 입소노인, 가족 또는 관계자, 그리고 종사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다른 입소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01). *Code of Ethics and Guide to Ethical Conduct for Residential Aged Care.*

4. 국내 노인복지시설 인권 관련 규정과 기준

1) 법적 조항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부터 제 37조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망라한 기본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을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로서의 성질 뿐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관련 조항 역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제 2조의 기본이념에서는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②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고, ③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노인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추상적 수준의 인권 또는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에 대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노인인권 보호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노인복지법에서는 <표 2-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인권이 극도로 침해된 노인학대에 조치와 별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 2-19 > 노인복지법의 노인 인권 관련 조항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p>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p> <p>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p> <p>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p> <p>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적극적인 인권보호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인권 침해행위가 심각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소극적 인권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실시되는 노인복지시설 평가는 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노인복지시설 평가 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보호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시설 운영이 효율화됨으로써 거시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들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권리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중에서 생활노인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본 교재의 생활노인 인권 영역 분류기준에 입각하여 분류해보면 다음 <표 2-20>과 같다.

< 표 2-20 >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와 생활노인 인권영역의 관계

영역	인권 항목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1.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실시, 서비스 사정 및 서비스 계획수립, 정기적 재사정 ○ 위생적 식품관리 ○ 영양식단의 작성과 공고 ○ 식사 및 간식의 적절성 ○ 위생환경 청결상태유지, 배변훈련, 기저귀 교환의 적절성 ○ 목욕서비스의 적절성 ○ 건강검진의 적절성 ○ 치아관리의 적절성 ○ 중증, 만성 환자 케어의 적절성 ○ 전문 의료진에 의한 정기적 검진 ○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 외래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배려와 체계적 관리 ○ 재활치료의 적절성 ○ 자립을 위한 배려와 지원 ○ 일상생활 동작훈련의 실시 ○ 욕창예방 및 관리 ○ 외상 예방 및 관리 ○ 치매노인의 치료와 보호, 문제행동의 관리 ○ 입중 및 호스피스 서비스 수준
2. 주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같은 쾌적한 시설환경 ○ 생활노인의 안전 확보(소방시설, 안전교육, 보험가입) ○ 생활노인의 이동 편리성 ○ 생활실, 식당, 화장실, 오락실, 가족면회공간 등 적절성과 편리성, 쾌적성
3.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제한의 예방 노력 ○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처리 ○ 유류금품의 관리 및 처리 ○ 개인 물품 및 금전의 관리

4. 문화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정기성 ○ 여가프로그램의 적절성 ○ 노인이 원하는 활동 참여 격려
5. 교류·소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및 외박의 자유 보장 ○ 지역주민의 시설행사 참여 ○ 거주노인의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행사 참여 ○ 지역복지기관 및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6.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소개 및 인권 안내 ○ 시설생활 필요사항 설명여부 ○ 거주노인 간담회 운영을 통한 불평해소 ○ 생활노인 정보관리와 보완의 체계성 ○ 종사자의 건의와 불만의 해결노력 ○ 종사자의 후생복지 증진노력 ○ 종사자의 명확한 업무분장 ○ 운영위원회를 통한 생활노인 권익향상

3) 노인복지시설 최소서비스 기준(안)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표준을 정하고 주요 수행지표를 도출하며, 시설 서비스의 기준선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2006)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최소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기준(안)은 인권, 환경, 운영, 지역사회와의 관계, 인력, 서비스라는 6개 영역에 33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2-21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안)

1. 인 권
<p>기준1. 비밀보장</p> <p>지표1.1.1: 비밀보장 규정</p> <p>생활노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지침과 직원의 복무 윤리규정 등 이에 대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p>
<p>기준2. 정보제공</p> <p>지표1.2.1: 서비스 정보 제공</p> <p>생활노인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기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 안내서, 최근의 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침, 생활노인의 권리, 기관 라운딩 등)를 제공하며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생활노인과 가족이 서명한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p> <p>지표1.2.2: 생활노인과 가족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p> <p>시설은 생활노인과 가족(혹은 연고자)에게 생활노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p> <p>지표1.2.3: 자기결정권</p> <p>직원들은 생활노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며, 생활노인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생활노인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한다.</p>

기준3. 불만처리 방침

지표1.3.1: 불만처리 방침

시설은 생활노인이 겪게 되는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및 불편처리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다.

지표1.3.2: 불만의 처리기간

시설은 생활노인이 제기한 불만 및 불편은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해당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이 보고되어야 한다.

지표1.3.3: 진정함의 설치와 운용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시설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후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기준4. 차별금지

지표1.4.1: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감한 방침을 갖고 있다.

기준5. 참정권의 보장

지표1.5.1: 참정권의 보장

생활노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권을 가지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생활노인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기준6.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지표1.6.1: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시설은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노인의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준7. 자치활동

지표1.7.1: 자치활동보장

시설 내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치회 등이 생활자의 주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 환경

기준8. 시설의 위치

지표2.8.1: 접근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건물의 위치는 생활노인, 생활노인의 가족, 연고자 등이 접근하는 데 용이하다. 특히 주차, 대중교통 이용 등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은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준9. 시설의 설계와 규모

지표2.9.1: 기본 시설의 충분성

법적기준에 따라, 시설의 건물 공간은 기본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지표2.9.2: 쾌적성 및 편리성

생활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의 분위기는 쾌적하고 편리하며, 생활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준10. 환경의 안전성

지표2.10.1: 시설의 안전성

건물은 법적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기준11. 편의시설

지표2.11.1: 편의시설 설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생활노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준16. 정보관리

지표3.16.2: 사례기록

생활노인의 종합적인 정보(상담 및 생활기록 등)는 일시별, 서비스 내용별로 개별화된 파일에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한다. 또한 기록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생활노인이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보관된다.

지표3.16.3: 행정기록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여 조직의 지침과 법에 따라 관리한다.

기준17. 평가

지표3.17.2: 사업평가

시설은 외부전문가 그리고 생활노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한 번씩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혹은 종료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6. 서비스

기준29. 서비스 과정

지표6.29.1: 입·퇴소 승인절차

시설 내에 입·퇴소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으며 입·퇴소 승인기관과의 공문서로 입·퇴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표6.29.2: 서비스 과정의 참여

생활노인과 가족이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며 시설은 그 의견을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에 반영한다.

지표6.29.3: 서비스 욕구조사

생활노인과 가족의 욕구 사정을 위한 측정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기준 30. 서비스 내용

지표6.30.1: 사례관리

생활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준31. 건강관리

지표6.31.1: 정기 건강점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매년 생활노인의 건강점검이 이루어지며, 진단, 처방, 약물복용 등의 과정이 문서화되어 있다.

지표6.31.2: 보건교육

생활노인에게 연2회 이상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p>지표6.31.3: 영양관리 식단 작성의 시기 및 주기가 정해져있으며 적어도 시행 2주전에 미리 계획된다.</p> <p>지표6.31.4: 기호조사 생활노인의 음식에 대한 기호 조사 또는 식습관 조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생활노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한다.</p> <p>기준32. 위생관리</p> <p>지표6.32.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시설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침에 따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지표6.32.2: 급식위생관리 시설의 조리장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취급에 대한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리원은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에는 조리원의 질환에 대한 통제, 냉장·냉동고의 온도 점검, 식수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검사(연2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p> <p>기준33. 서비스 결과</p> <p>지표6.33.1: 서비스 만족도 생활노인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p> <p>지표6.33.2: 서비스의 양 각각의 시설은 시설의 운영 목적에 따라 생활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생활노인에게 충분히 제공한다.</p>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6.12.).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3)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였다(부록 5 참조).

이 지침은 크게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윤리강령, ②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개입지침, ③ 시설생활 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에서는 생활노인의 권리를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노인, 가족, 지역주민 등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에서는 정기적 인권교육을 포함한 10가지 학대예방 지침과 함께, ①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② 조사와 사정,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④ 평가와 사후조치 등에 관한 상세한 개입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①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시 조치사항, ②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정사고시 조치사항, ③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④ 화재 예방 및 발생시 노인 대피 등 조치사항, 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제정된 이후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지침이 배부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민감성을 제고하고,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서비스 과정에서 적용하려는 종사자들의 노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 2 부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 방안

제 1 장 건강권

제 2 장 주거권

제 3 장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제 4 장 정치·종교·문화생활권

제 5 장 교류·소통권

제 6 장 자기결정권

<제2부 서비스 영역별 인권실천방안>

제 1 장 건강 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생활노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향유할 수 있는 건강권은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진단하여, 합병증과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질병 치료 및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일상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건강권을 건강증진 및 진료를 받을 권리,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할 권리,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권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인권이슈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병리적 노화의 결과로 인하여 다양한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개인의 기능수준과 건강상태에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고, 장애에 이르거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동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설 내·외부에서의 이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시설에서의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니는데, 각각의 권리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대부분이 만성퇴행성 질환이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질환에 기초하여 필요한 병원진료 및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에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도 노인이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특히 빈번한 외래 진료는 병원과 시설을 오가야 하는 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간병과 치료비 등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의료진, 시설, 노인, 보호자의 견해차로 인해 최적의 치료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질병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인 역시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여 치료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투약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자기방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보호자가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약물 복용을 반대하여 치매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근무교대가 유지 되려면 시설에서는 야간 근무자를 최소한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과 아울러 다른 생활노인에 대한 케어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질환이 발견되면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져, 투약되는 약물의 종류와 복용회수도 많아진다. 그리고 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계속 복용하기를 고집하고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상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여 약물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의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종교적 신념 및 자기방임 등으로 인해 투약을 거부할 경우, 치료자의 판단을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인 본인이 거부하고 보호자마저도 투약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으로 인하여 다른 생활노인의 수면과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종사자가 치매증상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약물을 복용케 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리고 노인의 자해, 치료적 행위의 거부,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반복적 문제행동이나 배회 증상이 있는 경우 이를 정상적인 케어서비스와 언어적 표현만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경우 신체적, 물리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가족과 사회의 위임을 받아 생활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위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 치료에 적절한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질병이나 신체기능의 저하, 일상생활 동작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기능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제한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치료의지 부족과 경제적 부담, 시설의 재활치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나 시설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통해 기능상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노인 본인이 재활치료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활치료 장비가 부족하여 생활노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증의 치매 노인을 치료함에 있어서 노인 본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 없이 보호자의 말과 치료사의 평가만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치료의 시행을 지연시키면 증상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치매 노인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소극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리치료 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인데 이 때 감각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은 온도나 통각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핫팩에 의한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재활치료 장비의 부족으로 특정 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재활치료 비전문가인 요양보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장애상태로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재활치료 전문 인력과 장비의 부족, 노인의 낮은 치료의지와 증상 등으로 인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외출 및 이동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시설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외부 활동 참여를 위한 자유로운 외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인시설의 특성상 산책 및 외출 서비스를 자주 제공하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시내 외부로의 외출도 차량운행 등의 제반여건이 제한적이어서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외부외출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낙상 및 골절, 실종 등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산책이나 외출 시 항상 보호자 또는 종사자가 동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만 한다.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거동이 자유롭기는 하나 실종의 위험이 있어 원외 외출은 보호자 없이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치매노인은 좁고 이동공간이 협소한 원내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직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시설생활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늘 침상에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은 이동의 제한을 겪게 되며 욕창, 피부질환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잦은 체위변경으로 욕창을 예방할 수 있으나, 언제나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증질환 노인, 치매노인, 그리고 외상노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종사자,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시설 내부에서의 이동과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은 다수의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개인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동료노인이나 종사자들로 인하여 개인적 생활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고, 입소상담, 외부인의 방문시의 시설라운딩 등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공간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설의 편의에 따라 생활실을 배치하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생활실 배정과 개인생활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동료노인과 종사자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보장 의식이 약한 경우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은 공동 생활공간이므로 완벽하게 개인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비밀을 충분하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 생활노인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적극적 치료에 대한 이견으로 진료를 받지 못함

위암 판정을 받은 A 어르신이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보호자는 어르신이 말기 암 환자여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번거롭게 병원에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며 입원치료를 거부하였고 웬만해서는 다른 병원 진료도 가급적 줄이자고 제안하였다.

◎ 사례 2: 노인이 보호자의 경제부담을 걱정해 치료를 거부

B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권유하자, 어르신은 별 것 아니므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어르신은 며칠 전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아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 사례 3: 야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케어서비스의 어려움

L Tube를 하고 계신 C 어르신은 치매증상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튜브를 잡아 빼곤 하신다. 튜브를 다시 끼우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야간근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응급의료시설까지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D 요양원은 60명의 어르신을 야간에 4명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두 분의 어르신에게서 동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2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으로 나가자 남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그날의 야간 당직근무를 책임져야 했으므로, 다른 생활노인에 대한 케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 사례 4: 정신과 치료와 투약에 대한 거부

E 노인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치매증상을 보이자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는 건강하시던 분이 왜 그러신 것이냐며 항의하고, 자세한 증상도 들어보지도 않고 정신과 치료와 투약을 거부하였다.

◎ 사례 5: 개인적 신념에 따른 투약의 거부

F 어르신은 평소 믿어오던 종교의 신념에 따라 약물 및 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투여를 시도하였지만, 어르신은 투약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역정을 내었다.

◎ 사례 6: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남용

G 어르신의 아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물 외에도 어르신을 낫게 해보겠다는 일념 하에 민간에서 효용이 뛰어나다는 약을 구입하여 어르신에게 드렸다. 어르신 역시도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아들이 사온 약만을 드시기를 원하신다.

◎ 사례 7: 감각기능 저하로 인한 재활치료의 안전사고

H 물리치료사가 어르신에게 핫팩(hot pack) 치료를 하는 도중 감각기능이 저하된 I 어르신이 잠이 드셨는데, 치료가 끝난 후 보니 1도 화상 정도의 피부 상해를 입었다.

◎ 사례 8: 치매노인의 의사표현 제한으로 인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어려움

J 어르신의 경우 인지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무릎 관절 전체를 교체 수술하신 분이시다.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르신 스스로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워 입소당시 보호자 상담내용과 치료사의 평가만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어르신에게 쇼크현상이 일어났다.

◎ 사례 9: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재활서비스의 제한

K 어르신의 경우 뇌 병변으로 인하여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에 있으며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상지의 작은 관절이 많은 손의 경우 간단한 보조기를 사용하여 굴곡구축의 변형을 지연 및 방지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은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도움만을 요청하신다.

◎ 사례 10: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외출의 제한

L 어르신은 용돈도 충분하시고, 전동휠체어 사용이 가능하시므로 시설과 조금 떨어진 시내에 자유롭게 외출할 것을 요청하시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설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M 어르신은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시지만 치매 증상으로 배회 및 실종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동행자 없이는 외출을 허가 하지 않아 답답해하신다.

◎ 사례 1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와상노인의 욕창 발병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와상(臥床)상태의 N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 사례 12: 치매노인의 배회 증상

O 치매노인은 거동이 자유롭기는 하나 실종의 위험이 있어 보호자가 없이는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O 어르신은 이동공간이 협소한 원내에서만 배회하면서 생활하게 되어 종사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시설생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 사례 13: 직원 간 대화 시 노인에 대한 내용 자제

P 요양보호사는 와상노인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다른 종사자와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Q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을 놀리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못들은 척 참아야만 했다고 표현하였다. 한번은 P 요양보호사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을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할머니가 알고 있어서 이제는 절대로 상담을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도 하였다.

◎ 사례 14: 외부인에게 개인적 생활공간을 비자발적으로 공개

R 어르신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어르신을 상대로 사진을 찍고, 시끄럽게 떠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옷장을 열어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 사례 15: 개인생활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생활실 배치와 이동

S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가정에서 침대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침대를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지만, 침대가 없는 방에 배정되자 왜 침대를 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셨다. T 어르신은 “나는 냄새가 나는 저 할머니와 절대로 한방을 못 쓰겠다”며 방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지만, 몇 달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인근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생활노인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 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치매 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개별화하여 보호하여야 한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4; 서울복지재단, 2006).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협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요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

◎ 보호자와의 지속적 의사소통

시설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와 노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보호자와 노인, 그리고 시설간의 대화채널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한다. 즉,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전화상담 및 내방 독려, 가정통신문을 통해 노인의 현재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자원동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만으로는 노인들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노인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에게 보호자의 의무 및 경제적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재원, 인력, 각종 서비스)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중에서 노인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자원은 지역의 의료기관이라 하겠다. 노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보건소와 개인병원 뿐 아니라, 2~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진료비 할인 및 후불 결제 등을 통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진료의 편의제공 및 우선 진료 등을 통해 적절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노인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기관 협력 및 연계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방안 마련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직원의 휴식과 휴무를 보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많은 시설들이 주간업무에 요양보호사를 집중 배치하고 야간근무 인력을 최소화하는 '집중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근무자로 운영되는 야간근무 시 응급이 발생되었을 때, 최적의 대응방법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근무대체 방법, 대처방안, 응급처치,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사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모두가 숙지토록 하고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정신과 진료와 투약에 대한 동의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에 있어서 노인의 증상을 보호자에게 꾸준히 알리고 함께 논의하여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업무편의 등 종사자와 시설의 필요에 의해 약물복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후에 신중하게 약물복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약물의 종류와 양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진단과정에서 노인의 증상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긴급의료비 지원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은 2010년까지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보다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긴급지원사업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 최대 2회까지만 이용가능하고 2회 적용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된 긴급지급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긴급지원 연장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법의 연장과 함께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간병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긴급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장기입원 노인의 생계급여 및 요양수가 조정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시설 운영 전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활노인의 장기입원 시 요양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 1회당 10일까지 외박수가(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설은 재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적극적인 치료와 병원진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 투약 기준의 준수와 부작용 예방 노력

투약에 대한 거부, 과다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투약시 지켜야 할 5대 원칙 즉,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투약의 치료적 효과, 이유, 경로, 용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투약과 관련된 주의사항과 일반적인 부작용, 과다투여나 독성의 증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적 제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2006)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격리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기준 및 방법, 원칙에 대해서도 기관 자체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제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노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결코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세 번째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어떠한 경우든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

◎ 치매 및 감각기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치매 및 감각기능 저하가 심한 생활노인의 재활치료서비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정확하고 세심한 관찰로만 예방이 가능하다.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노인 및 보호자의 호소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며, 이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의 과정 및 협조사항들은 치료사,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철저히 공유하여야 하며, 관찰한 내용을 노인의 상태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재활치료기구 이용법 숙지 및 과도한 사용금지

노인복지시설은 재활치료 장비와 기구의 사용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새로운 장비 또는 새로 수선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절한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노인들에게 사용될 새로운 장비를 다루는 재활치료사는 그에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나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구의 사용법, 사고예방과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대부분 재활치료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는 성급함, 부주의, 사용방법의 오류 등에서 비롯된다. 재활치료사는 장비에 대한 계획적이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세심하게 조사한 후에 제조업체나 기관 측에서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비를 자의적으로 해체하거나 수선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비는 본래의 사용 목적과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지역주민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의 적절한 개방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이 자리매김할 것을 장려하여 시설의 개방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시설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물리치료실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는 엄격히 시설의 생활노인을 위해 채용된 것이 분명하며 100인 이하의 시설에서는 물리치료사를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치료까지 담당하려면 생활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고, 과도하게 봉사자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위험이 있다. 입소노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생활노인의 만족스런 치료와 시설의 지역사회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출 및 이동서비스를 받을 권리

◎ 자원봉사자 활용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크게 프로그램 전문봉사와 노력봉사로 나누어진 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생활노인의 산책 및 외출을 보조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한다면, 종사자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생활노인들의 케어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 자가용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출 전문 봉사자들을 모집 및 육성하여 생활노인의 외부 외출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다양한 외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노인복지시설의 한정된 인력과 차량으로 개인 단위의 외출 및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소집단 단위로 외부 외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축제나 식당 등을 미리 조사하고 섭외하여 시기마다 소집단으로 외출이나 외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생활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원내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공간의 마련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노인에게는 안전하게 배회하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이 이에 적합하지 않거나 산책을 도와줄 봉사자들을 섭외하기

어렵다면, 원내에 배회공간을 최대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간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및 시설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등 치매 노인의 안전한 배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외상노인을 위한 주기적 체위 변경과 프로그램 개발

체위변경은 외상노인에게 있어서 치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동과 활동의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체위변경 시 기계적으로 자세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노인과 종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움직임이 무리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상노인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자세로 머무는 시간이 많으므로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음악 듣기, 책 읽어드리기 등)들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개인적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종사자의 전문가적 직업의식 고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간봉사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언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이 결여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고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생활노인도 많다. 종사자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힘들더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 역시 지속적인 훈련과 토의를 통해 종사자들이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의 과거사 및 가족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노인의 개별과일, 치료 관련 문건은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철에 보관하고 종사자들의 열람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상담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논의되는 정보들은 철저히 비밀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공유됨으로써 노인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외부 방문객으로부터의 노인 사생활 보호

모든 방문자에게 원내 라운딩을 통해 시설을 개방할 필요는 없다. 시설을 보고자 하는 입소 상담자의 경우, 후원자나 봉사자, 실습생, 협력기관 등 시설을 내방하는 목적 및 필요

도에 따라 원내 라운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라운딩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관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고, 시설이 노인들의 생활하는 집과도 같은 생활공간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지시킴으로써 방문객으로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단위 방문객이나 시설을 전부 개방하여야 할 방문객이라면 사전에 노인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 정보 공개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초상권 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은 사항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기관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노인의 사진이 등재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노인의 사진과 개인정보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노인 본인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 많이 이용되는데 종사자 뿐 아니라 봉사자나 방문자 등도 이 같은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입소노인의 생활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II. 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인권이슈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복, 목욕, 청소, 배변, 구강청결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케어서비스이며,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사자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목욕, 배변 등의 위생 및 청결서비스 등을 잘못 수행할 경우 노인의 신체적 자긍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활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히거나, 노인 개인의 신체상황에 맞는 목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거나,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키는 등의 일상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일상생활서비스 중 의복 서비스 영역에서는 노인의 기호를 무시하고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입히거나, 의복의 공동세탁으로 위생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청소서비스 영역에서는 청소의 소홀이나 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목욕서비스에서는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거나, 목욕 중의 낙상이나 화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목욕 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배변서비스 영역에서는 종사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다른 노력도 없이 기저귀를 착용시키거나, 치매증상으로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대소변을 보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그 외에 음부세

정이나 기저귀 교체시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노인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을 무시하고 짧은 헤어스타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전반적인 위생 및 청결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염성질환에 이환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일상생활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생활노인에 대한 일상생활서비스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수준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신체기능 수준, 일상생활 동작능력, 만성질환에 대해 종사자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자체적 노력과 함께 종사자의 업무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의복에 대한 개인적 기회와 단체복 착용의 문제

A 어르신은 입소 이전에 양복만 입는 멋쟁이였다. 시설입소 당시에 가지고 오신 옷들이 모두 양복이어서 시설생활에는 부적합하여 다른 옷을 제공하여 드렸지만, 그 옷만 입기를 원하신다.
B 어르신은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입는 것을 꺼려하신다. 왜냐하면 시설입소 이전부터 매우 아끼던 옷이 있는데, 환자복보다는 그 옷을 입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이다.

◎ 사례 2: 공동 세탁으로 인한 위생 문제

C 어르신은 “내 옷은 손빨래를 해야 하는 옷인데 여기서는 손빨래도 못하게 하고, 세탁기에 빨면 옷이 다 망가져 오고 양말이나 속옷도 세탁기에 빨아서 때가 지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데 왜 빨래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이 많은데 그냥 빨아야 하고 정말 속상해! 옷이 다 망가져버렸어”라는 불평을 자주 하신다.

◎ 사례 3: 청결에 대한 불만족으로 생활노인 스스로 청소하는 문제

C 어르신은 "밖에 나갔다가 온 휠체어를 끌고 방까지 가지고 오면 그 먼지나 흙이 바닥에 잔뜩 있어! 내가 치울 테니까 어서 걸레나 쥐, 선생은 바쁘니까 어서 가서 다른 일 하고 어서 걸레나 달란 말이야!" 이러한 요구를 하셔서 걸레를 드렸는데 걸레를 훑치는 과정에서 허리부상이 발생하였다.

◎ 사례 4: 개인물품 관리로 인한 청결서비스의 어려움

D 어르신은 입소 당시에 다른 어르신에 비해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오셨다. 종사자들이 정리를 하려 하였지만 모든 물품들이 어르신에게는 중요한 물품들이라 하시면서 한사코 당신이 생활하시는 개인옷장에 놓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여 옷장 위 여유 공간까지 뺄뺄이 채워놓기에도 많은 물품들이어서, 미관상 좋지 않다.
E 어르신께서 평소 아끼시는 조그마한 책상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물건이라서 낡아서 미관상 좋지 않고, 책상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쾌감을 드리고 있다.

◎ 사례 5: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고 씻기를 싫어하는 문제

F 어르신은 목욕시마다 목욕하시기를 거부하신다. 집에서는 한달에 한번만 했다 하시며 겨울에 목욕을 왜 이렇게 자주 하나며 편찬을 주시는데, 어르신의 청결 상 정기적인 목욕 서비스를 드려야 하는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 사례 6: 목욕서비스 중의 낙상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

요양보호사 G는 지난여름 목욕을 실시하던 중, 비누거품에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어르신을 놓치는 경험을 하였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목욕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 사례 7: 인력부족으로 인한 목욕이나 샤워의 제한

H 어르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혼자 샤워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근무자가 많지 않고, 남아 있는 근무자도 식사 배식 등의 업무로 바쁜 시간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샤워를 하지 못하시도록 했다.

◎ 사례 8: 목욕서비스 중에 느끼는 수치심

I 어르신은 누워서 생활하시는데 어느 날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종사자가 상담한 결과, 목욕할 때 남이 내 몸을 만지는 것도 그렇지만 내 몸이 벌거벗은 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J 할머니는 종사자보다 봉사자들이 목욕을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 봉사자들이 더 힘을 주어서 목욕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봉사자들이 목욕봉사를 하러 왔을 때, 목욕 거부 의사를 비치셨는데,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그 봉사자들에 속해 있어서 내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다.

◎ 사례 9: 종사자의 업무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K 어르신은 편마비임에도 낮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나는 평소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서는 거기다 불일을 보라고 하더라. 종사자들도 한번 기저귀 차고 싸보라 그래, 기분이 어떤가!”

◎ 사례 10: 기저귀 교체시의 노인 자아 존중감 무시

L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저귀 교체 시 거부의 뜻을 표현하였다. 전날 한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L 어르신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이었다. M 어르신은 종사자가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그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감정 없는 로봇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다.

◎ 사례 11: 요실금, 불결한 배변처리 등으로 인한 냄새로 동료노인 간의 갈등

N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요실금으로 고생해오셨는데 시설에 들어온 이후로 다른 할머니들이 냄새가 난다고 핀잔을 주어 괴롭다고 하셨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 그런 것인데 너무 하다며 차라리 아예 누워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 사례 12: 치매노인이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설하는 문제

치매노인인 O 어르신은 대소변을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화장실로 모셔드리면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습관이 있어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시곤 한다.

◎ 사례 13: 적절치 못한 양치서비스

P 시설장은 어느 날 종사자가 노인들에게 양치를 해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앞니 만 양치를 해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 물을 삼키고 계신 것이 아닌가! 더욱 놀랐던 것은 양치 후에도 어르신의 입안에는 이물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 사례 14: 노인의 선호도를 무시한 두발관리

Q 시설장은 이미용 봉사가 끝난 후 봉사자에게 질문을 받았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종사자들이 노인의 머리를 너무 짧게만 깎아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상어르신을 한분 깎아드렸는데 할머니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다.

◎ 사례 15: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동료노인으로부터의 소외 문제

R 할아버지는 노인학대로 긴급하게 시설에 입소하기 된 경우로 입소 후 감염성 질환을 발견하였다. 식사시간에 다른 식기를 이용하고 별도로 소독하는 것을 다른 노인들이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S 할아버지마저도 식사시간에 같이 앉기를 거부하신다.

◎ 사례 16: 감염 위험이 높은 서비스 용품의 사용

T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의 음부를 닦는 중 청결해야 할 수건에 이물질이 묻어 있음을 보고 그날의 음부 청결은 물티슈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위생원에게 물어 보았지만 워낙에 많은 세탁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그마한 수건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질 높은 일상생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세계인권 제 25조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은 생활노인에 대한 상시적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근무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거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의복서비스 영역

◎ 개인적 기호에 따른 의복의 착용

노인의 질환과 특성 상 의료적 처치와 입고 벗기가 용이한 환자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에 입으시던 개인이 좋아하는 옷을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상노인의 경우에는 환자복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노인들에게 단체복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청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설의 방침과 노인들의 기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언어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취향 외에도 더 많은 의류 스타일과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노인이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속옷 등 의복 살균소독

속옷 등에 대해 살균 소독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염려하는 불쾌함과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살균 소독의 방법은 일광소독, 자외선 소독, 살균소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다 위생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세탁이나 살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노인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청소서비스 영역

◎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 보장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중 일정 부분을 노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노인의 자존능력 유지를 위해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간단한 청소나 속옷 정리, 식탁 닦기 등 간단한 일상적 활동은 노인이 원하는 경우 함께 하는 것이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종사자와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활동이 강제노동으로 비취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노인의 상태와 의사를 존중하여 노인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 스스로 개인물품을 관리

생활노인이 자신의 물품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은 노년기의 주요 특징이며,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해야 하는 노인에게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개인물품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한된 공동생활공간에 노인들의 물품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한 분의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수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수납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생활노인이 자신의 물품을 찾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거나 창고 어디에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공동생활공간의 침해를 막으면서 노인의 욕구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종사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으로 비쳐지더라도 노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물품이며 그것이 나중에는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유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일이다.

3) 목욕서비스 영역

◎ 노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생활상의 욕구 발견

목욕서비스는 시설서비스 가운데 노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관계형성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목욕서비스는 오히려 시설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종사자와 노인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목욕이 이루어진다면, 목욕을 하는 전체 과정 중에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를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욕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노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긴 하나, 목욕을 통해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이 표현될 수 있고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는 것도 단순히 씻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욕구나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목욕거부라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이 자신의 알몸을 보이는 것이 싫어 목욕 자체를 거부하실 수 있으므로 목욕 중 중요 부분은 수건으로 가리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서비스 과정에서의 지속적 대화 유지

목욕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목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목욕을 하기 전에 비록 그 날이 미리 정해진 목욕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의 과정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분은 어떤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 시 종사자끼리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목욕이라는 것이 자신의 더러운 몸을 씻기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교감을 나누는 일상생활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려야 할 것이다.

◎ 목욕 중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목욕을 위해 시설 내 목욕시설을 잘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시설들이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노인의 목욕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나 매트를 설치하였다면 마모가 있는지 수선이 필요한지 점검토록 한다. 목욕 시 사용되는 보조용구는 종사자들의 노동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노인에게 보다 편안한 목욕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목욕 시 노인의 몸에 물이 닿기 전 종사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감지하는 것을 습관화하여 온수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 관계가 좋은 종사자에 의한 목욕서비스

목욕은 앞서 지적한 대로 단지 청결의 목적 외에도 종사자와 노인들과의 관계형성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목욕서비스는 종사자와 노인이 함께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인력활용의 현실적인 문제로 봉사자의 목욕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욕에 들어가기 전 몇 회를 두고 봉사자와 노인들과의 관계형성을 도모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욕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봉사자와 노인 간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목욕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 목욕 보조 장비의 지원

목욕서비스가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서비스임은 분명하나 요양보호사에게는 가장 부담되는 업무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목욕업무의 강도를 줄이면서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목욕용구 및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목욕에 필요한 보조 장비는 대부분이 수입제품으로 가격이 비싸서 구입이 쉽지 않고, 구입한다 하더라도 관리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다.

4) 배변서비스 영역

◎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노인의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대소변 활동에 있어 기저귀 착용을 되도록 지양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노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스로 이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은 노인의 자존감 향상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기저귀 사용량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종사자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잔존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배변관리를 하게 하더라도 노인을 화장실로 이동시키고 배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종사자의 행동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수발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시설에서 때로는 노인의 잔존기능 유지만을 실무원칙으

로 규정하고 시설 종사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은 마련해 놓지 않은 관계로, 종사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인의 기능 및 자존감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 여성노인에 대한 산부인과 정기 진료

대소변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방광기능이 약화되어 요실금과 악취, 요로 감염 등 여성 질환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부인과와 정기검진을 통해 노인의 배변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신속한 배변서비스

현세대 노인들 가운데 수세식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이 익숙한 노인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익숙한 후 우선 변기사용법을 익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고 익숙한 일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생활해온 노인들, 특히 치매노인에게 는 적응이 매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생활공간에서 화장실이 가까워야 하고 화장실까지 이동 또한 간편해야 한다. 화장실로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변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변기 주위에 장애인용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혼자 힘으로 변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시설과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빠른 배변처리, 노인의 기능유지에 기여하는 배변훈련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생활노인의 표현력과 인지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여서 스스로 배변 사실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 배변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종사자가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야간 등 인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몇몇 노인은 대소변을 본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저귀 교체 주기를 정해놓고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별적인 노인의 욕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이 다른 곳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즉시 뒤처리를 하고 노인과 함께 치우며 다시 한번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한데 이 때도 본인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적정 인력의 배치와 적정 서비스 급여 지급

노인의 일상생활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권 이슈는 직접서비스 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즉 현행 관련법 상 노인요양원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노인 3명당 1명(2008년 4월 4일 이후 설치 신고된 시설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종사자

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적절하게 보장하려면 시설들은 이 인력으로 3교대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시설의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휴먼서비스이며 인력의 상태와 품질이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들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인력배치 기준과 보험수가를 현실화하여 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5) 기타 청결서비스 영역

◎ 서비스의 개별화와 잔존능력의 활용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사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생활노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순간에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는 드물고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므로 현재 남아있는 잔존능력의 정도에 따라 언어적 도움, 부분 도움, 완전도움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양치질의 경우에도 노인의 수행능력이 앞니까지만 가능한 경우라면, 앞니는 노인이 직접 하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종사자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손을 입 근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전동 칫솔을 제공하여서라도 양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청결한 음부세정과 자존감 유지

음부세정 등 노인이 민감하게 여기시는 부위를 세척할 시에는 가능한 노인 자신이 행하도록 원조한다. 종사자가 행할 시에도 맨손 보다는 전용거즈나 수건을 이용하여 불쾌감이 없도록 한다. 특히 이때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의 경우 반드시 향문 쪽을 향하여 닦고 남성의 경우 음경의 피부가 더러워지기 쉽고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닦아야 한다. 또한 침상에서 세정 시 스크린을 설치하거나 수건을 이용하여 다른 노인이나 종사자에게 몸을 보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두발관리

획일적 서비스는 지양하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시설 서비스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두발의 경우 노인의 개별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평소에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미용 봉사자에게 미리 전달하도록 한다. 파마나 염색을 원한다면 미용실과 연계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파마나 염색을 할 경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시간과 대상 노인의 수만 적절히 조정된다면 미용 봉사자들과 협의하여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6) 전염병 예방 및 관리

◎ 전염성 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와 비밀의 유지

전염성 질환이 발병했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물론이고 나머지 노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고 종사자간 상호협력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된다면 좋겠으나 다른 노인들 사이에 알려져 노인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마지막 여생을 마감하고자 보호자와 노인이 심사숙고하여 입소를 결정하였으므로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노인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노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종사자 모두가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며 다른 동료노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소 전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일단 입소한 이후에는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에게 대한 서비스에 제한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철저한 살균소독

시설 생활노인의 특성상 건강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일단 노출이 되게 되면 심각한 생명의 위협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소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독이라는 것이 대개 삶는 것과 일광소독, 스팀소독이 대부분이지만 용제나 약품을 사용한 살균 소독은 오히려 노인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시설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음식물, 기저귀, 폐기물 등을 즉시 유출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시설의 위치상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시설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보다 안전한 음식물을 제공받고 폐기가 필요한 폐기물을 즉시 유출할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 보관이 필요하다면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대책위원회 구성 및 업무지침 마련

전염병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종사자교육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Ⅲ.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인권 이슈

충분한 영양섭취와 양질의 식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이며, 생활상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식사를 통해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노인의 기회에 맞게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섭취를 돕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에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중에서는 음식을 씹는 능력, 연하반사 능력, 타액의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음식을 쉽게 씹어 삼킬 수 없는 노인들이 있다. 또한 배설이 걱정되어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나 환경변화, 가족 및 종사자와의 관계 등 심리적 갈등으로 식욕부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영양상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특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인의 기호와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간식이 제공되거나, 식자재나 남은 음식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건강상태, 식성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에게 양질의 영양 및 식사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공동생활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양 및 식사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질 높은 영양과 급식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이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본적 인권영역이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양질의 영양 및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식단과 식사시간의 선택권 제한

A 어르신은의 경우 규칙적이지고 부지런하신 편이시라 이른 아침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배식시간이 늦어 불만을 표현하시고 때로 식사를 거르시기도 한다. 또한 외출이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때때로 식사시간 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차게 식은 반찬을 드셔야 하거나 제 시간에 드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사례 2: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요구

B 어르신은 고도비만이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랜 기간 투병중이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은 과도하게 섭취하고자 하셔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 사례 3: 식판 사용과 잔반처리에 따르는 좋지 않은 식사분위기

C 어르신은 일률적인 식판 배식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인데 따듯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기보다는 공동생활의 한 행동으로 여겨져 입맛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시고, 식사 도중 종사자들이 옆에서 잔반을 처리하는 경우 시끄러울뿐더러 불쾌감을 갖게 된다고 하신다.

◎ 사례 4: 노인의 식사 거부

D 어르신은 다른 할머니가 지저분하게 밥을 먹는다면 “저 할머니랑은 같이 못 먹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어떤 날은 “저 종사자가 차려주는 밥상은 싫다”며 식사에 전혀 손을 대지 않으셨다. C 어르신은 입소 직후 자신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몸이므로 빨리 죽어야 한다.”며 식사와 투약을 모두 거부하셨다.

◎ 사례 5: 개인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은 집단 간식서비스

E 어르신은 평소 사과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가을철 시설의 간식으로 대부분 사과가 제공되므로, 다른 노인들이 간식을 드실 때,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 사례 6: 음식물 보관과 관리의 문제

F 영양보호사는 G 어르신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봉지에 담긴 음식들이 썩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동안에 방안에서 나던 냄새의 원인을 알게 된 영양보호사는 그제야 보호자들이 오면 주려고 챙겨두었지만 어르신 본인도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사례 7: 음식물 보관과 관리의 문제

H 영양사는 시설이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채소의 가격 값이 올라가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부식을 수령하였다. 어느 날 조리원의 실수로 부식 창고 문을 열어놓고 근무하다가 퇴근 전에 이를 알고 문을 닫아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가보니 몇 개의 부식이 상해있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생명과 건강유지 그리고 개인의 기호에 맞는 영양과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세계인권 제 25조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4; 서울복지재단,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06)에서도 노인의 건강유지에 적절한 영양섭취와 노인의 기호를 고려한 질 높은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관리의 위생지침을 규정하여 생활노인이 질 높은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노인의 식사에 대한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단체급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비록 모든 노인들이 일년 내내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마련이다. 노인의 식단 선택이나 식사시간에 대해서도 시설에서는 그것을 시설의 한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시설의 특성상 노인들의 입소와 퇴소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식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신규 입소노인의 식습관과 선호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의 식사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는 식사 불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노인들과의 식사에 대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식단의 개발 및 식사서비스 시 관찰

다양한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하여 노인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단 마련하기 위한 개별 시설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식단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기별, 계절별, 명절에 따라 그에 맞는 식단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주간, 월간, 연간 등을 주기로 식단을 조사하고 평가해보면 중복된 식단이 없었는지,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식당과 연계하여 가끔씩 외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생활노인의 즐거운 식사를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식사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노인이 음식을 잘 씹어 삼키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식욕이 없는 경우라도 입맛을 당기게 하거나 유동식 등 삼키기 쉬운 음식을 조리하여 식욕이 생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거나 연하성 폐렴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 적당한 섭취와 적당한 운동

식욕은 심리적 영향을 받기 쉬우며 건강과 기능의 악화가 식사량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 동안의 섭취량, 식욕상태, 운동량을 고려하여 노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노인들의 에너지 섭취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치

료사 및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영양사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역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조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인의 기호에 맞는 간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역시 노인의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평소 먹기를 원하는 간식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젊은 세대의 간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노인들의 간식은 세대가 다르고 생활해온 환경도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는 보다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현 세대 노인들은 어려운 시대, 먹을 것이 귀한 시대를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걱정과 애착이 많다. 또한 특별히 간식을 먹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간식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주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든지 간식이 제공될 수 있음과 어느 날 어떤 간식이 제공될 것임을 미리 공지하여 음식물을 남겨두지 않아도 다음 간식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사와 간식 제공 시 차별의 금지

현재까지 노인의 간식은 식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후원품 혹은 푸드뱅크의 지원품 등으로 제공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후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식재료비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즉 개별적인 욕구와 지불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그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나 저소득 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식중독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시설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조리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원의 질병관리, 냉장고 및 냉동고의 온도점검, 식수 및 조리용 물의 수질 검사 등과 같은 식품취급의 위생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등이 장시간 시설 근처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물탱크 등은 외부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농촌지역의 경우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곳도 있으나 이 때도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하려면 음식물처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은 식중독 등의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지침에 따라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거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년기의 대안적 주거형태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게 있어서 시설이라는 주거환경은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의미의 가정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인권 이슈

안락한 주거환경이란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공간과 구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각의 주거시설과 설비는 쾌적성, 편의성,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생활 속에서도 개인적 사생활이 적절히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시설 생활노인의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인권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적당한 난방과 통풍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일조, 채광, 조명, 환기, 방습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거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설비를 갖춘 넓은 주거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이 집단생활이므로 개개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보다는 집단생활의 기준이 우선시되므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소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실은 생활노인의 하루 일과가 유지되는 주거공간이므로, 생활실의 쾌적성과 위생성을 확보하는 것이 노인의 주거권 보장의 가장 우선적 요소이다. 그러나 기저귀를 착용한 외상노인, 기저귀를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한 노인,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으나 실금(失禁) 관리가 필요한 노인, 배설 후 뒤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노인 등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생활실의 쾌적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위생실은 세면실과 욕실,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되며, 이 공간의 위생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는가에 따라 주거공간의 쾌적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면실과 욕실은

공간의 기능상 자연통풍이 어렵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 등으로 인해 세균번식이 용이하며 생활노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화장실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설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이나 혹은 생활노인들의 개인적인 위생관리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시설의 생활노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실의 경우 개인위생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저귀 관리, 요실금, 변실금 관리, 머리와 구강관리, 의복관리 침구관리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나 신체적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불결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러한 불쾌한 몸의 냄새를 소거하기 위해서 알코올 처리를 하기도 하고, 방향제나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위협적 요인이 되며 오히려 노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2)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이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설의 출입구 접근로부터 내부시설(출입문, 승강기, 실내계단, 복도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세면실 등), 안내시설(유도, 경보, 피난설비 등), 기타 시설(생활실, 식당, 오락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기능회복실, 사무실 등)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생활노인의 대부분은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실내에서도 보장구(휠체어, 워커, 목발, 지팡이)를 이용해야 하거나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외부 이동 경로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장애물(예: 문턱, 통로 너비, 높이 등) 제거하고, 계단의 높이와 너비, 복도의 폭과 길이 등을 적절히 확보하여 노인의 이동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복층의 상하 수직 이동로에 낮은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시설은 법적 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노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 생활노인의 하루 일과가 생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생활실을 중심축으로 하여 식당, 화장실, 세면실, 욕실, 물리치료실, 오락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공간간의 동선을 짧게 하여 이동과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공간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시설배치가 이루어져 노인이 다양한 시설 이용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생시설은 노인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위생시설 공간의 지지대 및 보조손잡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도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노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생활실을 축으로 하여 동선이 길지 않은 시설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느끼는 주거환경의 편리성은 집단생활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활리듬과 욕구를 고려한 주거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집단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부자리를 제공한다든가, 개인용품을 관리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인이 생활실을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커다란 관찰구로 모든 생활을 관찰할 수 있게 하거나, 치매노인 등 문제행동이 심한 노인과 같은 생활실을 쓰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접근성이란 원하는 장소에 도달하기 쉬운 정도로서 노인생활시설의 구성 요소 중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들에게 있어 식당, 화장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게 되면, 자립적인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신체적·인지적 기능 감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성을 자극하고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근골격계 환자나 뇌졸중 환자를 물리치료실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실에 배치하거나, 공간지남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작업치료 프로그램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려면 중앙엘리베이터 이외에는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오래 기다리거나 아픈 다리로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불결한 냄새가 나는 생활실

나랑 같이 방을 쓰는 A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혼자서 대소변을 못 가려 그런데 선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기저귀를 금방 갈아주지 못하거나 갈아줘도 대충 대충해주고 바쁘다며 가버려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견디다 못해 다른 방으로 가야지 어떻게. 잔소리도 해보고, 인상도 써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참고 사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

◎ 사례 2: 욕실과 화장실의 곰팡이

방안에 화장실이 붙어있어. 그런데 여러 명이 쓰니까 금방 더러워지잖아. 선생들이 매일 청소도 하고 우리도 냄새가 나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도 곰팡이 냄새가 나. 곰팡이는 물기가 많은데 많잖아. 그런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건 햇볕이 안 들고, 바람이 잘 안통해서 그런 거야. 백날 청소해봐야 헛일이지 뭐.

◎ 사례 3: 보장구의 부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

B 어르신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물리치료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생활실을 나서서 복도 벽에 붙어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살살 걸어가는데, 한번은 복도에 휠체어 2대가 벽 쪽에 붙어서 세워져 있었는데, 안전손잡이를 놓고 돌아가려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휠체어를 치우려니 넘어질까 무섭고 하여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가 치워달라고 한 뒤 물리치료실로 갔으나 이미 물리치료 받으러 온 어르신들이 많아 한참을 기다렸다가 핫팩만 받고 점심시간이 다되어 올라온 적이 있다.

◎ 사례 4: 노인의 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공간

한번은 C 선생이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바깥에서 돈을 받아다가 뭐라더라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해주니까 오라고 하는데, 가고야 싶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천릿길이야. 지네들이야 젊으니까 후딱 걸어가면 되지만, 우리네 같은 늙어 꼬부라진 할멈들이 어디 거기까지 가는 게 쉬워?

◎ 사례 5: 욕실에서 미끄럼 사고

옆방에 누워서 지내는 D 할멈이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여기 들어올 때는 멀쩡했지. 그런데 밤중에 화장실에 불일 보러갔다가 나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뼈가 부스러진 거야. 병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봐야 소용이 있나, 이미 늙어서 고물이 됐는데. 그래서 저리 누워 지내는 거야.

◎ 사례 6: 지나치게 큰 생활실의 관찰구

E 어르신은 곱상한 얼굴에 용모도 단정한 할머니다. 하루는 F 원장에게 찾아와 같이 사는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다 자신의 방 앞에 뚫려있는 큰 유리 관찰구로 들여다보는 것이 불쾌하다고 그 할아버지들을 당장 내보라 화를 냈다.

◎ 사례 7: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침구

F 어르신은 입소 전에 침대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허리도 좋지 않은데 침대를 쓰면 더 안 좋아진다면 무조건 매트리스 깔고 이불 덮고 자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나면 허리 뿐 아니라 여기 저기 안 찌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시는 경우가 많다.

◎ 사례 8: 노인의 기능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배치

내가 눈이 잘 안보여, 게다가 나이 드니까 깜빡 깜빡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지. 한번은 늘 가던 물리치료실을 찾아가는데 당체 어딘지 모르겠는 거여. 분명히 그 어디쯤 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여. 간판이라도 붙어있겠거니 해서 찾아봤지만 당체 글씨가 보여야 말이지. 몇 군데를 잘못 들어갔다가, 마침 지나가는 옆방 할머니한테 데려다 달라 그래서 찾아가서 짚질하고 온 적도 있지.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제25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각종 사업안내와 매뉴얼 등에 시설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서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분명히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노인의 기능저하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설계

노화로 인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생활노인의 생활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주거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립생활, 사생활과 사회적 교류의 균형유지, 합리적 공간배치,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의 주류화(mainstream or normalization), 시설종사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 충분한 문화 및 여가생활 공간 확보 등이다(권중돈 외, 1999; 권중돈, 2007). 이러한 원칙 하에서 각각의 주거공간과 시설을 설계 또는 설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최적의 시설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공간	설계 및 설치 가이드라인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닫이 문, 손잡이는 핸드바와 레버 핸들 설치 ○ 단차와 요철을 없게 하여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게 함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채색, 돌출부와 돌출물을 만들지 말 것, ○ 기구류는 모두 벽면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함
바닥(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성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재질로 마감 ○ 단차와 요철이 없어야 함 ○ 침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2.4m 이상의 폭 확보 ○ 공간기능별 바닥색 차별화 ○ 자동감지 보행등 및 안전손잡이(높이 75-80cm, 지름 4cm) 설치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개폐시간을 길게 하고, 조작버튼은 양측 벽면에 낮게 설치, 침대용 승강기(1.5m x 2.5m) 설치
생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고려한 적정 인원배치 ○ 높이 30 ~ 40cm의 침대 및 개인용 붙박이 벽장설치 ○ 침대 주변에 수납공간 배치 ○ 각 침대 주변에 긴급호출장치(nurse call)설치 ○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 누워서도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창문 설치 ○ 생활실의 벽, 커튼의 색상은 밝고, 안정된 색채 사용 ○ 침대 벽에 조명등, 긴급연락장치, 콘센트, 전화 등을 집합설치 ○ 생활실 출입구에 성명을 명도 높은 표지판으로 기재, 채광, 통풍, 흡배기에 대한 철저한 배려 ○ 각실 벽면에 최소 한 점 이상의 예술작품 걸어 놓기 ○ 간접조명과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벽지 ○ 적정 크기의 유리관찰구 설치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실별 좌변기 설치, 난간 및 벽폐달식 버튼 설치, 안전손잡이를 비스듬하게 설치, 샤워기 높이는 75cm 정도, 수도꼭지는 레버식으로 함, 미끄럽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 사용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는 바닥보다 낮게 50 ~ 60cm로 설치하되, 안전턱을 설치 ○ 목욕보조자의 활동공간을 고려한 설계 ○ 출입통로는 경사로로 처리하고, 미끄럼방지 장치와 난간 설치 ○ 긴급호출장치(nurse call system) 설치 ○ 특수욕실에는 기계욕장치 및 이동보조장치 설치 ○ 탈의실은 외부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앉아서 탈의할 수 있는 보조기구 및 보조자의 활동공간을 고려하여 넓게 설계 ○ 탈의실에는 휴식용 의자, 옷장 및 목욕용품 보관설비 설치
오물처리실 린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변기, 기저귀, 생활소품 및 청소용구 세정·소독·보관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입구를 넓게 확보 ○ 린넨실은 정리실과 물품보관실, 운반차 보관 장소를 확보
생활 복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생활실이 모두 보이는 중앙에 설치, 직무수행 및 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기자재 설치, 긴급호출모니터장치(nurse call monitoring system) 및 인터폰 설치, 휴게 공간을 후면에 배치

주거공간	설계 및 설치 가이드라인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식탁을 설치하되, 4인용 낮은 테이블로 배치 ○ 식당이용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실의 침대 옆에 식사보조 테이블 배치 ○ 식당 벽면은 외부경관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처리, 식당 입구 벽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기 설치
세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세탁물은 외부 세탁소에 용역 의뢰 ○ 대소의 세탁기, 건조기, 소독기, 오물개수, 개수대 등 설치 ○ 세탁 후 수선, 다리미질, 정리를 위한 작업용품 및 수납공간 설치 ○ 오물처리실, 린넨실, 수선실 및 정리실 등의 공간 확보
냉난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부공간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 ○ 생활실은 바닥 난방으로 할 것 ○ 심야전기난방 시스템 채용 ○ 최상층 및 북향 생활실은 단열재를 두껍게 시공하고, 벽면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 추가 설치 ○ 야간난방은 프로그램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 온도조절 ○ 각 생활실에 온도 및 습도계 설치
조명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분위기의 조명으로 빛이 눈에 직접 닿지 않는 간접조명시스템 채택 ○ 전기스위치는 일반인용 스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 ○ 침대에 누워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도록 스위치 설치
중정(中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배려 ○ 1층에 출입이 가능한 안뜰(소정원) 설치 ○ 상층 복도에서 1층의 중정 조망이 가능하게 유리창으로 설치
출입현관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 현관과 연결된 8자형 배회로 설치 ○ 벤치, 소동물원, 분수대, 화단, 수목원 배치 ○ 휠체어 이용노인의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단 높이는 45cm 이하로 설치 ○ 화단의 앞쪽은 키가 작은 식물을 심고 가운데는 키가 큰 식물 식재
담화실(談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접근이 용이한 이동 통로 주변에 설치,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트인 공간으로 가족적 분위기 연출, 채광을 최대한 높이고, 수려한 외부경관 연출, 소파, 오락용구, 탁자 및 음료코너 설치 ○ 다실(tea room)은 각층 중정 옆 로비 및 복도 등 개방된 공간에 편안한 소파, 낮은 탁자, 음료코너 설치

◎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노인복지시설의 주거공간은 집합적 · 공적 거주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생활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경개선관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위생관리 서비스가 투입되지 않으면 시설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공용기능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공간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생활실,

위생실, 공동 이용 거실 등의 시설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노인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적당한 난방,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방습설비를 갖추고 창문의 개폐에 의한 자연 통풍으로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편리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시설 생활노인의 경우 보장구를 이용하거나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외부 이동 경로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 장애물을(예, 문턱, 통로 너비, 높이 등) 제거하여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높이와 넓이의 계단과 복도를 확보하여 이동을 도와야 하며, 상하 수직 이동로에 낮은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 거주 노인들의 하루 일과는 생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실을 축으로 하여 식당, 화장실, 세면실, 욕실, 물리치료실, 오락실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유닛(unit)으로 배치하여 공간과 공간의 동선을 짧게 하여 이동과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편의성이 제공되는 공간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최적의 편의성은 장애기능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각각의 주거공간별로 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설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치매노인 등 인지기능이 낮은 노인을 위하여 시설의 배치도나 표지판, 서로 다른 색의 생활실 출입문 등을 설치하면 노인의 방향감각을 보완할 수 있다.
- ② 복도의 벽면, 화장실, 욕실, 세면실의 용기 주변에 수직·수평의 핸드레일과 수직봉을 설치하면 신체기능이 낮은 노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실내에 설치된 출입문 실린더의 방향이 좌우 조작용보다 상하 터치용이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④ 소규모시설은 화장실, 욕실, 세탁실을 한 곳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설치하면 이동 및 관리 측면에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난방설비의 경우 중앙난방보다는 유닛별 개별난방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편리하다.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실, 욕실 등)의 공간구조는 접근성과 이동성을 최대한 높이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바닥 접촉 공간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위생시설 공간의 지지대 및 핸드레일 설치에 안전사고의 위험 감소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화장실은 휠체어 및 위커 출입을 용이하도록 문턱과 바닥의 높이를 같게 하고, 핸드레일과 손잡이 설치로 앉고 서는데 안전성을 제공하며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설치하여 낙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화장실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욕실의 욕조는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넓이와 깊이의 용기를 설치하고,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 욕조 출입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수도꼭지는 좌우 이동식보다는 상하 터치용으로 설치하면 인지기능 낮은 치매노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

다. 샤워기는 종사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우측 벽면에 설치하되 변기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위생관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면기는 세수나 양치 중에 비누, 칫솔, 치약 등을 놓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카운터 세면기를 설치한다.

시설 생활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이 낮아서 시설 내 설치된 물리적 도구를 스스로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의무실은 각자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서비스 활동의 편의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상시 이용공간은 생활실을 축으로 하여 동선이 길지 않은 유닛 중앙에 배치하므로 고령인 노인들의 공간 이동 및 시설물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고려해야 한다.

식사 공간은 거실과 이동거리가 길지 않게 배치하여 이용 거리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식탁의 크기 높낮이 및 넓고 폭신한 의자, 노인의 장애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식기 등 편안하고 편리한 기능성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의무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후송 전에 응급이 가능한 상비약, 위생재료 및 의료 기구를 구비하여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를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오락실 및 프로그램실은 생활실과 동선이 길지 않은 곳에 배치하고, 휠체어나 위커를 이용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기능보장에 적절하고 편리한 오락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물리치료실은 기능회복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수시로 물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에 편리한 공간배치가 되도록 구성한다.

◎ 노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생활노인의 대다수가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수행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타인에게 의존적인 삶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급속한 기능 감퇴를 수반하게 된다. 신체적 기능이 낮은 노인일수록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의존적 활동의 최소화, 자립적 활동의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이동에 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이동에 대한 동기가 낮고,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이용시설의 거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단축함으로써 이동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혹은 종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족해 나가도록 돕는다. 노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화장실, 세면실 및 욕실의 짧은 동선 내에 배치하고, 휴게실, 식당, 오락실, 물리치료실,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동선을 단축하여야 한다.

시설생활노인의 정신적 원조를 위해 종사자들은 신뢰관계와 더불어 노인들이 쉽게 정신적인 지지와 안정을 위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들은 생활노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가족, 이웃 등과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자주 부여하고, 외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을 위해서는 공간 지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간구분 이정표를 설치하고, 회상공간(전통 문화적 소품 배치)을 배치하며, 시간 지남력 강화를 위한 시각적 환경(시계, 달력, 계절그

림)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용거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사색 및 명상실을 설치하고, 다른 노인과의 대화와 접촉기회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II.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1. 인권 이슈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노인생활시설은 집단생활공간이며, 생활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치매노인 및 뇌졸중 환자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시설 환경의 미비 등의 시설측 요인과 노인 개인적 요인에 의해 모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협하는 노인의 행동이 시설의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촉발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폭우, 폭염, 폭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 둘째는 가스 및 전기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문제, 셋째는 보호관리와 연관된 안전이슈로써 일상생활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이나 보호관리 소홀로 인한 실종, 이물질 섭취(세제, 비누, 락스 등), 그리고 시설물 관리 소홀에 의한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교재에서 위 내용 중 자연재해 예방과 가스 및 전기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유형을 보호관리와 연관된 안전이슈에 각각 포함하여 노인생활시설내의 안전사고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 생활노인들은 연령이 높고 일상생활기능이 떨어지므로 독립적 행동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인지기능이 낮아 사물의 구분을 못하는 노인, 신체기능이 낮고 배회가 심한 노인, 보장구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상자일수록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신체 기능, 특히 하반신 기능이 낮은 노인의 경우 침대에 오르고 내리면서 낙상을 하거나 문턱을 넘는 경우,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의 낙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목욕이나 머리감기, 세수 등 비누, 샴푸 등을 사용할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노인이 넘어지기 쉽다. 또한 시설 바닥이 장판이 아니라 나무 목재가 원료인 마루바닥의 경우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시설 어디 곳이나 잠재적인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 골절 등 심각한 신체

질병이나 기능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인지기능이 낮은 치매노인의 경우 화장실의 세제, 비누, 락스, 화장품, 에프킬러 등을 먹거나 마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이나 자살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 주위에 유리, 볼펜, 칼, 거울 등 일상 생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생활노인이 밤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두운 조명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2) 보장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보장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보장구에 의지하여 이동하는 경우 기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장구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장구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장치이므로 언제라도 오작동이나 노인의 실수로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기계 내 전기합선이나 노인이 실수로 젓가락 등의 철용품을 전동 휠체어에 꽂는 일이 발생할 경우, 혹은 이동 중에 축전지의 전력이 다 소모되어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멈추어버리는 경우 노인들은 당황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시설 내 화장실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나 혹은 다른 보장구를 이용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우 보장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리치료 기기나 운동기기의 경우 이를 사용할 때 오작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기는 노인이 수면 시에도 이용하는 장비이므로 찜질기의 경우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며, 안마기의 경우 너무 강한 압력으로 노인의 피부 손상이나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설의 노인보호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생활시설에서 노인 실종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내방객의 문단속 관리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설 거주 노인의 실종사고는 배회가 심한 노인, 밖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강한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노인 생활실 출입 시 종사자가 의식 없이 문단속을 하지 않거나,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집단으로 산책이나 프로그램 실 이동, 물리치료실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이탈하여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종사자가 노인 돌보는 일에 방심하고 외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즉 문을 열고 청소를 한다든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다든가, 노인과 근접거리에 있지 않고 노인에게 발생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로 이탈하게 되고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실종사고로 연결되게 된다. 수시로 드나드는 가족, 내방객, 봉사자들은 문단속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입과정에서 문 잠그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문단속을 하지 않고 출입하게 되고, 자유로운 출입 과정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종사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고 평소 관리의 습관화, 체계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용품 사용지식 및 상식부족,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나 화재, 가스 취급부주의, 담뱃불에 의한 화재, 유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사고들은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휠체어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다른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심한 하지마비로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A 할머니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 중, 화장실 문을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전동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아 당황했다. 용변이 급한 상황에 전동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아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때마침 모든 시설 종사자와 노인들이 모여 시끌벅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빠르게 와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 더더욱 당황한 A 할머니는 화장실 문에 선 채로 3분여간 멈춰 있다가 그만 휠체어 위에서 소변을 참을 수 없어 실수를 하고 말았다.

◎ 사례 2: 승강기 보수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치매노인 10여명이 동시에 2층 프로그램실에서 3층 생활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문이 닫혔다. 3층 운행 버튼을 눌렀으나 작동이 안 되고 문도 열리지 않아 10여분 갇혀 있는 사고를 당했다. 우선 승강기 관리원과 119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고, 갇힌 노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문밖에서 치매노인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며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구조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고 발생 신고 후 10분 이내에 보수업체 담당자와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다. 보수업체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보수업체 담당자의 신속한 활동으로 문을 열고 안전하게 모두 구조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정원초과로 진단되었지만 정원초과 시에는 정원 초과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신호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승강기 보수 업체의 승강기 안전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진단하였다.

◎ 사례 3: 종사자의 방심과 업무소홀로 인한 실종 사고

생활실 노인들이 안전하게 있다고 판단한 요양보호사가 잠깐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B 어르신이 뒤따라 나갔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여 대문 밖으로 나갔다. B 어르신이 밖으로 나간 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후 3시 간식 시간에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밖으로 나간 지 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지구대에 신고 후 자정이 넘어서 11시간 만에 행인의 신고로 찾을 수 있었다.

◎ 사례 4: 내방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종 사고

주말에 가족들이 면회 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여러 가족이 면회를 오게 되면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면회실 외 생활실에 왕래하면서 출입문 단속을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C 치매노인이 시설 밖으로 나갔다. 나간 지 20분이 지났어도 담당 요양보호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시설에서 500m 전방에 있는 슈퍼 주인이 정상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슈퍼로 안내하여 모셔 놓고 옷에 새겨진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20분 만에 찾을 수 있었다.

◎ 사례 5: 치매노인의 배회증상으로 인한 실종 사고

치매증상이 있는 D 노인은 팔찌를 채워 드러도 뜯어내고 목걸이를 걸어 드러도 거부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을 나가서 2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배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입고 있던 조끼에 기관명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있었으나 70세 초반의 노인으로 짧게 보여서인지 신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종된 지 4일 만에 시민의 신고로 찾게 되었는데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여 다가가 보니 옷에 연락처가 있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사례 6: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노인과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르던 날, 몇몇 가족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리겠노라며 익혀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다. 시설의 주방에서는 그날 어르신들 저녁식사를 준비해야하는 관계로 가족들에게는 시설 마당에서 버너로 음식을 익힐 것을 권유하고 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달려 나간 종사자는 아까 가족들에게 빌려준 버너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유인 즉 가스밸브를 완전히 닫지 않고 급하게 버너를 켜면서 밖으로 흘러나온 가스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다행히 마당에서 일어난 불을 붙인데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주방 이외의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실감할 수 있는 경우였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세계인권 제 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의 각종 사업안내와 매뉴얼 등에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세부적 지침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서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분명히 명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시설 안전관리 지침을 제시해두고 있다.

◎ 시설 안전관리지침: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시설 내에 생활하는 노인 중 보행, 인지기능이 양호한 노인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치매 등)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본 교재의 부록 5에 제시된 외출·외박 절차, 실종시 처리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 안전관리지침: 화재 예방 및 발생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펫,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등), 경보

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복도, 직통계단)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 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노인의 신체기능을 고려한 보장구 사용

종사자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기능 수준에 가장 적절한 일상생활수행 범위(예. 노인이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지? 혹은 전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하는지?)를 결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장구를 선택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인지 기능과 상반신 기능을 유지하는 노인이라 해도 시력이 매우 약하다면 전동휠체어로 이동시 장애물 발견이나 정확한 방향 사정이 되지 않아 오히려 노인의 이동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 장치가 위험한 도구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보장구 고장이나 사용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보장구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과정이자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노인이 보장구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종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보조 장치 설치와 이용 교육

생활공간에서 쉽게 발생하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는 침대, 화장실, 욕조, 계단, 복도 한 칸 예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하고 노인들이 이 손잡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손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평소 이 손잡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사자는 시설 내 구비된 여러 도움 장치들을 반복적으로 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장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욕실이나 마루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서 최대한 시설의 안전장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미끄럼 방지 장치는 노인들의 신체적 균형을 바로잡는데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노인들의 낙상이나 넘어짐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다.

낙상을 예방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위해 시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즉 노인의 모든 동선에는 반드시 야간에 상시등(常時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야간 상시등은 밤이나 전기가 나갔을 때, 혹은 천재지변으로 전력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늘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화과정에서 노인들은 시력이 상당 부분 감소하므로, 이는 거리에 따라 물건을 명확하게 보기 어려운 시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둠속에서 물건이나 방향을 인지하는 감각도 다소 둔화되기 때문에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밝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생활공간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 노력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마찰력이 높은 바닥재를 사용하여 노인이 어떠한 실내화를 착용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경사로의 각도에 따라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양쪽에 모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몸을 지탱하도록 돕는다. 또한 승강기는 문 안쪽에 센서 가리개를 부착하여 승강기 입·출시 정지용으로 활용하여 안전함을 확보하도록 한다.

침대는 가능한 낮은 것으로 배치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넓은 폭의 침대를 배치하여 좌우로 체위변경 시 펜스 난간에 부딪치는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침대와 침대의 배치 간격을 넓게 하여 부딪힘을 방지하고 높낮이 조절 침대를 배치하여 앉고 서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가구 및 사물함은 모서리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불박이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파는 모서리가 없고 단단하지 않은 폭신한 것을 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1인용 의자는 팔걸이가 장착되어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과 탁자는 모서리가 없는 둥근형을 배치하여 이동이나 배회 중 부딪치는 사고를 예방한다.

휠체어의 잠금장치 및 바퀴가 안전하고 튼튼한 재질의 휠체어를 구비하고 가능한 자주 휠체어 사용 전 잠금장치 작동, 바퀴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량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휠체어의 경사로 이동 수칙 및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성을 점검한 후 사용한다.

바퀴 달린 워커(walker)는 이용자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동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따라서 워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 전 접이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 후 안전성이 보장 될 때 사용한다. 노인의 신체기능 정도에 따라서 바퀴달린 위커와 바퀴 없는 위커를 사용하도록 구분하여 관리한다.

◎ 실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

치매노인처럼 인지기능이 손상된 노인의 경우 노인의 성명과 주소지, 연락처가 기입된 목걸이나 팔찌 등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시 신속하게 노인을 발견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인의 사진이나 기타 자료들을 준비해 놓아서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치매노인이 종사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서 활동하게 한다.
- 치매노인의 활동 공간 영역을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한다.
- 신원확인이 가능한 팔찌, 목걸이를 항상 채워 드린다.
- 팔찌와 목걸이 착용을 거부하는 노인은 상위 겉옷에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린다.
- 실종의 위험성이 있는 노인의 의복은 상하 의복을 무늬가 없는 단색의 옷을 착용케 하면 실종 시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방문객의 부주의로 인한 노인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에게는 출입 전후에 문단속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치매노인의 특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인지손상이 심한 치매노인의 경우 공간 능력과 기본적인 지남력이 손상되므로 심한 경우 실내에서도 화장실이나 자기 방을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고, 문이 열려있을 경우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 실종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노인이 생활공간에서 이탈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신속히 가동하여 대응체계를 갖추고 확인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실종 사고의 경우 대부분 치매노인들에게서 발생하게 되는데, 치매노인들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있던 장소로 다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실종노인 수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① 원내를 샅샅이 살펴본다.(장롱, 창고, 계단아래, 욕실, 기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
- ② 마당, 대문 밖 가까운 거리부터 반경을 넓혀간다.
- ③ 주변 노인과 상담을 통해 이탈 당시 정보를 얻는다.(머물렀던 장소, 시간, 행동, 착용복, 목격자 탐문 등)
- ④ 상시 행동, 대화, 욕구 파악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
- ⑤ 신상정보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
- ⑥ 차량으로 주변 도로 순찰(인근가게, 시장, 상가, 하천, 대로)
- ⑦ 시설 내에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한다.(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종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⑧ 보건복지가족부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www.elder119.or.kr)에 접속하여 이탈노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알린다.

◎ 전기, 가스에 의한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와 더불어 만약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선의 합선, 플러그 접촉 불량 및 누전,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과전류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화재요인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종사자들은 이렇게 사소한 전기화재 요인을 유의하여야 한다.

종사자들은 소화요령, 인명대처,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화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화재예방설비 및 연소방지시설을 확인하고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종사자는 화재 발생 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재 초기에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 ① 불을 발견한 사람은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친다.
- ② 비상벨을 누르거나 소리 나는 물건을 두드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 동시에 노인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때 노인대피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구내전과 및 초기 소화 활동 조치를 취하고 대피 요령에 따라 노인들을 피난 구조대 방향으로 침착하게 안내한다.
 -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가 질서 있게 노인 대피를 유도하며 대피노인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큰소리 외침이나 거친 행동을 자제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유독가스와 연기 질식 방지를 위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자세를 낮추고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로사용해서는 안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노인들을 옥상으로 대피시켜 바람을 등지게 하고 구조를 기다린다.
- ③ 119에 신고를 한다. 이때,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119에 제공한다.
 - 정확한 위치, 주소, 주변의 큰 건물을 알려 준다.
 - 건물의 어디서 무엇이 타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
 - 건물 안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는지? 알려준다.
 - 119신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준다.

- ④ 소화기, 젖은 담요 등을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한다. 이때 소화전 사용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 사용법: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관창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밖으로 꺼내어, 관창을 잡고 불난 곳에 호스를 전개한 후 밸브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
 - 관리요령: 화전함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며, 내부에 습기나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막아서 보관한다.
 - 화재 수신기 오작동 대처 요령: 화재발생이 아니더라도 상승 열기에 의해서 화재 감지기가 감지되어 오작동이 발생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신기에 부착된 주경종과 지구(층별)경종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벨소리가 정지되는데, 만약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동시에 눌렀는데도 오작동이 멈추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⑤ 건물에 갇혔을 때
 -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옷가지 등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수건 등을 물에 적시어 입과 코를 가리고 대비한다.
 - 창밖으로 성급하게 뛰어 내리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 옷에 불이 붙으면 물을 적시거나 바닥에 누워 뒹군다.
- ⑥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조치 요령
 -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타월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아 연기의 유입을 막는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뿌려 불길의 확산을 막는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 팔 등은 물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구조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말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승강기는 시설 생활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다. 승강기는 이동에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법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다. 즉, 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장치는 물론 각종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관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는 설치한 업체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하나 시설 종사자 역시 기본적인 상태 점검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운행 및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운전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승강장 호출버튼 점등, 표시장치의 상태(층표시, 운전방향표시, 홀 랜턴의 점등 등)를 점검하고, 카 내 버튼의 동작(행선버튼, 문 열림 버튼, 인터폰버튼 등) 도어장치의 열림과 닫힘 동작의 가부를 점검한다. 둘째, 안전장치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문 닫힘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즉 문 닫힘 안전장치작동 시 즉시 문의 닫힘 동작이 멈추고 도어가 열려야 한다.
- 문 열림 버튼을 점검한다. 즉 승강기가 정지 시에는 언제든지 문의 열려야 하고 주행 중에는 열림 버튼을 눌러도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승강장 호출버튼, 내부 통화 장치, 기계실 잠금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즉 승강장 문이 닫히는 도중에 호출버튼을 누르면 문의 닫힘 동작을 멈추고 즉시 열려야 한다. 기계실은 승강기를 급정지, 층간정지 등 조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해야 한다.

셋째, 성능확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문 장치를 점검한다. 즉 움직임에 걸림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속도는 적절한지 소음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착상 정밀도를 확인한다. 즉 승강기가 정지했을 때 승강장의 바닥면과 카 바닥면의 수준 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오르고 내릴 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 기동, 감속, 정지 시 쇼크 및 주행 진동을 확인한다. 이는 평소와 다른 진동이나 쇼크가 발생되면 보수자에게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하게 한다.
- 과부하 장치, 인터폰 및 비상등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즉 탑승 인원이 초과했을 경우 문의 닫혀서는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출발해서도 안된다. 카 내에서 외부와 통화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예비조명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엘리베이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의 일상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첫째, 승강기의 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한 사유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만약 분실 및 파손 시에 즉시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비상열쇠를 확보해야 한다.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운행관리자의 직위와 성명, 관리책임자 및 관리위치, 비상열쇠의 종류, 보수업체의 회사명과 비상연락망,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후송이 가능한 병·의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운행관리일지에 승강기 고장 시 연락시간, 보수자 도착시간, 수리완료시간을 기록하고 고장원인 및 조치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승강기 이용자 사고발생을 인지했을 시 즉시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 소재지, 건물명, 발생장소, 일시, 피해정도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문턱 홈에 이물질이 낄 경우 문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승강장실 문홈을 청결히 하고, 카 내의 조명장치, 문틀, 승강장도어, 조작반, 승강장버튼의 파손이나 손상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승강기 제원(諸元), 검사필증, 안전이용규칙 및 긴급비상연락망 등을 부착하여 비상시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비상 연락을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승강기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승강기관리원 안전사고 상황실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상황실 전화 : 전국어디서나 T.1566-1249)
승강기 안전사고로 승객이 안에 갇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절차를 따른다.
- 갇힘을 통보 받으면 즉시 보수회사로 연락한다.
- 갇힌 승객이 구출될 때까지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 비상 구출은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하므로 종사자들의 구출접근은 피해야 한다.
- 비상시 승강장 문과 카 문을 열고 승객을 구조할 때 추락의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대피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대피 층으로 불러들여 문을 닫고 정지시킨다.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활동의 목적으로만 작동시킨다.
- 기계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전기 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 작업을 하고,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한다.

제3장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인간 존엄권은 인권의 본질적 의미와 맞닿아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지니며, 성, 연령, 건강상태와 장애, 가족상황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평등한 처우 받을 권리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감금, 폭행, 착취와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인격적 존중과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삶이 반드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시설 생활노인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하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보장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들이 갖는 인격권과 평등권,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경제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인격권과 평등권

1. 인권 이슈

인권은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 받으며, 인간이 되기 위한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인권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 받을 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인간적 존엄성 유지에 필수적인 인격권과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을 만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노인 인권의 핵심적 영역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평등한 존재로 처우 받을 권리를 지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며 그럴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노인차별주의(ageism)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을 ‘불쌍한 노인’ 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등과 같이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부정적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잘못된 편견이므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다른 생활노인의 가족 등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신화(myth)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언어 사용이나 일상적 행동을 통해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2)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종사자나 같이 생활하는 동료 노인들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고 싶어 하며 그러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절대 다수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간봉사전문직 종사자로서 노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동료 노인들 역시 상호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종사자는 노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료 노인을 존중하기 보다는 안하무인격의 언행을 일삼는 노인들도 간혹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 개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과정에서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료 노인들 간에 인격적 모독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노인복지시설은 다수의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사생활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로움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리만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개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기호, 선택, 결정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패턴(life style)을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노인은 성,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공경의 가치관과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심하며, 시설 내부에서 조차도 성별에 따른 차별, 자녀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 용모 등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출신지역이나 경제상태에 따른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차별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병들어 곧 죽을 노인, 가망 없는 노인 등으로 치부되는 등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제거하여, 모든 노인들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반말로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례

나이도 어린 녀석이 걸핏하면 반말이고, 밥 먹다 음식 조금 흘린다고 소리 지르고, 조금 천천히 걸어도 수시로 잔소리고, 하여튼 쉬지 않고 반말에 잔소리야. 손자뻘 되는 녀석한테 그런 대접받으면 하루라도 일찍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 사례 2: 집단생활을 위해 개인생활이 무시되는 사례

나는 몸도 성하고 정신도 말짱해. 그런데 여기서 살면 무조건 분홍색 그것도 색깔도 영 촌스러운 붉으죽죽한 추리닝을 입어야 해. 안 그러면 별의 별 소리 다 들어. 잘났다느니, 혼자 예쁜 척한다느니…….여기 들어오고 나서 내 맘대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 사례 3: 성에 따른 차별

우리 시설에 할아버지 한 분이 폭력이 좀 강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은 남존여비 사상이 엄청 강해서, “○○은 맞아도 돼” “○○○은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심지어는 할머니들을 때리기까지 해요.

◎ 사례 4: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우리 시설에는 자식들이 면회를 자주 오는 A노인이 있는가 하면 입소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면회를 안온 B노인이 있는데요. A노인은 자녀가 면회를 왔다 가면 자기 자식들이 효자라고 자랑하면서 “당신 아들은 면회 한번 안 오네 그려. 아들이 자네를 별로 안 좋아하나보지?”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해요.

◎ 사례 5: 건강상태와 질병에 따른 차별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에 마비가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게다가 혈관성 치매증상도 있어서, 잘 기억도 못하고 방향도 잘 몰라서 가끔 화장실 가다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미친 사람”, “정신병자”라고 무시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 사례 6: 생활습관에 따른 차별

건강하신 어르신께서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본인은 빨리 먹고 나서, 천천히 먹는 어르신들 것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요. 그러다가 성격이 급해서 남이 먹는 음식을 자기가 뺏아서 갖다 놓으세요. 성격이 급해서 빨리 먹어라 간섭하고…….안되면 뺏어가 버리고…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은 세계 인권선언 제1조와 제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하 인권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 중에서 첫 번째 권리로,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인권교육을 통한 종사자 및 노인 인식개선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종사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영역,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권리,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 방법, 동료 노인 간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과 함께 노인에 대한 제반 케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봉사자, 실습생, 방문객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와 시설 인식개선 노력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 방문객 또는 면회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생활노인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노인 인권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쇠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홍보와 생활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나가야 한다.

◎ 시설생활과 서비스에서의 존칭어 사용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을 부를 때 “어르신” 또는 “○○할아버님, 할머니” 또는 “어머님, 아버님” 등과 같은 존칭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생활이나 케어를 할 때 극존칭을 사용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셨나요?” 정도의 존대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이름만 부른다는가, 치매환자 등 인지가 낮은 노인을 아이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노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 공개된 장소에 생활노인의 정보 공개 금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노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활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매체에 노출시키고 시설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같은 노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의사표현 존중

노인 중에서는 의사표현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사표현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개인생활 보장

모든 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욕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복, 머리스타일, 취침 및 기상 등 일상생활 전반의 개인적 선택이나 결정이 집단생활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 생활패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노인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TV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데 시설에서 정한 취침시간이라고 하여 TV시청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다른 노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TV의 음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보장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공간이며, 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흥미와 욕구, 기능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노인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노인의 성별, 교육수준, 질병 종류 또는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낮은 점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만약 노인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기능수준이 낮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의 특성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독서요법을 실시하고자 할 때 문맹노인은 참여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때 문맹노인들을 프로그램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천방법이다.

◎ 부적응 행동에 대한 비난의 금지

노인의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된다. 특히 다른 노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노인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부적응 행동이나 이상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시설 종사자는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설생활의 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능력,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나 동료 노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나타날 때는 즉시 상담을 통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별을 당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적절한 상담과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 인권 이슈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최근에는 노인학대(elder abuse)의 개념이 노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부적절한 처우(maltreatment)'라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같은 노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의한 방임, 자기방임까지도 학대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노인시설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행위인 학대가 발

생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재정적 착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욕설과 같은 언어적 학대, 수치심 유발 등과 같은 심리적 학대, 유기, 기본권 침해 등은 학대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7)에서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라는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실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02)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강제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2%, 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이용당한 경험이 4.9%, 시설 종사자에 의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7.0%, 아픈데도 종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경우가 16% 등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른 노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40% 가까이 이르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발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의한 학대 뿐 아니라 동료 노인 간의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학대, 방임 등을 당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안전생활권 보장과 관련된 세부적 인권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3)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5)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7) 유기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부양의무자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2.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조와 제 9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 시설 생활노인 학대 예방 지침 및 학대사례 개입 지침

- 전체 조항(부록 5 참조)

3. 인권 사례

◎ 사례 1: 노인과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A 할아버지가 있어요. A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선생님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罰)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사례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사자방 C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몰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 인가보네, 얼굴 빨개진 게…….(중략)…….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빠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아이-, ××!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썼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썩워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봐, 얼른…….

◎ 사례 3: 성적 학대

실습 갔다 경험한 건데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와상노인 기저귀 갈 때 베드 주변의 커튼을 치고 갈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러다 커튼에 똥 묻으면 빨래만 늘고 할머니는 창피한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냥 같으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지만 실습생이라 어쩔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 사례 4: 재정적 학대

들리는 말에 의하면 D 할아버지는 시설 들어오시기 전에는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자식들이 어르신 도장 훔쳐서는 그 많던 돈을 사업자금으로 써버렸다고 하네요. 어르신한테 한마디 말도 않고 말이에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은 시설에 내야 하는 돈 조차도 자식들이 안 보내줘서 “내 평생 눈치 보며 밥 먹기는 참이야” 라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해요.

◎ 사례 5: 방임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했더니. E 선생인가 하는 놈이 들은 척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시시덕거리더라고, 글썸...일부러야 그럴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하루 종일 할머니, 할아버지 뒷수발하고 대소변 치우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권리는 어디 가서 찾는데요.

◎ 사례 6: 자기방임

모든 걸 귀찮아하는 F 할머니가 있어요. 걱정되어 매번 “할머니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저랑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요, 얼른요…….” 라고 권해보지요. 그러면 F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그냥 내버려둬. 살만큼 살았는디 이러다 죽겠지. 귀찮으니까 저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몇 번 더 권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내가 왜 이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 사례 7: 유기

우리 시설 C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가족하고 상의해서 집으로 모시고 갔다 오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번은 부랑노인이 있다고 입소시켰으면 좋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에 가봤더니 아 글썸 그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식들이 버린 걸 거예요.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학대유형	세부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적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를 한다.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 물건이나 흥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행한다.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한다.
재정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 노인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등).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옷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의 생활실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학대유형	세부적 학대행위
자기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낮은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 노인학대 사례 발생의 예방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안전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 가족이나 외부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발견과 신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축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의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 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 사례에 개입의 평가와 사후조치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

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경제·노동권

1. 인권 이슈

인권 개념의 발달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 또한 신체적 자유권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중시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공동생활을 하므로 생활노인의 경제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활노인의 재산과 동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경제적 이득이나 치료적 목적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등의 경제·노동권은 매우 중요한 인권 영역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시설생활에 따른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활노인의 경제·노동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경제·노동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세부적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재산과 금품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동산이 있는 경우 대부분 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자녀들이 관리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경제적 권리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비 등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신 관리하거나 노인의 재산을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중증환자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재산이나 자금의 대리 관리의 문제나 부당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노인의 자금, 재산, 자원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착취, 오용하거나, 훔치거나, 무단으로 소유물을 사용하는 등의 재정적 학대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금품, 소유물을 노인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시설 생활노인의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료, 원거리 외출 시 소용되는 교통비, 여가활동(영화감상 등) 등은 비급여 항목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비급여 서비스임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채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 또한 생활노인이나 가족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비급여 서비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설 운영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경우 비급여 서비스의 항목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강제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강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생활노인의 입소 시 갖고 온 개인 소유 물품이나 지참금, 교통비, 후원금 등의 사용 잔액으로 구성되는 유류물품의 처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극히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유류금품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여 노인의 강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4) 강제노동을 거부할 권리

노동권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생활노인의 노동 참여는 경제적 이윤 추구의 목적과 치료적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지라도, 반드시 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치료적 목적일 경우에는 노동행위가 어떠한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공지하고 노동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제적 목적으로 한 노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파생되는 이윤을 정당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생활노인의 노동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시설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노인을 강제로 노동에 참여시키거나, 치료적 목적을 가장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 개인 물품관리의 편의성 추구로 인한 동료 노인의 생활방해

4인실 사용하는 A 어르신은 개인이 사용한 물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많아 종사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권유하였으나 그것이 편하니까 간섭하지 말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워낙 A 어르신의 성격이 난폭하여, 함께 방을 사용하는 다른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것저것 물건이 어질러진 생활실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 사례 2 : 위탁관리를 요청한 통장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B 어르신은 상당액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입소하였으나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관하다가 도둑맞을 것이 두려워, 사무실에 통장을 대신 관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B 어르신은 몇 달이 지나서 자기 앞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통장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처음 맡긴 그대로 일뿐 한번도 은행에서 통장을 찍어보지 않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 사례 3 : 치매노인 재산의 적절치 못한 위탁관리

C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므로 통장을 시설에서 위탁관리해 줄 것을 큰아들이 입소시킬 때 요청하여 시설에서 통장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다. 입소한지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며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합의하여 C 어르신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C 어르신의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내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사례 4 : 치매증상과 개인물품의 도난 사건

D 어르신은 입소할 때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은 귀한 보석을 소지하고 왔으며,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D 어르신이 그 보석을 누가 훔쳐갔다고 찾아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D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샅샅이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르신이 다들 도둑놈들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녀, 가족과 상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큰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난번 면회 갔을 때 D 어르신이 큰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었노라고 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D 어르신은 걸핏하면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고 소란을 부리곤 하였다. 시설에서는 그때마다 한번씩 홍역을 치렀으며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워낙 도둑을 맞았다는 말을 자주해 치매증상 중의 하나인 도둑망상일 것으로 추정하여, 가족에게 진단을 받게 한 결과 치매로 밝혀졌으며 치매증상 중에서도 피해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그때부터 특별관리를 하게 되었다.

◎ 사례 5 : 유류금품의 처리

E 어르신이 임종을 하자 시설에서는 한명밖에 없는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장제서비스 지침에 의거하여 장례를 치르고, 노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유류금품은 시설운영위원회를 거쳐 처리하였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아들이 나타나서는 장례식은 당연히 시설에서 치러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장례식에 들어간 어르신의 돈과 남은 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시설에서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인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것 같아, 시설장의 개인비용으로 그 돈을 되돌려주었다.

◎ 사례 6 : 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치료적 목적의 노동행위

F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시설에서는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설의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러나 F 어르신은 어느 정도 일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인가 일을 거부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 가족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개인금품을 스스로 관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서비스 항목의 이용을 스스로 선택하며, 강제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경제·노동권은 세계인권선언 제 17조와 제 23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고나한 국제조약 제 6조와 제 7조, 제 9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도 노인의 경제·노동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 중에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관한 권리를 명기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유류금품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안전관리지침: 유류금품 처리

- 생활노인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 위 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유류금품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 위 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생활노인 생존 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사 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개인 금품의 자율적 관리

생활노인이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두어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정 사용결과를 알려야 하며, 노인이나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공지와 개인의 선택 존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월급여액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노인과 가족 등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에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설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유도해서도 안된다. 특히 비급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 비용과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과 가족이 스스로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생활노인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가족이나 노인에게 규정되지 않은 특별비용을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 합리적 절차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리

생활노인의 사망 시에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장례절차는 입소노인의 유지와 보호자의 뜻에 따라서 진행한다. 보호자가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며, 시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반면, 보호자가 없는 입소노인의 사망 시에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장례를 치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평소 입소노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유류금품의 처리 역시 입소노인의 사망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유류금품의 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등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노동행위의 금지

강제노동이란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 치료목적이 아닌데도 일을 시키는 것, 일을 시키고 파생되는 금전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수익사업이나 이익창출을 위한 어떠한 경제활동에도 노인을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생활노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해서 노인의 신체능력에 적합한 노동행위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이 경우 노인의 노동행위로 인해 창출된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설령 치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노인의 자발적 참여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체의 노동행위를 시켜서는 안된다.

제 4 장 정치·종교·문화생활권

인간이면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여가를 향유하고,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과 문화생활권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갖는 정치적 자유권, 종교적 자유권, 문화생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

1. 인권 이슈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적 정보의 제한이나 타인의 정치적 개입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자유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하거나 시설의 종교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종교적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앞으로 생활노인의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받을 권리

개인이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정치적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종사자나 동료 노인이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여 생활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여서도 안되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도 안된다.

2) 정치적 정보를 제공받고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경우 정치동향이나 선거 등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치홍보가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학습하지 못한 노인

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정치적 정보에 둔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되, 부당한 정치적 관여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3) 투표권을 행사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공직에 참여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생활노인이 정치적으로 입후보하고 공직에 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고 하여도 시설 종사자들은 생활노인이 이러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분명하게 그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경우 투표를 통한 공직 참여의 권리보장 보다는 선거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생활노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 그 권리행사를 도와야 하지만, 비밀투표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 종교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바꿀 권리를 지닌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종교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특히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특정 종교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생활노인에게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5) 종교의식에의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모든 종교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적인 종교적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을 설립한 법인의 종교에 따른 각종 의식이나 행사에 노인들의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노인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의식이나 활동들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정치 정보의 제한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여기서 살다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누가 선거에 대해 알려줘야 찍으러 가든가 말든가 할 텐데, 어느 누구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 사례 2: 정치적 견해의 표현으로 피해를 본 사례

나한테 정치 얘기 하지 마. 정치라면 년덜머리가 난다, 년덜머리가…….지난번 선거 무렵인데 우리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어. 평상시에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사오고, 무슨 명절날이면 꼬박 꼬박 찾아와서 인사도 잘하고…….노인네들이 선거 얘기를 하기에 “그 양반 말고 누구 나온 사람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 뭐 누러 갈 때하고 누고 나올 때 하고 너무 달라. 그 양반도 그럴지 모르지” 이 한마디 했다가 욕이란 욕은 다 얻어 먹었어, 영감들한테 말이야.

◎ 사례 3: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A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는 B 후보자 찍으셔. 그래야 우리 시설에 도움이 될 거요. 알았죠, 어르신. 자, 약속해요, 손가락 걸고.

◎ 사례 4: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한 사례

아프다고 해도 강제로 예배드리러 가야한다고…….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몰래 기도해.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정치적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 제 21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종교적 자유권은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등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에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노인복지시설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견해를 다수의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한 노인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다른 생활노인과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고 묵살해버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종사자나 동료 생활노인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당할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모든 생활노인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동료 노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올바른 선거교육과 정보 제공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정치와 선거의 의미, 선거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설에서 자체 제작한 선거교육자료는 공식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적법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생활노인들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일정, 후보자의 신상, 공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투표 참여보장과 편의 제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문맹이나 건강상태가 나빠 혼자서 투표함으로 이동하거나 기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절대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

◎ 시설과 종사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금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자, 종사자들이 생활노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적절하지 못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선거개입을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동료 노인들에 의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선거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특정 종교와 종교의식 참여 강요의 금지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립목적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렇지만 생활노인 중에서 종교가 없거나 시설에서 신봉하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생활노인들에게 특정 종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종교적 신념의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의식이나 행사, 포교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II. 문화생활권

1. 인권 이슈

노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와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년기의 문화생활 향유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성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인하여 생활노인의 문화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생활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문화생활권 침해 사례를 목격한 노인이 13%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적극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케어서비스(care service), 질병의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활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앞으로 생활노인의 문화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신체 및 정신적 제약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생활노인을 위해 여가나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도 욕구가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노인 전체 및 개인의 흥미나 취향, 욕구, 기능 수준에 적합한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에서 아무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노인이 스스로 참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강제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참여는 즐거움을 가져다주거나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되 생활노인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노인이 있다면 참여 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여야 하지만, 강제적 참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내 여가 및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노인복지시설은 생활노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간, 설비나 장비, 매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장비나 매체의 부족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공간, 시설, 장비와 매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생활노인들이 문화생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매체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4) 시설 외부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시설 내부에서 제공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만을 이용할 수 있다면, 여가문화생활의 범위는 매우 제한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노인들이 시설 외부에서 제공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노인

문화생활, 말이 좋지. 그런 거 여기는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어. 없더니까.

◎ 사례 2: 여가활동 참여 선택권을 침해당한 노인

월요일은 음악활동, 화요일은 미술활동, 수요일은 운동교실…선생들이 열심히 해. 잘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 아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요가 배운다고 그것도 유명한 강사 많은 돈 주고 데려온 거니까 꼭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거든. 근데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난리가 아니네. 그래서 한두 번 따라 했는데, 그게 건강에 좋을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영 아녀.

◎ 사례 3: 여가공간이 닫혀 있는 사례

제가 근무하는 시설은 재활프로그램이다 여가기회를 준다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다른 시설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자부해도 될 정도예요.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처음에는 귀찮아하더니 이제는 재미있어라 하고, 열심히들 쫓아 다녀요. 그런데 한번은 노래방 기기가 있는 프로그램실 문을 안 닫았는지 잊어버리고 못 닫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노래방 기계를 고장 나게 한거예요. 그거 고치느라 수리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그 방은 노래방 프로그램 할 때만 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예 자물쇠로 잠가놔요. 그래야 또 부서지는 일은 없으니까…….

◎ 사례 4: 외부 여가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례

이 녀의 다리가 문제여.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 방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게 모두한테 편하면 안가야지.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문화생활권은 세계 인권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하 인권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 중에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시설 내외부의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문화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실천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으나, 시설의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가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생활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케어와 재활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여가문화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활노인들의 여가문화 서비스 선택권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생활노인에 대한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여가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즉, 생활노인의 흥미나 취향,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 등의 다양한 영역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이 쉽게 여가문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능 제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내에 아무리 다양하고 충분한 여가문화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여도 외상노인,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은 서비스 접근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 외상노인을 위한 개인 또는 소집단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된 외상노인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책을 읽어주거나 신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치매 등의 인지장애로 인하여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렵고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지프로그램에 노인이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노인의 여가문화서비스 선택권 보장

노인복지시설의 제한된 여가문화서비스로 인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여가문화서비스에 비자발적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은 자유로운 활동이며 선택적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충분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와 이용 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여가문화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생활노인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전문적 목적에서의 적극적 서비스 참여 권유는 생활노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 시설내 여가생활 공간과 매체의 개방

노인복지시설내에 아무리 많은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 장비와 매체가 있다고 하여도 노인이 접근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다소의 파손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과 시설, 장비와 매체를 24시간 개방하여 생활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여가문화서비스의 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여가문화서비스는 재정, 시설,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 시설 외부의 여가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외출이 가능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외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쇼핑, 영화보기,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나들이 등의 다양한 시설 외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때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 내부의 여가문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예술문화단체, 봉사단체 등을 시설로 초청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교류 · 소통권

모든 생활노인의 안전보장과 질 높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의 규범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 개개인의 인권과 욕구를 개별화하여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노인의 개별화된 욕구가 노인과 종사자 두 사람의 관계나 종사자의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시설 내 다른 노인과 같이 제3의 관여자와 연관된 경우에 종사자는 노인의 원활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실천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욕구는 시설의 중요한 규범, 원칙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교류 및 소통을 주요한 인권 보호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시설 종사자가 어떻게 이 영역의 과제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서비스의 제공자, 인권 보호의 책임자로 인식되어 왔던 종사자 역시 인권의 주요한 수요자로서 어떻게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

1. 인권 이슈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시설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 입소 이전에 유지해온 기존의 관계들, 특히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significant others)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보거나 즐겨하던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욕구는 각 시설의 외출, 외박, 또는 외부활동 참여, 가족 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체 규범이나 규칙을 통해 노인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욕구가 시설의 공식화된 규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설생활에서 노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회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다양한 인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통해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의 현실적인 상황과 노인 개인에게 초점화된 인권 중심 이슈가 연속선상에서 일관적인 논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다. 노인의 주요한 생활환경이 되는 시설 여건과 개인 욕구에 기반을 둔 인권적 실천 간의 현실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지 살펴보자.

1) 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생활의 권리

시설의 공동생활에서 개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기 어려운 가장 이유는 시설에서

의 공동생활 규칙의 준수성이 유지되어야 다양한 성격, 질병, 적응 수준을 보이는 노인들을 종사자가 일관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및 사회관계 유지를 위한 외출이나 지역 활동 참여 등은 시설 밖 영역에서 노인들이 자유로이 활동하면서 전혀 통제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의 자유, 참여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노인 개인의 욕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권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밖에서의 노인 안전 역시 담보해내기 위해 부득이한 제한을 해온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시설 밖에서도 노인 개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등 개인적 제약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활동하고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 가족 동의와 같은 기본 전제 사항 역시 시설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과 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와 치료자 비율만큼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과 종사자로서는 전적으로 노인의 욕구에만 기반을 두어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노인의 욕구는 참여와 활동 등 소속의 욕구에 앞서 생존과 안전이 되기 때문이다.

2)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노인이 요구하는 여러 외부 활동을 보장하고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가족의 협조가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러한 협조가 매우 빈약하고 동기화되어 있지 못한 취약점이 있다. 대부분의 시설 생활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외부 활동은 예전에 자신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던 집,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다녀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한 결과 많은 시설 노인들이 자신을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애타게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이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가족의 비협조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가족으로서의 노인 보호와 관련한 모든 것을 시설에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이 원하는 만큼 자주 집으로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 종사자로선 자칫 중요한 노인보호의 파트너인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비협조로 자신이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욕구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하는 노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가족을 만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아야하는 고통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노인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때에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이 살던 집에 가볼 수 있도록 종사자와 가족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겠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 노인보호를 위한 종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은 종사자가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환경 체계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다루기 어려운 외적 장애물이 된다.

3)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들의 다양한 참여 및 관계욕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결정해야하는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회활동 참여 및 가족에 대한 관계 욕구는 이들 스스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구되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우울 등 정신상의 증상 때문에 욕구처럼 요구되어지는 등 다양하다. 이 때 종사자는 이러한 요구들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여,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해야하는지 갈등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욕구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한 요구일 경우 이 욕구를 노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욕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욕구를 '욕구'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이런 욕구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의 경우라 해도, 노인의 욕구가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동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노인의 가족이 노인의 참여 및 활동 욕구 충족에 동의한다 해도 이 욕구가 우리 시설의 규칙에 위배되는 요구의 경우 어디까지 도움을 제공해야하는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 자칫 종사자는 명백한 서비스의 기준 없이 자신의 개별적인 기준 혹은 그때그때마다 시설장이나 상급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인들은 종사자들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시설에 요구할 수 있는 욕구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지 위해 모든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외출, 전화사용, 외부와의 접촉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직된 규칙적용은 자칫 노인의 인권 보호보다 시설의 운영 편이성이 더 강조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가 노인의 인권보호와 실무의 효율적 운영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의 활동과 참여, 관계 욕구를 우리 시설에서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지원할 것인지 노인과 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과 종사자 모두의 혼란을 효율적인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장치가 될 것이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가족의 노인과의 관계 회피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여 시설에 들어 온 A 할아버지는 시설 입소 후 자녀들이 약속대로 자주 찾아오지 않자 종사자에게 자주 ‘자녀들을 불러 달라’,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 며 요청했다. A 할아버지의 담당 종사자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상황과 요구를 알려주고 한 번 시설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이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거나 나중에는 종사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가족만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자녀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하기도 하고, 종사자에게 다시 연락해보라고 매일같이 요청하며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종사자는 할아버지가 상심할까봐 본인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녀들이 할아버지는 찾아오지 않고 시설의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 사례 2: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

자녀 모두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중풍인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되어 시설에 들어오게 된 B 할머니는 자신에게 매우 지지적인 자녀들이 시설에 방문을 하면 시설을 나가기 위해 시설의 종사자가 자기를 무시한다, 간식을 달라 해도 주지 않는다, 여기는 반찬이 몇 가지 되지도 않고 맛도 없다 등 사실과 다른 불평을 하곤 한다. 평소에는 다른 노인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주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B 할머니는 경우에 따라 종사자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등 자신의 자녀들이 시설에 자신을 맡긴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 늘 자녀들이 오기만 기다렸다가 이들을 만나면 늘 똑같은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들은 자녀들은 종사자에게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셔달라며, 자신들이 지금은 모셔갈 수 없으니 가능하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이렇게 계속 할머니가 불평을 하면 할머니를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혹은 자신들도 이제는 시설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지쳐가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만 기다리는 B 할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런지 종사자는 고민하게 되었다.

◎ 사례 3: 시설 외부의 종교활동만을 고집하는 노인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C 할아버지는 시설에서 하는 미사보다 직접 성당에 나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싶으며 시설 인근에 위치한 성당 미사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위해 우리 시설에서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나누어 각각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C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에 있는 성당 미사를 참여하겠다고 의뢰한 것이다. C 할아버지의 이러한 미사참여 의사가 알려지면서 몇몇 노인들도 시설에서 모르는 성직자가 와서 실시하는 종교활동 말고 자신이 알고 있거나, 혹은 진짜 교회나 절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난 것도 먹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활동도 하고 싶다고 자신들의 지역사회 종교 활동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종사자 역시 노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주말에 몇 명 되지 않는 종사자가 시설에 남아있는 노인도 보호하고 종교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단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었다.

◎ 사례 4: 외출 후 음주와 귀원 규칙의 위반

평소 활발하고 유머가 있는 D 할아버지는 자신을 보살피 줄 자녀가 없어 시설에 들어왔지만 시설에서 늘 자신의 화려했던 젊은 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다른 노인들과 자신이 다름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D 할아버지의 후배라는 사람이 시설에 한번 방문한 뒤로 D 할아버지는 자주 외출을 요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에 취해서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종사자는 D 할아버지에게 기관의 규칙을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외출을 할 수는 있으나 술에 취하거나 정해진 귀가 시간을 훨씬 지나 들어오는 일은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종사자에게 ‘평소 시설도 가족처럼 지내는 것’ 이라 해놓고 매일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 마시지 말라 해서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이랑 술 좀 했기로서니 뭐 하면 안된다, 뭐하면 안된다, 이러면 어떻게 사느냐” 며 항의를 했다. 종사자는 노인의 외출 허용이 때로는 외출하는 노인 당사자나 다른 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면서 어느 정도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 외출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공동생활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가족이나 외부의 주요 타인과 교류하고 시설 외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 ‘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명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노인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외출 허용**

궁극적으로 당신이 결정한 노인의 외출이나 가족 교류, 그리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과 생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청대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외출허용은 노인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자주 술을 마신다거나, 심각하게 늦은 귀가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런 경우, 노인의 욕구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족과의 만남을 그리워하고 고대하는 노인의 경우 자신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고, 집에 잠시라도 돌아갔다 오길 바라는 마음이 종사자나 가족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울하거나 시설 생활에서의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종사자는 꼭 가족이나 집이 아니더라도 제2차 대안을 마련하여, 가족 대신 정기적인 방문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자녀 집에 외박하는 것 대신 주변 산책이나 외출 프로그램 대치, 혹은 가족들의 방문일정을 가족들이 부담되지 않고, 노인도 너무 멀다고 느끼지 않는 기간으로 구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족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노인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다. 상황마다 변화하는 노인의 심리와 현실적으로 노인욕구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 여건에 대해 종사자가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노인과 이야기하고 함께 2차 대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다른 욕구

로 대치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매달려 소모되는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노인의 만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개인생활의 자유와 공동생활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 참여

시설생활에서는 한 사람의 노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희생이나 불편이 발생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종사자는 지금 노인클라이언트 한 사람의 욕구에 충실하게 대응하되, 더불어 다른 노인들의 상황과 욕구를 배려하여 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이 갖는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 개인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이 요구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때 종사자는 노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한지, 다른 노인들이 덩달아 무리한 외부 활동 요구들을 함으로써 시설 내에서의 공동생활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아닌 지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기관 규칙과 개인 인권 보장사이의 적절한 균형 유지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인권만큼 중요한 결정 기준은 자신이 속한 시설의 가치와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의 모든 인권 실천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가치와 규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설의 가치와 규칙은 보통 노인 클라이언트 입소 시에 클라이언트와 가족 모두에게 정보와 교육 형태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설 생활을 하다보면 늘 이 규칙대로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기관의 규칙을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경고하거나 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기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관 규칙이 노인 개인의 인권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종사자는 당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가능한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기관차원에서 노인 개인의 욕구를 다뤄갈 수 있도록 사례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퍼바이저나 시설장과 논의하여 기관 규칙이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노인의 욕구를 인식하고 변화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노인의 욕구에 근거한 전문적 결정

인권관점 실천의 시작은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금 종사자인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이슈를 결정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인 노인이고, 당신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결과의 이익을 가져가는 이도 노인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대화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 시설에서 종사자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칫 이 힘이 클라이언트를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데 사용된다면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존중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항목

이다.

◎ 노인의 가족이나 주변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 증진

경우에 따라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인 노인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실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노인의 요구가 시설 원칙에 크게 위배되거나, 그 결과가 노인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인권실천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했는가?’가 중요하다. 노인이 원하는 것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상황을 노인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인이 서운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을 위한 종사자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그 사실은 매우 서운할 수 있겠지만 종사자를 통해 들은 가족의 상황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고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인과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함을 인식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무방비상태로 할머니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인권실천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에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의 이동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종사자의 역할이다.

◎ 노인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이해 노력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실천은 노인을 어린 아이로 만들지 않는다. 즉 인권을 존중받으며 보호받는 노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종사자가 들어 주었는가 아닌가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직면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둘러보는 기회를 만들고, 자신이 존중받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시설 생활노인들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공동생활에서 자신이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주는 지지체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혼자서 외롭게 투쟁해온 전쟁과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종사자의 눈에 비친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노인의 행동과 심리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아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으나 시설 내에서 그들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지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아이같이 징징대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종사자와 팀워크를 이룬 좋은 파트너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수요자의 만족이다.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 역시 하나의 서비스이자 관계로써 제대로 기능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족이다. 이때 만족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종사자와 노인 클라이언트가 함께 결정한 그 무엇인가가 수행되고 나서 “그때, 선생님 말 듣길 잘했네요.”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못해도 그래도 좀 괜찮네.”라는 평을 들었다면 당신은 유능한 종사자이다. 만족감이란 것은 당신과 클라이언트가 함께 결정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의 결과물에 클라이언트가 동의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감은 반드시 크지 않아도 된다. 100% 모든 것이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만족감이다. 만족감은 과거의 기대에 대한 현재의 결과 뿐 아니라 현재의 결과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된다. 가족들이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고, 반드시 집에 모시고 가지 않아도 이 자녀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정도, 즉 한 달에 한번이라도 꼭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노인들로 하여금 자녀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은 적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이고 과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 되는 좋은 씨앗임을 명심해야 한다.

II.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1. 인권 이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상호간에 사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노인과의 관계는 상실된 관계체계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노인이 시설 내에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이 동료노인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시설은 노인에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가정(home)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생활이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은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동료노인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즉 집단생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역동을 지속하면서 노인들 사이에 나뉠대로의 관계 질서, 위계, 그리고 그 위계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노인들 간에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 괴롭힘, 또는 무관심 등

은 매우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개인 간의 싸움이나 성격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 이슈로 이해하는 것이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노인이 다른 동료 노인에 의해 욕구가 좌절되고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시설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면 이것은 종사자와 노인 모두에게 인권의 이슈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인권 문제로 대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시설에서의 노인 상호관계에서 주목해야할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세 가지 차원, 즉 노인 자신의 인식 차원, 종사자 차원, 시설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온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자칫 다른 사람, 특히 노인의 시설 동료에게 인권침해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교육받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대가 대인관계에서 주목한 것은 상호 '권리'의 존중 측면보다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행위 예절 등으로 주로 사회규범과 문화를 통해 학습되어진 도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덕이나 도덕적 행위는 제도나 법이 아닌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의 비판, 인정과 같은 비공식적인 장치에 의해 그 기능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나 동료노인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타인'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노인에게 이들의 지탄과 인정은 배려, 양보와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장치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가족과 떨어져서',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사람이 나 자신'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비취질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노인이 다른 동료 노인의 인권 존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동료노인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심정적으로 노인이 지금 나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료노인을 가족으로 인식할 경우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가족이라기보다 '경쟁자',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그저 한 방을 쓰는 늙은이' 정도로 인식할 경우 동료노인은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견제하고 피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으로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보다 좀 더 미시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자면, 시설생활을 오래 지속할수록 노인은 수동-공격적(passive-aggressive) 특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 두 성향이 공존하면서 지금 관계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 다른 행동 유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노인 자신보다 약하고 하위의 위계라고 생각되는 대상에게는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말, 행동을 보이지만 반대로 시설장이나 자신보다 상위의 위계라고 확신하는 대상에게는 협조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시설 노인의 심리적 특성, 시설 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노인들과의 관계 의미, 그리고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과 경험 부족 등이 동료 노인의 인권 존중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종사자 차원의 제약요인은 지금까지 시설 내에서 동료 노인 간의 따돌림, 폭력 등을 개인적인 갈등 문제와 같은 사소한 관계의 문제로 인식한 반면 이 현상이 노인의 인권 이슈로 정의하지 못한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이다. 시설에서 노인들이 갈등하면서 서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사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싸움을 말리는 것’ 혹은 ‘다시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시설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의 갈등이 노인 개인에게 심각하거나 혹은 반복적인 형태로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에서 노인이 행복하고 존엄해야 할 존재로 존중받으며 생활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의 주체가 피해 노인과 동일하게 시설에서 우선 보호해야 할 노인이고, 시설 시각에서는 두 입장에 있는 노인이 모두 똑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종사자이건 동료 노인이건 간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들은 노인들 간에 흔히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따돌림,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시설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목적은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공동생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만큼 노인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존중해야 하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 차원에서의 제약 요인은 시설 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생활 지침을 실시하거나 혹은 생활 속에서 인권을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부족한 것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여가를 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그야말로 남은 시간,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이나 혹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취미 및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은 많지 않다.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은 종사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노인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과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각각의 기능과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권에 관한 지침이나 시설 규범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할 때 간단하게 노인과 가족들에게 공지되거나 입소동의서에 명시되어 간략하게 소개되는 정도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규범과 인권 조항은 시설에서 많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장치이다. 따라서 시설은 기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노인과 가족에게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요구 과정은 수요자인 노인과 노인 가족들에게도 인권에 대해 유익한 교육을 받는 경험일 수 있다. 노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시설로부터 권유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임을 주지시키는 것을 종사자는 위촉되지 말고 전문적인 태도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설이 노인 인권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누구의 인권도 그 경계 상태나 인종, 종교, 문화, 연령 등에 따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미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과 가족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권 지침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의 사생활을 침해

대체로 건강한 A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B 어르신과 한 방을 사용하고 있다. 편마비로 식당까지 이동이 어려운 B 어르신은 주로 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먼저 식사를 마치고 온 A 어르신은 B 어르신에게 방에서 냄새난다며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B 어르신의 식사속도가 답답하다며 자기가 식판을 뺏아서 갖다 놓는 등 마치 본인이 종사자인 것처럼 B 어르신의 생활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있다. 그러나 B 어르신은 자신으로 인해 A 어르신이 불편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심기가 불편하고 때로는 수치감을 느끼지만 A 어르신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 사례 2: 동의도 구하지 않고 타인의 물품을 자기 맘대로 쓰는 노인

시설 내에서 항상 대장노릇을 하는 C 어르신은 같은 방에 거주하는 다른 동료노인이나 또는 시설 내에 치매 등 인지손상이 있는 동료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물건을 자기 임의대로 자주 사용한다. 다른 노인들이 몇 번 불평을 했지만 C 어르신은 어차피 자신이 사용해서 닳거나 없어지는 물건도 아닌데, 니꺼 내꺼 뭐 구분할 필요 있느냐며 계속 다른 노인의 물건을 맘대로 사용하고 있다.

◎ 사례 3: 치매증상으로 동료노인의 인권을 침해

치매 증상 등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는 D 어르신은 이 증상 때문에 다른 동료 노인의 일상생활이나 심리의 안정성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여 동료노인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있으나 다른 시설이나 생활공간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밤 새 울거나 소리치는 등 다른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고, 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특정 동료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다른 동료 노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 사례 4: 동료 노인 간의 언어 및 심리적 폭력

건강한 E 어르신이 제조를 하다 휠체어 타고 있는 동료 노인에게 “재는 병신. 그런 것도 못해? 빨리 비켜. 선생님이 안보이잖아!”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다. 같은 방을 사용하는 와상노인이 기저귀를 갈 때 “냄새난다. 문 열어라.”등으로 수치감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특정 노인의 물건을 ‘냄새가 난다’, ‘더럽다’ 등의 핑계로 원래 물건이 있던 자리에서 던져버리거나 혹은 버려버린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노인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거나 혹은 자기가 지시한 행동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 사례 5: 동료 노인 간의 따돌림

원래 심장병과 우울증이 있어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F 어르신은 시설 내에서 다른 노인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에서 반장노릇을 하는 G 어르신이 동료 노인들이 F 어르신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F 어르신에게 말을 걸거나 놀이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 F 어르신도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G 어르신을 비롯하여 동료노인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 사례 6: 동료 노인 간의 신체적 폭력

H 어르신은 종사자들이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는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동료 노인의 따귀를 때리는 행위를 한다. 그래도 동료노인들은 H 어르신에게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H 어르신은 아무도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약한 노인들을 계속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 사례 7: 여성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가부장적인 I 어르신은 여성노인들을 무시하여 “여자랑 북어는 삼일에 한번씩 두들겨주어야 돼”, “여자는 맞아도 돼”라며 여성 노인을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있다. 그리고 치매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노인을 슬쩍 옷을 올려보라며 성추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성폭력 하는 경우도 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과 존중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시설운영에 있어 동료 노인 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에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동료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개입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선언되었듯이 모든 인간은 천부의 자유와 존엄,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동시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어떠한 노인도 다른 동료 노인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보면 동료 노인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매우 사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쉬우며 동시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등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활 여건 속에서 명확하게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구분 짓는 규칙이 생활노인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자칫 노인들은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할 동료 노인의 결정권이 나 생활방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방적인 의사소통 혹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종사자가 자칫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입장에서 대변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노인을 종사자의 권한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명령을 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간에는 힘의 균형이 동등할 리 없다. 그렇다고 종사자가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게 된다면 이 또한 중립적이기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가 ‘명령을 하는 노인’을 가해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명령을 하는 노인’을 가해자로 보는 순간부터 종사자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는 ‘명령을 받는 노인’과 ‘명령을 하는 노인’ 사이에서 두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는 두 노인이 조금씩 양보하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능력과 환경에 맞춰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공유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공동생활을 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동료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타인 물품 사용하도록 개입

동의 없이 다른 노인의 물건이나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문제 일뿐 아니라 그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동료 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인지가 명료한 노인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종사자는 매우 명확하게 경고하고 개인물건에 대한 엄격한 소유권과 기회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여 마음대로 동료노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노인에게 경고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물건을 지키는 방법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기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상호 인지가 명료한 노인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엔 서로 갈등을 하거나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인지 손상이 있는 노인의 물건을 건강한 노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인지 손상으로 자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노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종사자 혹은 가족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방법이지만, 매우 소소한 생활용품들까지 종사자가 모두 관리하고 관심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원칙적인 것은 시설 생활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나누어 사용한 것’과는 다른 의미임을 공지하고,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규칙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규칙을 위반한 노인에게 적용할 명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엄중히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물품을 동료에게 빌려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습관적으로 다른 노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주인의 동의를 받은 증거를 표시한 간단한 동의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노인에 대한 집중적 서비스와 동료노인의 이해 증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질병으로 인해 충동이나 감정조절

이 안되거나, 밤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혹은 옷을 벗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동료노인들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혹은 생활의 안정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적으로 기관차원에서 “우리 시설의 입소 기준”이 무엇이며, “이 입소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입소하도록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대다수의 노인들이 건강한 시설에서 중증이나 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입소를 수용했다면 이는 시설에서 적절한 입소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입소기준에는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인생활에 여러 장애를 끼칠 수 있는 노인의 입소를 받아들였다면 이 또한 시설은 적절한 기준적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중증 혹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집중 보호할 수 있는 치료 혹은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건강한 다수의 노인들에게 양보, 혹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지양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시설은 자신들의 입소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노인인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assessment)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동료노인간의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개입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욕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매우 치명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 동료가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집단따돌림 역시 언어적인 폭력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엔에서도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폭력 앞에서 노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노인은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인이 만족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치료뿐 아니라 건강 유지를 위한 건전한 생활방식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투자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일 것이다.

언어적인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시설생활을 잘 유지해나갈 수 있는 의욕, 즉 치료나 요양에 협조하는 동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동기, 시설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힘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피폐한 상태로까지 노인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종사자는 시설 내에 형성된 노인들의 문화가 가능하면 비난이나 질타의 소리가 힘을 얻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고 욕설을 하는 것이 다른 노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더러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압력이 되

도록 지원해야한다.

특히 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점,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한 기능장애, 와상과 같은 문제로 인해 동료노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거나 비난을 받으면 노인은 쉽게 치료 동기를 상실하고 우울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언어적인 폭력과 왕따가 행사될 때 종사자는 단호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이때 종사자는 처벌이나 형벌의 의미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중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르신은 ○○○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 벌을 받아야 돼요!”의 메시지보다는 “이제부터 폭력을 중단하면 어르신과 우리 시설의 다른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 동료노인간의 학대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신체적, 성적인 공격은 공동생활에서 가장 견제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적인 행위는 자칫 약한 노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언어적 폭력과 왕따에 대응하는 실천방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노인들이 자신과 동료노인들에게 가지는 중요한 권리와자 의무 중 하나가 ‘나’와 ‘너’, ‘우리’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시설의 모든 노인들이 존엄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 공동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신체적 폭력, 성적인 폭력을 시설 생활노인들 사이에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동시에 종사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성적폭력을 행동한 경우 ‘거실사용’, ‘즐거운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제한’, ‘TV청취 금지’의 부정적인 처벌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생활을 제한하고 가족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보호할 것을 권유하여, 노인의 폭력성에 대해 시설 종사자와 노인, 가족이 함께 공동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시설종사자를 존중할 책임

1. 인권 이슈

지금까지 노인복지분야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왔다.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자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지 못하는 취

약자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노인복지분야의 인권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약자와 강자의 논리에서 노인 인권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노인 인권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은 실제로 충분히 인식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종사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인권 또한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은 물론 노인의 보호를 시설에 위임한 노인 가족 역시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사항이며 이들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자로서만 보아왔던 일방적인 사회 인식 때문에 종사자를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과 문제제기가 빈약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설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고려해볼 때 제도적으로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공식적인 장치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실무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역시 간과되어 왔다. 이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슈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시설 및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 종사자는 사회적으로 노인의 보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 안정된 업무환경, 그리고 이들이 실무책임성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건들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과 가족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책임으로 하고, 기관과 노인 그리고 가족을 중재하고 시설 내에서의 노인과 노인의 중재 등을 담당해야하는 종사자로서는 노인, 가족, 시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와 역할을 투입해야하는 입장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 보호의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한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누구보다도 사회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음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 종사자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자기 옹호 인식 및 실천이 부족하다.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노인 보호를 위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직자와 같이 희생하는 자, 봉사하는 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시설 종사자 자신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시설 내에서 노인과 가족으로부터 언어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는 '참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들이 옹호되기보다 지역사회 내 기관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듯,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해줄 누군가가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런 신념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은 스스로 옹호하고 지켜가는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experts)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대처해나감으로써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는 것’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종사자, 노인,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뿐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 소비자의 공급자에 대한 인권 의식 부족이다. 중요한 소비자가 되는 노인과 가족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이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은 누구보다도 가깝고 협조적인 시설 종사자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노인 역시 종사자의 시설 내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시설 종사자가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의무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과 가족이 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과 가족이 시설 종사에 대해 파트너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 부족이 시설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저해하고 결국은 이직을 초래하는 장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인과 종사자 간에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노인의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A 시설의 경우 가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B 할머니의 행동 통제를 위한 제한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는데다, B 노인의 약물 거부로 인해 시설 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B 노인이 다른 동료 노인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할 때 이를 말리다 시설 종사자도 여러 번 빗자루나 다른 위험한 물건으로 맞기도 한다.

◎ 사례 2: 노인의 성희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수준이 낮거나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C 할아버지가 D 여자 종사자에게 화장실 수발이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신체노출, 몸을 밀착하는 등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다. E 여성 종사자가 목욕이나 위생관리 하는 동안 F 할아버지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닦을 때 쳐다보거나 웃는 등 E 종사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며, 딸 같다며 지나가는 G 종사자의 어깨, 팔,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경우도 있다.

◎ 사례 3: 노인의 언어 및 신체적 학대

우리 시설과 이웃 시설에서 노인들이 말로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종사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요구한 것을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종사자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거나, 가족 면회 시 가족의 힘을 빌려 그동안의 불만사항을 종사자가 수치감, 민망함을 느낄 수 있는 비난이나 욕설을 하기도 하며, 가족 면회시 사실이 아닌 내용 즉, 잘 안 씻어준다거나 외출을 전혀 못하게 한다거나, 반찬을 주지 않는다 등 가족에게 종사자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노인의 부적절한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종사자를 칼로 위협하거나 박치기, 빗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시설의 불친절한 서비스를 인터넷 민원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 사례 4: 가족의 과도한 요구와 언어적 학대

보호자들이 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만족되지 않거나 노인의 사실과 다른 불만 이야기를 듣고 종사자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고 일방적인 훈계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며, 수시로 종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인 일상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말꼬리 잡으며 계속 이야기를 하여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 사례 5: 가족의 문제행동과 폭력

가족들 중에는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부모를 보겠다고 욕박지르거나 이를 만류하는 종사자들에게 막말로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이 음주한 상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종사자와 통화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 종사자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사례 6: 종사자 인권에 대한 시설과 사회의 몰이해

시설, 사회 모두 종사자가 무시당하거나 언어, 정신, 신체적 폭력을 당해도 참을 것만 중용하고 종사자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사람이거나 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묻히는 거죠. 스트레스는 쌓이고... 우리의 권리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참아야 하니까 막막하고, 우리가 유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인의 인권을 모두 지켜주려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인권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의 이 답답함을?”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노인은 동료노인, 종사자를 포함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과 존중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6조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생활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강령에서 노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 존엄과 권리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규범과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해 보이므로, 국가와 사회, 시설, 생활노인과 가족들은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규범과 기준들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노인의 질병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 교육

노인의 공격성이 질병(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상일 경우 이는 종사자에게 고통을 주고자하는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종사자는 이러한 노인의 공격성을 증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가 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 참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증상을 방치하는 것과 같으므로 종사자는 반드시 각 노인이 갖고 있는 질병과 이에 따른 증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증상으로 인한 공격성에 대해 치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하므로 정기적인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사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가 노인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노인의 공격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환기(ventilation)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사자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교육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러나 노인에게 자신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교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방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활속에서 학습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몇 가지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 상황을 종사자와 노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보다 시설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 내의 수퍼바이저(supervisor)나 별도의 부서 등 보

호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담당자나 부서가 존재할 경우 종사자들에게는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가 기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노인과 가족의 공격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노인의 시설 입소 시 노인과 가족이 종사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협조해야할 것에 대한 조항과 종사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하는 안내서 혹은 동의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절차는 노인과 노인가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전문적인 권위를 인식하도록 하며, 더불어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자신과 가족이 수행해야할 역할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종사자 자신의 변화 노력과 종사자 인권 사례회의

종사자 역시 자신의 인권이 노인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마음이나 경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사자들 간에 동료 수퍼비전(peer supervision)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례회의나 기관회의를 통해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는 정도에 비해 자신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은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종사자 자신도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노인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인권침해 사례를 논의할 경우 자신이 무능하게 보이거나, 소심한 사람으로 비취질 것 등을 염려하여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를 기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경험을 하소연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료 수퍼비전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종사자는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노인을 위한 인권실천 역시 더욱 세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 종사자 인권보호 지침의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종사자의 인권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인권보호는 매우 강조되는 반면 종사자의 인권문제나 노동환경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부재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에는 노인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노인의 인권보호 수준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시설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나 시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설 종사자들

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자기결정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경우, “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생활이라고 하여도 가치와 신념, 욕구, 기능수준, 흥미가 각기 다른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생활노인이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서비스 선택과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결정과정의 참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시설 생활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인권의 핵심영역이다. 그러나 본 교육교재에서는 자기결정권이 특히 강조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영역인 입·퇴소 과정,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 정보통신생활,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 이성교제·성생활·기호품 사용이라는 6개 영역에 국한하여 생활노인의 인권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1. 인권 이슈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단지 주거공간의 변화 뿐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던 환경, 관계 그리고 일상을 유지해나가는 질서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겪는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에서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병원 혹은 다른 시설로 옮기 경우에는 또 한번의 입소절차를 되풀이하면서 생활노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입소와 퇴소의 과정은 생활노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노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주장되지 못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활노인 개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경우, 또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라면, 생활노인의 권리는 법적, 관습적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로 판정받지 않는 이상 노인은 성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노인 자신이 아닌 성인 자녀가 “보호자”로서 자기결정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하게 위법행위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온 면이 크다.

생활노인이 인지기능이 원활하고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설입소

에 따른 의사결정에는 부양의무자인 가족의 의견 등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노인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관한 권리가 보호되기는 쉽지 않다. 입소와 퇴소과정에서 생활노인의 보호자 뿐 아니라 인지능력이 있는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적 배려, 결정과정에서 불안과 궁금증을 수용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설종사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생활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의 첫걸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시설 입소시 시설에 대한 소개와 권리에 대한 설명, 시설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입소자의 건강 및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프로그램 여부에 대해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침해로 여기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생활노인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권리침해라고는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관서를 통한 개인의 입소요청 혹은 연고자에 의한 입소요청에 의해 입소가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시설 이외의 대안이 없고 시설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강요된' 입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입소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공식적인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전혀 없어, 입소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복지시설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지만,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절차의 관행이나 낮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2. 인권 사례

◎ 입소 시 시설생활과 노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

아버님을 도저히 더 이상은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시설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불효하는 것 같고 낮 부끄러운 일인데, 시설에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어떻게 물어봐요. 제가 못 모시는 부모님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이지요. 시설 측에서 알아서 설명해주면 모를까, 내가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은 힘들지요.

◎ 퇴소 시 노인의 자기결정권 박탈

어르신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현재 시설에서 헤드리는 케어서비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노인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과 얘기도 않고 마음대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후의 거주공간으로 시설의 입·퇴소와 관련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거주 이전의 자유이며(헌법 제 14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거처에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선호와 신체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용자인 노인의 참여를 강조하여, 시설 입·절차에 있어 노인의 참여를 기본적인 가치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입·퇴소과정에서 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에 명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설과 종사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에 대한 최신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이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으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운영법인, 시설의 재정 상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설입소에 따른 비용 및 자부담 내역, 종사자수와 종사자의 자격 등이며, 이후 시설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라운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설생활에서 노인의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

시설과 종사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노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이 생활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발과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제한 사항들, 공통되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들, 생활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권리 침해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내용들이다.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

입소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과 보호자에게 시설공간 배치(침실, 거실, 식당, 프로그램실, 강당 등), 전체 서비스 내용 및 수행에 따른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서비스 담당 인력(담당 간병인, 담당 사회복지사 등), 하루 일과 및 식단안내, 부정기적 이벤트 및 참여안내, 정보, 통신수단의 이용, 소지품관리 및 공동생활에 따른 상호협조 사항 등 시설 서비스 전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 생활노인의 참여 보장

입소 및 퇴소와 관련하여 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생활노인 본인의 의사와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책임과 관련하여 생활노인의 권리가 배제되고 가족의 의견만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거나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 방안에는 의사결정에 따른 충분한 시간제공,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적극적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규정의 문서화

시설은 시설거주노인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시설거주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문서로 거주노인과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서가 포함하는 내용은 생활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 생활노인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과 내역, 생활노인과의 상담에 의한 서비스 내역 변경 절차에 대한 명시, 생활노인에게 시설 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 생활노인이나 생활노인의 대리인에 의해 제기되는 불만을 해결하는 불만처리방안, 시설생활노인로서 생활노인의 책임, 합의(계약)의 기간, 비용의 수납, 연체 및 환불절차에 관한 내용, 기타 생활노인과 시설 간에 합의된 다른 모든 사항 등이다.

◎ 퇴소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

시설생활노인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시설을 옮기거나 퇴소하는 경우, 시설은 시설생활노인이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II. 서비스 선택 및 변경시의 자기결정권

1. 인권 이슈

생활노인은 시설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직결되며, 생활노인의 생존권과 참여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활노인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비용에서부터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노인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은 시설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따른 의사결정은 생활노인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생활노인의 인지에 제한이 있거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가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시설 내 서비스판정위원회(가칭) 등의 집단적사결정과정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활노인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변경에 따른 사항은 주기적으로 가족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생활노인의 서비스내용은 제공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결정권이 노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매우 낮았으며, 이인수(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상하여 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예: 외출, 사교활동)을 못하게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종사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인권 사례

◎ 보호자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더 많은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 때 보호자의 특별한 서비스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지금 거처하시는 방에 같이 계신 어르신과 관계가 좋고 돌봐드리기도 수월한데, 보호자는 배정된 방에 이동변기가 있어 여러 어르신이 공동화장실처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

◎ 서비스 정보 제공에 귀찮아하는 보호자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B 어르신의 병원진료와 관련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렸다. 전화를 드려도 별 관심이 없고, 전화를 받고 귀찮아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또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마냥 귀찮아만 하는데…….

◎ 시설의 잦은 비급여 서비스 이용 권유

내 방 담당 선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이용하고, 저게 좋으니까 저거 이용하라고 하도 그래서 갔지. 아 그런데 그달 말일이 되니까 보험 안되는 서비스라나 뭐라나 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거야. 나 참 누가 시켜달란 것도 아니고, 해보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란 건지. 돈 내라고 할 거면 미리 미리 말해줬어야지.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는 모든 노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령화 국제행동계획과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 서비스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음부즈맨 프로그램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이나 처지의 변경 혹은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항목, 자부담의 내역, 서비스 변경에 따른 개인부담의 변경 등에 관해 사전에 생활노인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는 사전에 협의, 서명된 생활노인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생활노인의 충분한 인지, 사전정보제공, 서비스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서비스 변경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시설생활노인의 서비스 접근, 서비스계획 참여,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 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이 자신이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변경할 때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생활노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생활노인은 자신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역과 비용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는다.
- 생활노인은 규칙적인 생활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 시설이 생활노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자원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서비스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생활노인과 그 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응급상황일 경우는 제외한다.
- 생활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 시설은 생활노인에게 지불된 시설요양급여의 내용과 자부담의 내역을 분기별로 생활노인과 그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Ⅲ.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1. 인권 이슈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전화, 인터넷, 문서 등의 전달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역시 전화, 편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주요 타인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노인의 정보통신생활의 자유를 제약받는 경우를 목격한 종사자가 14%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전화 외 통신수단의 제한, 야간 전화사용 제한, 컴퓨터 등 전화 이외의 통신수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과 같은 정보통신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외상노인의 전화사용

A 어르신은 외상상태로 거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 어르신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어르신은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저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이 글자를 몰라 전화를 걸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

◎ 사례 2: 노인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B 어르신은 핸드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신다. 자녀들에게도 하고,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060전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어르신이 핸드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쩔 수 없어하지만, 자녀들은 시설 측에서 어르신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세계인권선언 제 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9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생활노인의 주요 권리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해 두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정보통신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생활노인은 자유롭게 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편지지, 편지봉투 및 우표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우편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우편물 발송을 대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우편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은 생활노인에게 대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은 생활노인의 전화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인터폰, 무선전화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생활보장을 위해 야간 전화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전화사용시간을 명시하고, 야간통화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신체적인 제한으로 전화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설은 헤드셋등 보장구를 이용한 전화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 휴대전화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사용에 따른 권리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거주가가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관련교육 및 작동지원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IV.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의 권리

1. 인권 이슈

세계인권선언 제 1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일,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7조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역시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매우 소극적이며, 실제로 생활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목격한 종사자도 15%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예방교육 등을 통해 수집한 시설종사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생활노인의 개인정보(가족사, 개인의 현 상황, 의료정보 등)를 종사자들이 쉽게 대화의 소재로 삼는 부분, 공동 생활공간(거실 등)에서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생활노인에 대해 거명하며 얘기하는 부분, 관찰된 생활노인과 가족간의 관계를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종사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낮은 인식

A 요양보호사는 매우 활달하고 원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사자이다. 이 분은 큰 목소리로 언제나 원내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가끔은 생활노인 어르신들의 개인 가족사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여 행여 당사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나 않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전전긍긍할 때가 있다.

◎ 사례 2: 서비스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생활 보호

B 어르신의 경우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옷을 벗은 후 목욕을 하러 갔다가 다시 침대에 와서 옷을 갈아입혀 드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벗은 몸을 다른 어르신들이 보게 되었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와상노인을 포함한 모든 생활노인은 자신의 사적 공간과 생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개인의 사적공간은 존중되어야 하며, 공동생활의 범주 안에서 개인의 자신의 공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시설은 개별조명 등을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사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동생활시설 내에서도 모든 생활노인의 공간은 문 혹은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신체가 공개되는 서비스 제공시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며(예: 이제부터 젖은 속옷을 갈아 드릴게요), 생활노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생활노인은 자신의 공간에서 방문객을 맞을 수 있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업무와 관련되어 알게 된 생활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생활노인 개인기록과 의료기록은 열람이 통제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생활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될 수 없다.

V.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관한 권리

1. 인권 이슈

모든 사람의 인권의 충분히 보장된다면 법절차적 권리라는 인권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인권영역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충분한 정도로까지 보장하기에는 나름의 현실적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과 헌법, 법률과 인권지침에 규정된 세부적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적법하면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회복하고, 손상된 권리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역시 일상생활과 서비스 과정에서 충분한 수준의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르는 생활의 고충과 불평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생활고충 및 불평처리에 대한 권리 역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주요한 인권 영역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불평해결’ 영역에서는 생활노인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서 생활노인 간담회를 운영하는 시설이 36% 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노인의 불평 및 건의절차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으며, 노인 스스로도 의견이나 불평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의견과 불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생활노인의 서비스 불만에 대한 표현 억제

A 어르신은 외출이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때로 식사시간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차게 식은 반찬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더운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너무 혼자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 사례 2: 의사소통 능력 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주 요구하는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3. 인권 규범 및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에는 모든 국민이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1조에는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에 관한 조항을 명기하고,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생활상의 고충과 불평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는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생활노인의 11가지 권리 중 하나로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생활고충과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생활노인은 자신의 불편사항을 아무런 보복의 위협 없이 표현 할 권리가 있다.
- 시설은 생활노인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건의함, 생활노인위원회, 정례적인 간담회 등의 실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은 의사표현의 제한이 있는 생활노인의 불평, 불만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 고충표현과 관련하여 생활노인이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된다.
- 시설은 규칙적으로(월별 혹은 분기별) 제기된 불평, 불만 사항과 그 처리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VI. 이성교제, 성생활 및 기호품 사용의 권리

1. 인권 이슈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노인의 성에 대한 욕구나 관심이 무시되기 쉽다. 또한 사회적 통념으로 노인을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인식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성적 욕구나 성적 수치심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배변 지원과 관련하여 기저귀를 교환할 때 성기를 노출하거나 노인의 성적 특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생활노인의 존엄성, 사생활보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나임순(2007)은 시설 종사자들의 부정적인 태도, 거주 노인의 건강상의 문제, 파트너의 문제, 타인의 편견, 거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성적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성간의 교제, 부부간의 동침 등 개인의 성적 욕구와 활동에 관한 권리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이다.

이 외에 흡연, 음주, 단맛 혹은 짠맛 선호 등 개별적인 취향은 공동생활이라는 시설생활의 특성과 건강이라는 대전제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은 법에 의하여 금연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설 내 금주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과 관련된 개인적 기호는 시설 종사자로 하여금 윤리적 갈등상황에 처하게 하는데, 고혈압환자의 경우 소금섭취, 당뇨환자의 경우 당분섭취 등은 개인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개인의 생명과 개인 기호 존중이라는 두 가지 권리사이에 상호충돌까지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2. 인권 사례

◎ 사례 1: 종사자가 부부노인의 성생활을 흥미거리로 다룸

우리 시설에는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사이도 좋으셔서 밤에 관계를 맺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분이 관계를 조금 진하게 하셨나 봐요. 그걸 본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가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아침 회의시간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는데, 참 못 봐주겠대요.

◎ 사례 2: 동료노인간의 성추행

A 할머니가 B 할아버지를 성추행해요. 할머니가 말씀 잘 안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음담패설을 막 하시고...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손이 할아버지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손을 꺼내고...

◎ 사례 3: 건강과 기호음식 섭취로 인한 가치갈등

C 어르신은 식전에 혈당이 255까지 가는 분인데, 커피를 원하세요. 가끔 드리기는 했는데 너무 혈당이 높아가지고 이번에 관리를 하니까 안된다고 했더니, C 어르신은 당신이 인지가 있으시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80이 다되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뭐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먹고 죽겠다.” 하시는 거죠.

3. 인권 규범 및 기준

노년학 분야에서 노년기의 이성교제와 성, 기호품 사용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인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포괄하여 다루어왔다. 그러나 실제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인권규범과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노인의 기호품 사용 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조항을 찾는다면,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이성교제, 성생활 및 기호품 사용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활노인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설 종사자들에게 노인의 성을 이해하고, 노인의 성과 관련되어 생활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부부가 한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시설 생활노인이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의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는 표현되어야 한다.
- 표현된 개별적인 욕구(흡연, 음주 등)를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모색하도록 한다.
- 어떤 경우에도 시설생활노인의 개별적인 욕구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시설은 최대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시설 생활노인과 가족의 욕구가 상반될 때, 개인의 권리 간 충돌이 있을 때, 공동생활 안에서 권리가 충돌이 생길 때, 이를 조정하고 판정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필요하다.
- 시설은 필요한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서비스판정위원회(가칭)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2004). 인권백서.
- 국가인권위원회(2002. 12.).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04). NAP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제인권장전 유엔인권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2004. 9.).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200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1).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 권중돈 외(1998).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권중돈(2002). 사회복지사의 실천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41집, 63-91.
- 권중돈(2006). 노인복지실천에서의 인권관점 도입 방안 고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 3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미옥 외(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혜(1999). 노인과 인권, 복지동향, 통권 8호, 31-40.
- 김중섭(2001).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서울: 으뜸.
- 남구현 외(2005). 장애인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마이클 프리먼(저). 김철효(옮김)(2006).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 박수천(2005).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34
- 박차상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법제처(www.moleg.go.kr)
- 보건복지가족부(2000).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보건복지가족부(2002).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6).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가족부(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 보건복지가족부(2006.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서울복지재단(2006).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매뉴얼.
- 서혜경(2001). 노인권익운동의 오늘과 내일. 밝은 노후, 창간호, 25-31.
- 안치민(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5, 5-25.
- 양옥경 외(2004).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 여순자(2006). 노인복지시설의 성 관련 환경이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염형국(2004).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교남 소망의 집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오진주(2002). 무료 노인시설 성 보호 환경과 종사자들의 관련 태도 및 활동 정도. 한국노년학, 제22권 3호
- 이미라 외(2006). 남성노인의 간호요양원(Nursing home)에 대한 태도와 입주의사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제 26권 4호, 949~961.
- 이석준(2001).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화(1999). 역량강화적 접근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수(2006).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55~59
- 이창수 외(2005). 인권관련 정부 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www.sarangbang.or.kr)
- 정인숙(2006). 노인수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조영황(2005). 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의 노인인권 정책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5-10.
- 차홍봉(2004). 노인복지시설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3-30.
- 최용기(1999). 법과 인권. 서울: 대명출판사.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4). 노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5권):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 현외성 외(2000).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서울: 유풍출판사.
- Australia(1991). *Rights of Residents in Institutional Care: 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Australia.*
- Australian Government Dept. of Health and Ageing(2005. 4). *The Residential Care Manual.*
- Commonwealth of Australia(2001). *Code of Ethics and Guide to Ethical Conduct for Residential Aged Care.*
- Gormally, L.(1998).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the Elderly.* Paper for II Jornadas Internacionales Bioetica Granada, The Linacre Centre.
- Ife, J.(2000).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fe, J.(2006). *Human Rights and Human Servic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3~43.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IFSW)(2002). *IFSW Manual: Social Work and the Rights of the Child.*
- Kane, R. A.(2001). *Long-term Care and a Good Quality of Life: Bringing Them Closer*

- Together. *The Gerontologist*, 41(3), 293~304.
- Marks, S. P.(2000). The Human Rights Framework: Its relevance for development, Panel in Legitimizing Human Rights wuthin Development, Second Global Forum On Human Development .
- Sember, B. M.(2004). *Senior's Rights: Your Legal Guide to Living Life to the Fullest*. Illinois: Sphinx Publishing.
- Skegg, A.(2005).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48(5), 667-672.
- Sweet, W.(2003). *Philosophical theor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 of Ottawa Press.
- Texas Dpartment of Human Services(2004). *Rights of The Elderly: 102.003 Texas Human Reources Cod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Elder Law & Public Health division
- The U.S. Administraion on Aging(2003). *Nursing Home Residents' Rights*.
- Tulloch, G. J.(1975). *A Home is not a Home: Life within Nursing*. New York : Seaburry.
- UN Center for Human Rights(저). 이혜원(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Wronka, J.(1992).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in the 21th Century*. Md.: Univ Press of America.

백지

부 록

1. 세계인권선언
2.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부록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체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 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띌 수 있다.

2.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부록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전 문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벗어나야 한다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여러 나라가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은 그들의 생존 수단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가입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2부

- 제2조 1. 각 가입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조약에서 인정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민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조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조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3부

- 제6조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 가입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 (2)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

다.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급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가입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책임진다.

-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가입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10조 가입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산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들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 제한을 정해야 한다.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

제11조 1. 가입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

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입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입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 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나.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가입국은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가입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가. 초등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한다.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

다. 고등 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한다.

- 라.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을 장려 또는 강화한다.
- 마. 모든 단계의 학교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를 수립하며, 교원의 물질적 처우는 부단히 개선한다.
- 3. 가입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입국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14조 이 조약 가입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입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마련·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 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2. 가입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제4부

제16조 1.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서를 이 조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2. 가.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보낸다.
-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입국으로부터 온 보고서의 사본 또는 관련 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 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17조 1. 가입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 조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이 조약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입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18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서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조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와 관련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19조 가입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적절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20조 가입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문서가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를 언급하고 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의견도 위와 똑같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서와, 가입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22조 이 조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여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 사안이란, 앞에 쓴 기관들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조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여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25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조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부

제26조 1. 이 조약은 국제연합 가입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조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조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조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28조 이 조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어느 가입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입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입국 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

는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입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안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입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입국은 이 조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나.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 조약의 발효 일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제31조 1. 이 조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조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부록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1조(인민자결권)

1. 모든 시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2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체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 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 (b)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 (c)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긴급사태하의 일탈 [逸脫] 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 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6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법률에 비추

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특사 또는 감형을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 (a)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a)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c)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3항 (b)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ii)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iii)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iv)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권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지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2. (a)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위에 알맞은 별도 대우를 받는다.
(b)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11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금당하지 않는다.

제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위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제13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지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공개라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애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a)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 (b)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사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c)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d)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시리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아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 (e)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 (g)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갱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려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 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제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 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

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24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25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포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 (b)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 (c)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제26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는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위원회 의원의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동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

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안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되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32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 번째 선거가 있는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그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한다.

제35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제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종사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 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38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39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b)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40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행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a)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 영향에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있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41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한 가맹국이 불 때에 자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

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임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 (b)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 (c)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d)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 (e) (c)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 (f)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g)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 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 (h) 위원회는 (b)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 (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i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 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42조 1. (a)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게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게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

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 (b)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 4. 조정위원회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서 보고를 제출한다.
 - (a)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b)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c) (b)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i)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 (ii)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 (iii)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한다.
 - (d) (c)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 회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편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44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45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47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부

제 48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50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1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여러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52조 제4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 제53조 1. 이 협약을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부록 4.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 서문

1.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이 발전하면서 과거 20년간 고령화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왔다. 노인을 위한 인권과 관련하여 1991년에 만들어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과 같은 영역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2. 20세기에 장수와 관련한 혁명이 이루어졌다. 평균수명은 1950년 이후 20세가 늘어 66세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10년이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승리와 21세기 전반기의 빠른 인구증가는 2000년 6억명이던 60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 20억명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의 노인인구의 비율도 1998년 10%에서 2025년에는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향후 50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 8%에서 2025년 15%로 증가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그 비율이 단지 같은 기간동안 5%에서 6%로 증가하였지만 2050년이 되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와의 투쟁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위 수준의 절반정도가 될 것이다. 유럽과 북미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998년에서 2025년 사이에 각각 20%에서 28%로, 16%에서 26%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적인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류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심리, 정신적인 모든 분야가 발전될 것이다.

3. 현재 진행중인 현저한 인구변화는 금세기 중반이면 세계인구에서 노인층과 청년층이 동일한 비율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00년과 205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어 10%에서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아동인구 비율은 1/3이 감소되어 30%에서 21%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가의 경우 노인인구 수는 이미 아동의 수를 넘어섰고,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면 노인 수가 아동 수의 두 배를 넘을 것이다. 선진국은 71명의 노인 성비(100명의 여성 대비 남성 수)가 7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의 남녀간 차이가 더 적기 때문에 여성노인이 선진국과 같은 정도로 남성노인보다 많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성비가 88이며 세기 중반이면 약 8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21세기 전반에 빠르게 인구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비율이 2050년이면 8%에서 19%로 증가한 반면, 아동비율은 33%에서 22%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커다란 자원 문제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실업 및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여타 중요한 인구학적 차이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노인들의 다수가 오늘날에도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전망에 의하면 2025년까지 선진국 인구의 82%가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이나, 개발도상국은 인구의 절반이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 고령화와 도시화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구전망에 따르면 향후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에 더 많은 노인인구가 있게 될 것이다.

6. 또한, 노인이 살고 있는 가구의 종류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노인의 많은 비율이 다세대 가구에 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정책방향이 동일해서는 안 될 것임을 암시한다.

7. 노인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은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층 노인들이다. 2000년후기 고령층 노인은 7천만 명이었으나 다음 50년간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을 수적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곳에서 여성노인의 상황이 정책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확보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령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사업·입법에서 남녀 성 평등적 관점의 통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세계적인 고령화 진전과정을 더 큰 발전의 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관련 정책은 주요 유엔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근에 채택된 세계적인 조치들과 기본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더 광범위한 삶의 과정과 사회적 견해를 담고 있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0.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21세기 고령화의 엄청난 잠재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태도, 정책 및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노

인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존엄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그들의 사회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의 기초는 인생에서 일찍이 닦여지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계획은 정책결정자들이 개인과 인구의 고령화에 관련된 중요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고령화의 본질과 그것이 제기하는 도전의 공통적인 모습은 인식되었으며, 특정한 권고들은 각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입안되었다. 행동계획은 세계화 과정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전과 변천의 많은 상이한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

11. 1999년 세계노인의 해 주제이었던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는 개인의 평생개발, 세대 간 관계, 인구고령화와 발전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노인의 현황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담고 있다. 세계노인의 해는 고령화 문제를 모든 분야에 통합시키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회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식, 조사연구 및 정책행동을 진전시키는 것을 도왔다.

12. 중요한 유엔 회의, 정상회의, 특별총회 그리고 후속검토과정들은 모든 사람의 경제·사회적여건 향상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목적, 목표와 약속들을 수립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은 노인들이 발전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하게 발전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목표와 약속들과 관련하여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 (b) 노년기의 빈곤해소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세우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노후의 달성
- (c) 노인들이 소득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기
- (d) 노인들이 단일한 동질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후에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과 참여와 같은 것은 물론, 전 생애를 통한 개인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를 위한 기회 제공
- (e)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 (f) 특히,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노인의 성 평등 달성
- (g) 사회개발을 위하여 가정, 세대 간 상호의존,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 (h) 예방적 보건의료와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

호의 제공

- (i) 국제행동계획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모든 수준의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분야 및 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 촉진
- (j)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기술의 가능성을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
- (k)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에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 노인들이 완전히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발전에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령에 근거한 차별과 싸우고 노인들의 존엄을 증진하는 것은 노인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확보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과 보호는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에 도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세대 간 상호부조적인 관계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통하여 키워지고 강조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14. 행동을 위한 권고는 노인과 발전, 노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라고 하는 3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의 진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요 방향은 고령화 세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특정한 목표를 위한 정책의 형성과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고령화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사회개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복지의 질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공식·비공식 제도의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된다.

15. 세계적인 의제들 안으로 고령화를 주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을 통하여 정책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어진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인권을 위한 여타 체제와 고령화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특정한 정책들이 나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인구고령화는 세계화와 같은 정도로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는 범 세계적인 힘이다. 노인 자신들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위해 선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들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의 잠재력을 미래발전의 근거로 끌어안는 적극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II. 행동을 위한 권고

A. 주요 방향 I: 노인과 발전

16. 노인들은 발전과정에서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어떠한 개인도 발전의 혜택을 받을 기회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인구고령화는 노인들을 사회경제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노인을 세력화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 도시화, 확대가족에서 소규모 유동적인 가족으로의 변화,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기술에의 접근부족 및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노인들을 발전의 주류에서 소외시키고 그들의 유용한 경제·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며 전통적인 그들의 지원 자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17.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유지함으로써 적법한 과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사회개발선언과 행동계획에 있는 원칙들 중의 하나는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새천년 정상회의는 1990년대에 국제회의들을 통하여 제시된 빈곤해소와 사회적인도주의적인 목표의 이행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 코펜하겐 사회개발 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Programme of Action)은 1995.3.6-12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음. 선언은 인류가 빈곤, 실업, 사회분열과 같은 사회문제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개발의 원칙, 목표와 10대 공약 사항을 담고 있음. 행동계획은 선언에 열거된 원칙을 따르고 10대 공약사항인 사회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빈곤 퇴치, 완전고용, 사회통합, 남녀평등, 교육 및 보건서비스 확충, 아프리카지역의 사회개발, 구조조정에 있어 사회개발 목표달성, 재원동원, 국제협력 증진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과 조치사항들을 담고 있음.

※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는 2000.9.6-8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유엔새천년선언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A/RES/55/2, 2000.9.18)을 채택하였음.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와 원칙으로서 자유, 평등, 연대, 관용, 자연존중, 책임공유를 들고 있음. 아울러, 추진 목표로서 평화·안전·군비축소, 개발과 빈곤해소, 환경보호, 인권·민주주의·선정, 취약 계층보호, 아프리카 지원, 유엔 기능강화를 담고 있음.

18. 정책결정자들은 노동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적절한 경우, 연금제도가 건전한 재정적 토대에 놓여지도록 다방면에서 개혁 전략이 이행되어야 한다.

과제 1: 사회와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

19.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노인들에 대한 일체의 배제와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여는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종종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가족구성원 보호, 생산적이고 생계를 위한 일, 가구 살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역할들은 미래의 노동력의 준비에도 기여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각 세대들의- 특히 여성들- 무보수 노동의 기여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기여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0.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가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복지 향상과 유지에 기여를 한다. 노인단체는 옹호를 통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다세대간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1. 목표 1: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기여의 인식

- 행동들

- (a) 인권협약과 기타 인권협정 -특히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와 관련 있는- 의 이행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
- (b) 가정, 지역사회 및 경제에 대한 노인들의 공헌을 인식하고 장려하고 지원함
- (c) 노인들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프로그램 및 지원을 제공함
- (d) 노인들이 상부상조 활동 및 세대간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접근을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함
- (e) 모든 연령층에게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는 자원봉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참여기회가 거의 없거나 참여를 못하였던 노인들의 참여를 촉진함
- (f) 노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과 무보수 노동을 포함한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증진함
- (g) 노인들은 장애나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공헌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함
- (h)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며, 모든 생애단계에서 존엄을 지니고 살 권리를 존중함
- (i) 사용자들 사이에 노인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의 생산적인 능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증진하고, 노인들의 자각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함
- (j) 사회적 고립과 싸우는 전략으로서 시민적 문화적 참여를 증진하고 노인의 세력화를 지원 함

22. 목표 2: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

- 행동들

- (a)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관심을 고려함
- (b) 노인단체가 없는 경우,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에서 노인단체의 설립을 장려함
- (c)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들이, 특히 여성노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과제 2: 근로와 고령화되고 있는 노동력

23. 노인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한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 불충분한고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종종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에너지와 기술을 빼앗음으로써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 개발정상회의의 코펜하겐 선언 중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목표의 증진이라는 공약3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행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은 동 정상회의 행동계획과 제24차 특별유엔총회에서 권고된 고용증진 이니시어티브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에서 고령 근로자들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4.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의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나이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공식 경제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종종 그들로부터 적정한 근로조건과 공식경제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선진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의 경우 평균수명이 법정 퇴직연령이나 연금수급 연령을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나라들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경향은 종종 연령차별이 동반되기도 한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의 감소, 근로자의 고령화, 조기퇴직 경향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력적인 퇴직, 새로운 근로조건, 적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 장애인노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같은 고용가능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며 그러한 정책들은 노인들이 유급고용과 기타 활동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노동시장에서 여성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 특히 비연속적인 직업경력과 가족보호의무로 인하여 야기되는 저임금, 능력개발 부족과 같이 여성이 유급 근로활동에 종사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연금형성과 기타 은퇴소득 자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특별한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와 관련하여 가정친화적인 정책의 부족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여성의 소득활동 기간 중 빈곤과 저소득은 종종 노년까지 빈곤을 수반할

수 있다. 국제행동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직업현장에서 연령의 다양성과 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26.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고령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이 노동시장에서 젊은이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국가경제의 향상에 지속적이고 소중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근로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들의 훈련에 이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

27.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사실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완전한 퇴직을 기꺼이 미루는 것을 장려하고 시간제 근로이든 완전 고용이든 계속적으로 고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존 인센티브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관행과 정책은 노인근로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특수한 일부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들이 노후에도 고용되어 있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건강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과 근로조건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 노동단체 및 인적자원 관리자들이 노인근로자들을 작업장에서 붙잡아 생산적인 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새로운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근로관행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8. 목표 1: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 부여

- 행동들

(a) 예를 들어, 노동시장정책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생산과 고용에서 높은 성장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고용증진을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에 둬

(b) 노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c)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이 노후에 배제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러한 조치는 실업자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여성노인의 참여증진, 예방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근로관련 보건서비스,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안전과 산업보건의 증진, 기술에의 접근, 평생교육, 계속 교육, 직장 내 훈련, 직업재활과 탄력적인 퇴직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음.

(d) 장기간 실업자와 장애인- 그들이 노후에 배제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과 같은 취약계층 및 여성의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

(e) 노인들에게 소규모 및 micro 사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성차별과 같은 차별이 없이 신용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영업 활동을 증진함

(f) 비공식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소득, 생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g) 노인들의 고용을 증진하고, 고용상태에 있는 노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장벽을 제거함
- (h) 적절한 경우, 특히 이미 얻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퇴직정책 및 제도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욕구는 물론 근로자의 욕구를 고려하는 퇴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증진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로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과 압력을 감소시키고, 퇴직연령을 넘어 일하는데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i) 노인 가족, 장애가족,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바, 근로와 보호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보호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함
- (j) 예를 들면, 이미 획득한 연금에 대한 권리, 장애급여 및 건강급여가 연장된 퇴직연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퇴직연령 이후의 근로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함
- (k) 특히,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능력을 유지시키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욕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환경과 혁신적인 사업장을 증진시킴
- (l) 근로자들이 더 오래 근로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잠재적인 재정적, 건강 그리고 기타 영향들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사전에 고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m) 고령의 근로자나 구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음으로써 노인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증진시킴
- (n) 정책 또는 의사 결정자들이 기업합병을 승인할 때 노인들이 젊은이들 보다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 감소 또는 실직을 당하지 않도록 노인근로자들을 고려하여야 함

과제 3: 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

29.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은 젊은층의 도시 탈출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농촌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지원과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조차 없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다. 식량안보와 농업생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가 갖는 의미 고려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여성노인들은 그들의 역할이 가족부양을 위한 무보수 근로에 국한되어 있고 생존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개발도상 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의 농촌지역 노인들은 종종 기본적인 서비스와 경제적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30. 적법한 국제이주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국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에서 해외자녀로부터 송금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은 종종 노인들과 그들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생명선이다. 초기 국제이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부

정부들은 노인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31. 도시환경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비하여 전통적인 확대가족망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개발도상국가의 노인들은 종종 사회안전망의 상실에 직면하며 도시의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로 인하여 특히 노인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소외와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이주와 저개발 도시의 확장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들에서는 가난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의 도시환경은 종종 혼잡한 주거, 빈곤, 경제적 자립 상실, 가정 밖에서 생계를 버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물질적 사회적 보호가 거의 없 상황으로 특징 지워진다.

32. 목표 1: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및 하부구조 개선

- 행동들

- (a) 재정서비스와 하부구조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향상된 농업기법과 기술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고령화되는 농민의 능력을 강화함
- (b) 소득창출사업이나 농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혹은 지원 및 경제적 다각화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의 설립과 활성화를 장려함
- (c)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용융자 및 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방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조장함
- (d) 농촌 및 오지지역에서 진행중인 성인교육, 훈련 및 재훈련을 증진함
- (e)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에 농촌과 오지 사람들이 연결 되도록 함
- (f) 경제적 자원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리와 관련하여 농촌과 오지지역 여성노인들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하여야 함
- (g) 농촌과 오지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장려함
- (h) 농촌과 오지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

33. 목표 2: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외 완화

- 행동들

- (a)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농촌노인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입안·수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b) 전통적인 농촌지역과 지역사회의 지원체도를 촉진하고 강화함
- (c) 농촌지역에서 친척이 없는 노인들-특히, 종종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긴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맞춤
- (d)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이 금융과 하부구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함

(e) 특히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지원제도를 증진함

34. 목표 3: 노인이주자의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 행동들

- (a) 노인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장려함
- (b) 이주노인들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보장을 유지하도록 돕는 조치를 입안함
- (c) 도시화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상쇄시키기 위하여 노인 회관의 설치와 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치들을 개발함
- (d)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개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세대간공동거주를 촉진하는 주택설계를 장려함
- (e) 노인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지원함
- (f) 적절하고 국내법에 일치하는 한 노인이주자들을 새 정착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 속에 통합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함
- (g) 노인이주자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제거함

과제 4: 지식, 교육 및 훈련에의 접근

35. 교육은 활동적이고 성취적인 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중의 하나이다. 새천년정상회의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완전한 기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교육과 훈련에 대하여 평생 동안의 접근보장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개인과 국가 양자의 생산력 확보에 절대 필요하다.

36. 현재 개발도상국에는 최소한의 문자해독과 기본적 계산능력만을 가지고 노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는 그들의 생계능력을 제한하고 그리하여 건강과 복지 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가에서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훈련은 노인들의 고용참여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37. 다양한 연령분포 구조를 가진 직장은 개인들이 기술,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한다. 이러한 종류의 상호 훈련은 집단적인 협약과 정책으로 공식화 할 수 있으며 혹은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남겨 놓을 수도 있다.

38. 교육이나 훈련 없이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노인들은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교육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들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년기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문맹

률이 높게 남아 있다. 기술은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리하여 연령계층 사이에서 소외와 분리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기술적 변화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39. 훈련, 재훈련 및 교육은 근로자가 직장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기술적인 조직적인 변화들은 근로자의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며 전에 축적한 근로경험의 가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노동인력으로 남아있는 노인들에게 지식,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을 더 한층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고려할 때 젊은 근로자들보다 기술적인 조직적인 변화들에 대한 적응에 종종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40. 목표 1: 직업 지도 및 배치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한 전 생애를 통한 기회 균등

- 행동들

- (a) 2015년까지 성인 문자해독율 수준을 50%까지 - 특히 여성노인들을 위하여 - 향상시키고,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향상시킴
- (b) 장애노인을 위한 특수 문자교육과 컴퓨터훈련을 포함하여 노인과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인력을 위하여 문자해독율, 기본적인 계산능력 및 기술훈련을 장려하고 증진함
- (c) 노인근로자를 위한 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이행하고, 퇴직 후에도 노인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함
- (d) 여성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 - 특히 정보와 통신기술 - 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e) 노인들이 일상생활의 기술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개발하고 전파시킴
- (f) 노인들의 신체적인 능력과 시력의 변화를 고려하는 컴퓨터 기술과 인쇄, 오디오 기기 의 설계를 장려함
- (g)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의 혜택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훈련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조사 연구를 장려함
- (h)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에게 노인 - 특히 여성노인- 재훈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양함

41. 목표 2: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험의 이익을 인식하여 모든 연령계층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의 완전한 이용

- 행동들

- (a) 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지식을 완전히 활용하는 조치를 고려함
- (b)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속에 기회를 제공함
- (c) 노인들이 지도자, 조정자 그리고 상담가로 활동하도록 함
- (d) 명백한 양성 평등적 시각을 가지고 가정, 이웃, 지역사회에서 전통적 비전통적 세대 간 상호지원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
- (e)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 - 그들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장려함
- (f)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지식과 노인들의 잠재능력의 활용을 장려함

과제 5: 세대 간 연대성

42.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 세대간 연대성은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 달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연대성은 또한 사회적 결합과 공식적 공공복지 및 비공식적 보호제도의 근거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변화하는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득유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금, 사회보장, 보건 및 장기요양 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43. 가정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세대 간 유대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현대사회생활의 지리적 유동성과 여타 압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여 노인들이 재정적으로나 손자와 여타 친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데도 현저한 기여를 제공한다.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이 언제나 노인들이 좋아하거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목표 1: 세대간 평등과 상호이익을 통한 연대성 강화

- 행동들

- (a) 공공교육을 통하여 고령화가 전체 사회의 문제라는 이해를 증진함
- (b) 세대 간의 연대성을 촉진하도록 기존 정책들의 검토를 고려하여 사회적 결속을 증진함
- (c) 노인들이 사회적 자원임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간의 상호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선도 사업을 개발함
- (d) 지역사회에서 특히 모든 연령계층의 모임을 촉진하고 세대 간 격리를 피함으로써 세대

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최대화함

(e) 동시에 부모, 자녀 및 조부모를 보호하여야 하는 세대의 특수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고려함

(f) 사회개발의 핵심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세대 간 연대성과 상호지원을 증진하고 강화함

(g) 상이한 문화와 환경에서 가족 공동거주와 독립 거주를 포함한 노인 거주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함

과제 6: 빈곤 해소

45. 노인의 빈곤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빈곤투쟁은 고령화행동계획의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비록 빈곤해소 목표와 정책들에 대하여 근래에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지만, 많은 나라의 노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빈곤이 그 지방에 고유한 곳에서 평생 동안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더 심각한 빈곤 속에 노년을 맞이한다.

46. 여성들의 경우 특히 지속적인 직업경력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편향성이 빈곤의 여성화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 모든 불리한 전통과 관행은 물론 경제력 배분에서 여성 불평등과 차이, 남녀간의 무보수 노동의 불평등한 배분, 여성 기업활동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 부족, 자본- 특히 토지, 용자 및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관리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부여를 제한하여 왔으며,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켰다. 많은 사회에서이혼 또는 별거 중이거나 미혼인 여성과 과부를 포함한 여성 가장들은 특히 빈곤의 위협 하에 있다. 특별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여성- 특히 여성노인들-의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7. 또한 장애인들도 부분적으로 사용자의 차별과 그들의 욕구를 수용할 작업장 부재로 인하여 장애가 없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빈곤의 위협 하에 있다.

48. 목표 1: 노인들의 빈곤 감소

- 행동들

(a) 2015년까지 극도의 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감소시킴

(b) 빈곤감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 속에 노인들을 포함함

(c) 고용, 소득창출기회, 용자, 시장과 자산들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을 증진함

(d) 빈곤해소 전략과 이행 사업에서 여성노인, 후기고령노인, 장애인, 독신노인들의 특수한 욕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e) 가난한 여성노인의 욕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적절하고 모든 적절한 수준

에서 가능한 경우 연령과 여성에 관계된 빈곤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검토가 연령계층과 성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기존 빈곤지표의 사용을 장려함

(f)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노력에 노인들의 기여를 증진하고 노인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 -특히 여성노인- 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함

(g) 노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들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적인 빈곤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함

(h) 빈곤해소 - 특히 노인들의 빈곤- 를 위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노력을 돕기 위하여 더욱 더 세계화되고 있는 경제에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장애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능력을 강화함

과제 7: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예방

49. 소득보장과 사회보장 조치들은 기여금을 내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고도로 구조화된 제도 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도 포함한다. 그것들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함을 위한 토대의 하나이다.

50. 세계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재정적 제약과 증가하는 노인인구는 종종 공적 사회보호(보장)제도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적절한 소득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적용이 제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비공식적인 가족지원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시장 충격과 개인적 불행들에 취약하다. 경제체제전환국들은 경제변화가 모든 계층의 국민들- 특히 노인과 아동부양 가족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곳에서는 연금, 장애보험, 건강급여와 저축을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51. 여성의 빈곤화 - 특히 여성노인들 - 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보호(보장) 조치들이 요청된다.

52. 목표 1: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금, 장애보험과 건강급여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보장)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증진

- 행동들

(a) 모든 사람이 노년기에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함

(b)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성 평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함

(c) 적절한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증가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근로인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d) 비공식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고려함
- (e) 저 기술 노인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을부여할 수 있는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함
- (f) 연금제도와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지급능력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함
- (g) 사적연금과 보충연금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에 대한 규제제도를 설치함
- (h) 모든 분야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조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53. 목표 2: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노인들에게 충분한 최저소득을 제공

- 행동들

- (a) 적절한 경우 무각출 연금제도와 장애급여제도의 설치를 고려함
- (b) 긴급한 사안으로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 -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특히 혼자 살고 있거나 빈곤에 더 노출되어 있음 - 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직함
- (c) 연금제도와 장애보험을 필요한 경우 개혁할 때마다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함
- (d) 연금, 적절한 경우 장애보험 그리고 저축제도에 대하여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상쇄 하는 조치를 취함
- (e) 국제기구들은 - 특히 국제금융기구 - 그들의 설립취지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와 필요한 모든 국가들에게 그들이 기본적인사회보장 -특히 노인들을 위한- 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도와 주도록 요청함

과제 8: 긴급상황

54. 자연재해, 기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노인들이 특히 취약하며,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되고 음식과 피난처를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들이 취약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일차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적 구호기관은 노인들이 재화와 재건을 증진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55. 목표 1: 자연재해와 기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 기간과 그 이후 식량, 피난처, 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

- 행동들

- (a)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하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물리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무력분쟁과 외국점령 하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b) 정부들은 국내 강제이주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긴급구조를 보호, 지원 및 제공하도록 함

(c) 긴급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찾고 확인하며, 원조수요평가 보고에 그들의 기여와 취약성을 포함하도록 함

(d) 구호기관 요원들에게 노인들의 특수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노인들의 요청사항에 기본적인 지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e)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들이 서비스에 실제적인 접근을 하며, 적절한 경우 계획과 전달서비스도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f) 새롭고 낮은 환경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노인난민들은 종종 특별한 사회망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g) 재난 준비, 구호대원 훈련, 서비스와 물품 제공을 포함한 재난구호계획에 있어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명백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적인 지침을 작성함

(h)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임

(i) 재난 발생 이후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방법의 재정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함

(j) 위험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긴급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및 재정적인 학대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들을 그로부터 보호함

(k) 특히 활동적인 사람들을 더 자립적이 되도록 도우며,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지역사회 보호를 장려함으로써, 난민관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이행 모든 측면에서 노인난민을 하나의 목표로 하여 포함하도록 장려함

(l) 자연재해, 여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분쟁 후 상황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재건과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 부담을 공유하고 그 지원을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

56. 목표 2: 비상사태 이후 지역사회와 사회구조 재건에 노인들의 기여제고

- 행동들

(a) 약한 노인들을 확인하고 돕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조와 재활사업의 제공에 노인들을 포함함

(b) 가정과 사회의 교육,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에서 노인들을 지도자로 인식함

(c) 여성노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감안하여 소득창출, 교육 프로그램, 직업 활동을 포함한 재활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다시 달성하도록 지원함

- (d) 이주상태와 토지, 여타 생산적이고 개인적인 자산의 몰수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법률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함
- (e) 자연재해나 여타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에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물품에 있어서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 (f) 긴급상황 이후에 노인들의 기여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적절한 경우 적용함

B. 주요 방향 II: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57. 건강은 불가결한 하나의 개인 자산이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수준은 사회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불가결하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일부 인구집단은 아직도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유병율과 사망률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아직은 건강한 장수의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58. 노인들은 재활의료와 성적인 건강을 포함하여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질병 예방과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포함한 건강 보호 및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완전한 접근은 이미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들의 독립유지, 질병의 예방과 지연, 장애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건강 보호와 서비스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포함하고 노인인구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59.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로 노년에 이르기 위하여 생애에 걸친 개인적인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개인의 책임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은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들에게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의료와 재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적절한 경우 관련 대학과정과 보건의료체계에 노인병의학의 도입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이외에 지원적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하면서 개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여타 중요한 행위자로 특히 민간단체와 가족이 있다.

60.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질환의 만연에서 만성질환과 퇴행성질환의 만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학적인 변화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은 증가하는 비전염성 질환의 위협과 동시에 에이즈, 결핵과 말라리아와 같은 새로이 나타나고 다시 발생하는 질환과 싸우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61.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수요는 적절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부재는 커다란 비용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보조기술,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 정신보건서비스,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과 지원적인 환경을 포함한 평생 건강증진 정책들이 노년에 따라오는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예산절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제 1: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과 안녕

62.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1986년 오타와 건강증진선언에 담겨있다. 건강한 수명 연장,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 증진, 사망률과 유병률 감소,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의 목표들은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설정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접근 향상을 위하여 권고한 행동들의 이행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63. 건강증진활동과 생애에 걸친 질병예방을 포함한 보건 의료와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은 건강한 노후의 초석이다. 생애에 걸친 관점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이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기능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치료도 제공 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질병과 장애의 예방과 지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64.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행동들 그 이상을 요구한다. 건강은 물리적 환경, 지리, 교육, 직업, 소득,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원, 문화와 성을 포함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인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개선은 또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입법과 서비스 전달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생애에 걸친 동등한 기회는 아직 많은 분야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생애에 걸쳐 그들의 노후에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안녕에 대하여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들에 직면하므로 여성들을 위하여 노후 안녕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

65. 아동들과 노인들은 중간 연령층의 개인들보다 여러 형태의 환경오염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가장 낮은 수준의 오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의학적인 상황들은 생산성을 감소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 불량과 빈약한 영양섭취는 또한 노인들을 부적절한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들의 건강과 활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노인의 질병, 장애와 사망률의 주요 원인들은 특히 영양, 신체적 활동과 흡연 중지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조치들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66. 목표 1: 질병의 위험과 그 결과로 노년에 잠재적 의존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영향요소 감축

- 행동들

- (a) 노인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중에서도 빈곤 해소정책에 우선순위를 둬
- (b) 적절한 경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의료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확보함
- (c)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장애와 사망을 감소시키는 목표-특히 성별 목표-를 설정함
- (d) 노년에 질병과 장애의 유발을 촉진하는 주요 환경적,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찾아내고 주의를 기울임
- (e)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신체적 활동부족 그리고 흡연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주요 위험인자, 보건교육, 예방정책 및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춤
- (f) 알코올 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행동을 취하고, 모든 세대가 담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 생산품의 사용 및 담배연기에 대한 비자발적 노출을 감소시킴
- (g)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며, 아동기부터 전 생애를 통하여 환경 오염원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같은 공중정보 및 건강 증진을 조직함
- (h)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증진하고,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와 교육을 통하여 처방의약품의 남용을 최소화함

67. 목표 2: 노인질병 예방정책 개발

- 행동들

- (a)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발생을 지연시키는 조기 개입조치들을 입안함
- (b) 예방적 조치로서 성인예방접종사업을 증진함
- (c) 성 인지적인 일차예방과 검진사업을 노인들에게 제공함
- (d)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자기 관리를 하며 노년에 이르도록 상담과 지도를 수행하는 보건, 사회서비스, 의료 전문가들에게 훈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
- (e) 사회적 고립과 정신질환으로 야기되는 위험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료 상호간 봉사 및 이웃방문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활동과 상호부조단체를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인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킴
- (f) 사회적 소외와 싸우고 능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인들의 시민적 문화적 참여를 증진함
- (g) 가능한 경우 모든 세대에 대한 부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국내적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강화함

- (h) 비자발적인 부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행자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추락 예방사업을 이행하며, 가정에서의 화재위험을 포함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자발적 부상을 예방함
- (i) 노인연령층의 질병 심화를 예방하는 정책을 안내하도록 노인들에게 공통적인 질병들에 관한 모든 수준의 통계적 지표를 개발함
- (j) 신체적 활동과 스포츠를 포함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노인들이 갖거나 유지하도록 장려함

68. 목표 3: 식품 및 적절한 영양에 대한 모든 노인들의 접근

- 행동들

- (a) 깨끗한 물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노인들의 평등한 접근을 증진함
- (b) 국내적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품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달성함. 이와 관련하여, 식품과 의약품이 정치적 압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함.
- (c) 생애에 걸쳐 남성과 여성에게 특수한 영양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기부터 생애에 걸친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을 증진함
- (d)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영양목표 개발을 통하여 되도록 이면 지역적인 식량에 근거하여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필수 및 미량 영양소의 결핍증을 예방하는 균형 있는 식사를 권장함
- (e)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을 입안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영양결핍과 그에 수반하는 질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 (f) 물,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물의 적절한 섭취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특별한 영양적 욕구에 대하여 노인들, 일반 공중, 비공식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시킴
- (g) 식사를 방해하고 영양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공급 가능한 치과서비스를 증진함
- (h) 모든 보건과 의료관련 근로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노인의 특별한 영양학적 욕구를 포함함
- (i) 병원과 여타 보호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접근 가능한 영양과 식품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함

과제 2: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69.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와 재활에 대한 투자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일 수 있는 기간을 확장시킨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으로부터 일차보건의료의 제공, 급성 질환치료, 재활, 만성건강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치료, 장애인인을 포함한 노인을 위한 신체

적 정신적 재활, 고통스럽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고식적 진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호이다. 노인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주; 고식적 진료(Palliative care)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적인 처치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완전 보호를 의미함. 다시 말하면, 질병의 고통과 여타 징후를 관리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70.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와 그 나라에서 자립과 자결의 정신으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가 가능한 비용으로, 주민의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실용적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이다. 노인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법률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그들의 치료가 젊은이들의 치료보다 가치가 적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서 연령차별과 연령관련 장애차별에 마주칠 수도 있다.

71. 우리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곤국가를 괴롭히고 있는 공중보건문제들 - 특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여타 전염병과 같은- 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Agreement)이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국제적 행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72. 지적재산권 보호는 신약의 개발을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협정이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동의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증진과 공중보건 보호 위한 정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73. 정부들은 모든 세대를 위하여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분야 사이의 협력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보호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그러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인 공중보건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4. 목표 1: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또는 언어적 장애를 포함한 여타 이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철폐

- 행동들

- (a) 보건과 재활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가난한 노인들을 위하여 이리 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며, 기본적인 의약품 치료와 여타 치료적 조치를 포함하여 농촌이나 오지지역과 같은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자원의 분배를 증진함
- (b) 그 중에서도 사용자 요금의 인하나 폐지, 보험제도 및 여타 재정지원 조치로 농촌이나 오지지역에 사는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평등한 의료접근을 증진함
- (c) 기본적인 의약품치료와 여타 치료적 조치에 대한 가능한 접근을 증진함
- (d) 보건과 재활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과 선택에 대하여 노인들을 교육하고 능력을 부여함
- (e) 연령과 기타 형태의 차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일차 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함
- (f) 노인들의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에서 연령차별과 기타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g) 농촌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자원적인 한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원격진료와 원격 교육과 같은 기술을 이용함

75. 목표 2: 노인욕구에 대응하는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강화 및 그 과정에서의 노인참여증진

- 행동들

- (a)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립함
- (b) 노인들에게 보건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지원함
- (c)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경우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킴
- (d) 기본적인 노년학과 노인병학에 대하여 일차보건의료 사업자와 사회사업가들에게 교육을 시킴
- (e)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특히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민간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동원하는 모든 수준의 조치와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세계보건기구가 보건연구분야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을 함.

76. 목표 3: 노인욕구를 만족시키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발

- 행동들

- (a) 적절한 수준에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와 재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제도를 개발 함

- (b) 지역 보건사업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평가기준을 결정하는 지역사회 개발전략을 이행하며, 동 기준은 노인들의 기여를 포함하여야 함.
- (c) 일차보건의료, 장기요양치료, 사회서비스 및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의 조정을 향상시킴
- (d) 고식적 진료의 제공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에 그를 통합함. 이 목적을 위하여 훈련과 고식적 진료의 기준을 개발하고, 고식적 진료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들에게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접근을 장려함.
- (e) 노인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보건수요에 자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의료, 급성치료, 재활, 장기 및 고식적 진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보호 하에 모든 범위의 서비스 입안 및 조정을 증진함
- (f) 노년학적인 특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차보건의료 및 사회보호서비스와 동 서비스와의 조정을 향상함

77. 목표 4: 노인의 개발참여 및 일차보건서비스와 장기요양치료 서비스 강화

- 행동들

- (a)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및 재활사업의 입안, 수행 및 평가에 노인을 포함시킴
- (b) 보건의료와 사회적 보호 제공자들에게 노인보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인들을 완전히 참여시키도록 장려함
- (c) 노인들의 자기 보호를 증진하고, 건강과 사회 서비스에서 노인들의 힘과 능력을 최대화 시킴
- (d) 건강정책의 형성에서 노인들의 욕구와 인식을 통합함

과제 3: 노인과 에이즈

78. 노인의 에이즈 감염이 그들에게 발생하는 기타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에이즈 진단은 어렵다. 노인들은 단지 일반적으로 공중캠페인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79. 목표 1: 감염노인과 감염되거나 생존한 가족을 돌보는 노인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영향평가 향상

- 행동들

- (a) 노인들의 에이즈 감염정도 평가를 위한 에이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을 확대함
- (b) 노인 보호자들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자료 모두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 하여 에이즈 환자의 노인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

80. 목표 2: 에이즈 감염노인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보호기술 관련 훈련, 치료, 의학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제공

- 행동들

- (a) 적절한 경우 공중보건과 예방 전략을 지역의 전염병을 반영하도록 개정함. 일반 국민을 위한 에이즈 예방과 위험에 관한 정보는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함.
- (b) 노인보호자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노인보호자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함
- (c) 에이즈 치료와 지원전략이 에이즈에 감염된 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하도록 함

81. 목표 3: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부모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개발하도록 노인들의 기여를 증진하고 인식함

- 행동들

- (a) 유엔에이즈선언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노인들-특히 보호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에이즈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함

※ 유엔에이즈선언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Global Crisis, Global Action)은 2001.6.23-29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에이즈특별총회에서 채택되었음. 에이즈 감염감소,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지도력, 감염자 인권, 감염 위험의 최소화, 에이즈 고아, 사회경제적 영향의 최소화, 연구와 개발, 분쟁지역의 에이즈, 자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b) 유엔새천년선언문에 따라 노인들이 자식들과 손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자들에게 현물지원, 보건의료 및 용자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함
- (c) 에이즈문제와 관련하여 아동, 청년 및 노인과 함께 일하는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함
- (d) 모든 국가-특히 에이즈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노인들의 공헌을 더 잘 이해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연구의 협력을 장려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널리 전파하도록 함

과제 4: 보호 제공자와 보건전문가의 훈련

82. 노인과 함께 일하는 모든 보건전문가들을 위하여 노인병학과 노년학 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 전문가들 에게도 보건과 노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

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긴급히 필요하다. 또한, 비공식 보호제공자들도 노인 보호에 관한 정보와 기본적인 훈련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83. 목표 1: 노인 욕구와 관련된 보건전문가와 준 전문가들을 위한 향상된 정보와 훈련 제공

- 행동들

(a) 노년학과 노인병학을 포함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 및 보호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회적 보호 전문가들, 그리고 비공식 보호제공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가-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함.

(b) 고령화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 안녕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보건 및 사회적 보호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함

(c) 학생들의 노인병학과 노년학 등록확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포함하여 노년학과 노인병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충함

과제 5: 노인들의 정신건강 욕구

84. 세계적으로 정신건강문제는 장애와 삶의 질 악화의 중요한 한 원인이다. 정신건강문제는 분명히 불가피한 노화과정의 한 결과는 아니며,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 수의 현저한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상실과 삶의 변화는 종종 정신적인 질환을 수반할 수 있으며, 그 질환들은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치료 받게 되거나 아예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으며 혹은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수용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85. 그러한 질병들을 대응하는 전략은 의약품 복용, 심리 사회적 지원, 인식훈련 프로그램과 보호 가족, 종사자 및 특수한 입원보호구조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

86. 목표 1: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서비스와 관리 제공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신건강 보호서비스 개발

- 행동들

(a) 전문가들과 비공식 보호제공자들을 위한 진단절차, 적절한 투약, 심리치료 및 교육을 포함 하여 노년기 정신질환의 예방, 적시 발견 및 치료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함

(b) 질병의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경우 알츠하이머와 그와 관련된 질환들의 질 평가 및 진단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함. 이러한 질환에 대한 연구는 환자, 보건전문가 및 보호자의 욕구에 맞추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근거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함.

- (c) 알츠하이머와 여타 치매 관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기간 동안 집에서 살며 그들의 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d) 자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 가족 및 기타 보호자들을 위한 휴식 보호를 제공함
- (e)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재통합을 돕는 심리 사회적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함
- (f) 불필요한 시설수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함
- (g)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안전과 치료를 제공하고 개인의 존엄을 증진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설을 설치함
- (h) 정신질환의 증상, 치료, 결과 및 진단에 관한 공중 정보를 증진함
- (i) 장기요양치료 시설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
- (j)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모든 정신질환과 우울증의 발견 및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함

과제 6: 노인과 장애

87. 손상과 장애의 발생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 여성노인들은 그 중에서도 평균수명과 질병감염에서의 남녀차이와 생애에 걸친 성 차별로 인하여 노년기 장애에 특히 취약하다.

88. 손상과 장애의 영향은 종종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악화된다. 그 고정관념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하거나, 장애인들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9. 모든 노인들을 위하여 개입과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노인들이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고 독립을 증진하는데 불가결하다.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화는 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요소이다.

90. 목표 1: 장애노인의 전 생애에 걸친 최대한 기능적 능력 유지 및 완전한 참여 증진

- 행동들

- (a) 장애노인 문제를 국가정책 의제에 포함하고 장애 관련 사업조정기관들이 장애노인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 (b) 보건,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남녀평등과 연령을 감안한 국가적 지역적 정책, 입법, 계획과 사업들을 개발함
- (c) 장애노인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d) 장애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교육과 생애에 걸쳐 장애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업을 개발함

- (e)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 친화적인 기준과 환경을 만들
- (f) 장애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주택 선택사항의 개발을 장려하고, 독립을 권장하며,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상업 지역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교통 및 여타 서비스를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g)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재활, 적절한 보호 및 보조기술의 제공을 장려함
- (h) 가입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차별이 없이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을 포함한 모두에게 의약품과 의료기술에의 접근성을 증진하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그에 대한 공급가능성을 촉진함
- (i)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자조 단체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함
- (j)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유급 근로나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사용자가 받아들일도록 장려함

C. 주요 방향 III: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91. 사회개발을 위하여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을 증진하는 것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적인 목표들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제24차 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 새롭게 되고 강화되었다. 그 공약은 새천년선언문에 설정된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정치체제와 선정을 핵심적이며 구조적인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 의존성·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 공적 개발원조와 부채 감경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부원조 증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 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접근 향상, 국제적 인금융 동요의 부정적인 영향 축소. 이와 같은 측면과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의 여타 측면,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을 실현하는 것은 이 행동계획에서 합의된 목표와 정책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24차 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 2000.6.26-7.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995.3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코펜하겐 선언 및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그 후속조치를 논의함.

92. 사회개발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자원의 동원은 2002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요소이다. 1982년 이후로 기존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한개혁이 점차적으로 주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적절한 국가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인구변화나 여타 요인과 같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제도에 관한 새로운 도전과 결합하여 많은 나라에서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 제도의 재정을 위협하게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증가하는 부채부담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어

졌고,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경제체제 전환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과도한 부채는 사회개발을 증진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93.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새천년선언문에 담겨있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현재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추정에 주목한다. 새천년선언문에 담겨있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과 선정을 펼치고, 법에 의거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국내자원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자금을 끌어오며, 개발의 견인차로서 국제교역을 증진하며,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재정적 기술적 협력, 지속 가능한 부채조달 및 외부적인 부채구제를 증가시키며, 국제적인 통화·재정·무역 제도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약속한다.

94. 또한,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 청년과 노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결집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약속도중요하다. 모든 노인들은 어떠한 상황하에 있던지 그들의 능력을 높여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일부 노인들은 높은 정도의 신체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반면에, 대부분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싶어 하며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노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그들이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깨끗한 물과 적절한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생애에 걸친 개발과 독립을 강화하며, 호혜와 상호의존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제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들은 위와 같은 능력을부여하는 환경- 시민사회와 노인들 자신이 참여하는-을 조장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제 1: 주택과 주거환경

95. 주택과 주거 환경은 주택유지의 재정적 부담, 주택의 중요한 정서적 심리적 안정성과 같은 접근가능성과 안전과 같은 요소 때문에 노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좋은 주택은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노인들이 어느 곳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과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이다.

96. 개발도상국과 일부 경제체제 전환국의 경우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도시화 주택과 서비스가 부족한 비 도시 지역에서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확대가족의 전통적인 환경보다는 고립 속

에서 늙어가고 있다. 혼자 남겨져 그들은 종종 적절한 교통과 지원 제도가 없이 지내고 있다.

97.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환경조성과 적절한 교통수단의 제공이 또한 증가하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주택개발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족들을 위하여 설계되고 있다. 교통은 농촌지역에서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가면서 점점 더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종종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이 이사를 가거나 배우자를 사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주택에 계속 살게 된다.

98. 목표 1: 노인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며 가능한 주택선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화 증진

- 행동들

- (a) 연령-통합적인 지역사회의 개발을 증진함
- (b) 노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분야의 노력을 조정함
- (c) 다세대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교통, 보건, 위생 및 안전과 같은 지역사회의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 (d)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사업을 지원함
- (e) 노인들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형평성 있는 할당을 촉진함
- (f) 주거환경, 장기요양치료 및 사회적 교류기회의 통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과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연계함
- (g) 연령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주택설계를 장려하고, 공공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함
- (h) 노인,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선택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
- (i)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그들의 보호와 문화적 욕구를 고려하도록 함
- (j)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택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함

99. 목표 2: 특히 장애노인과 같은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주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 설계를 증진

- 행동들

- (a) 새로운 도시공간은 기동성과 접근성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보장함
- (b) 기술과 독립적인 주거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재활서비스의 채택을 증진함

- (c) 주택과 공공 공간의 설계를 통하여 공동거주와 다세대간 동거를 위한 수요에 부응함
- (d) 노인들이 이동성과 접근성에 장애가 없는 주택을 만드는 것을 지원함

100. 목표 3: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공증진

- 행동들

- (a)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효과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증진함
- (b) 도시지역에서 거주지 인근 사업과 서비스와 같은 공적 사적 대체교통 수단의 증가를 촉진함
- (c) 노인 운전사의 훈련과 평가, 안전한 도로의 설계 및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요리서비스 차량 개발을 장려함

과제 2: 보호 및 보호제공자 지원

101. 노인보호 혹은 노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가족, 지역사회에 의하여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 제공되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예방, 보호, 지원 및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자가 노인인 경우에 그들을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이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예방, 치료 및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적 자원과 사회적 하부구조를 설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제공 제도는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 증가함에 따라 공공정책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

102. 공식적인 보호정책이 잘 개발된 나라에서조차 세대상호간 유대와 상호 의존은 대부분 보호가 아직도 비공식적인 것을 지켜주고 있다. 비공식적인 보호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보호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의 늙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이상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보호자에게 보상이 없는 가족보호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비공식 보호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비용은 이제는 인식되고 있다. 여성보호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부재, 사라진 승진 및 저소득 때문에 낮은 연금기여의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일과 가사의 무를 균형 시키려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상황은 특히 여성에게 동시에 아동과 노인 보호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103. 세계의 많은 지역 - 특히 아프리카 - 에서 에이즈 전염병은 이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노인들에게 에이즈에 걸린 자녀와 손자들 그리고 에이즈로 고아가 된 손자들을 보호하는 추가된 부담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성인 자녀가 자신들의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더 정상적인 때에조차 많은 노인들은 예상치 않게 병약한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나

손자들을 돌보는 유일한 부모역할의 과제를 맡고 있다.

104.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많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되어왔다. 때때로 내재하는 논리는 가족이 대부분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지역사회 보호가 수용보호 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예상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었다.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가족 보호자들은 과중한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지역사회 보호제도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종종 빈약한 자원동원과 조정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로 수용보호는 병약한 노인이나 보호자들이 더 선호하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에 비추어, 가족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제공 가능한 보호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이 자신들의 욕구평가와 서비스 전달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05. 목표 1: 노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및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 제공

- 행동들

- (a) 지역사회에 기초한 보호와 가족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함
- (b) 병원입원과 요양원 입소의 가능한 대체수단으로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보호와 지역사회에 기초한 요양보호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킴
- (c) 훈련, 정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제도를 통하여 보호제공자들을 지원함
- (d)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그것이 상실되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노인들에게 지원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
- (e)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보호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촉진함
- (f) 인식장애를 지닌 사람을 위한 고령의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이행함
- (g) 공식적인 보호 환경에서 질 높은 보호가 제공되도록 기준과 제도를 세우고 적용함
- (h)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 특히 증가하고 있는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를 개발함
- (i)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의 자립을 고양하며, 질 높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가능하거나 희망하는 한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j)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더 나은 조화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과 남성간 보호책임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보호 및 가족보호에 대한 지원 제공을 증

진합

106. 목표 2: 노인 - 특히 여성노인 - 의 보호자 역할 지원

- 행동들

- (a) 보호를 제공하는 노인과 그 보호 하에 있는 가족 양자를 위한 휴식 서비스, 조인 및 정보를 포함한 사회적 지원제공을 장려함
- (b)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 특히 여성노인 - 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임
- (c) 손자를 기르는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 강화함
- (d) 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 보호제공자들을 고려함

과제 3: 유기, 학대 및 폭력

107. 노인에 대한 유기, 학대 및 폭력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재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 지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노화의 진전은 치료능력의 감퇴를 수반하여 노인 학대피해자는 충격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회복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 충격의 영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도움을 청하기를 꺼려하게 만들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지역사회는 노인에 대한 학대, 소비자 사기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및 수용시설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보호자들에 의한 잠재적인 유기, 학대 혹은 폭력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8. 여성노인들은 차별적인 사회적 태도와 여성인권의 미 실현으로 인하여 더 큰 신체적 심리적 학대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해로운 전통과 관례는 여성노인들을 대한 학대와 폭력 - 종종 빈곤과 법률적 보호의 부족으로 인하여 악화된 - 을 초래하고 있다.

109. 여성의 빈곤은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부재, 신용대부·토지소유·상속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접근 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접근 부족,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빈곤은 또한 여성들을 성적인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

110. 목표 1: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 근절

- 행동들

- (a) 노인학대와 그의 다양한 성격 및 원인에 대하여 언론이나 여타 인식고양 캠페인을 이용

- 하여 전문가들을 민감하게 하고 일반 공중을 교육시킴
- (b) 여성의 건강 및 안녕에 해로운 과부의식을 철폐함
- (c) 노인학대를 근절하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적 노력을 강화함
- (d) 노인과 관련된 해로운 전통적 관습을 철폐함
- (e) 지역사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노인 학대를 대응함에 있어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사이에 협력을 장려함
- (f) 유기, 학대 및 폭력 - 특히 긴급 상황 하에서 - 에 대한공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그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으로 인한 여성노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함
- (g)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 심각성 및 결과에 관하여 더 많은 조사연구를 장려하고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널리 전파함

111. 목표 2: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 행동들

- (a) 학대의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와 학대자의 재활제도를 도입함
- (b) 의심이 있는 노인 학대를 보고하도록 일반 공중뿐만 아니라 보건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을 장려함
- (c) 보건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알려주도록 장려함
- (d) 보호전문직 훈련에 있어서 노인학대의 처리법을 포함함
- (e) 노인들에게 소비자 사기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안내프로그램을 입안함

과제 4: 노화의 이미지

112.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불가결한 측면의 하나이다. 평생 동안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권위, 지혜, 위엄과 자제에 대한 인정은 역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정상적인 존경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떤 사회 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건강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욕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소모품으로 어울리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비록 건강한 노화가 노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점차 중요한□ 과제로 되었지만, 보건의료, 연금 및 기타 서비스의 규모와 비용에 대한 공공의 초점은 때때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여 왔다. 노인들을 매우 중대한 공헌을 하는 매력적이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개인들로 보는 이미지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여성 노인들은 특히 오도된 부정적인 고정관념 - 그들이 제공하거나 가지고 있는 공헌, 강함, 풍부한 자원, 인간성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묘사하는 대신에 종종 약하고 의존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 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역적인 국가적

인차원에서 배타적인 관행을 강화한다.

113. 목표 1: 노인의 권위, 지혜, 생산성, 여타 중요한 공헌에 대한 공중의 인식 향상

- 행동들

- (a) 편향된 선입관과 신화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 결과로 존경, 감사, 위엄과 민감성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우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책임이 있는 정책구조를 개발하고 널리 증진함
- (b) 대중매체가 장애인을 포함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지혜, 강함, 공헌, 용기 및 풍부한 자원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조장하도록 장려함
- (c) 교육자들이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헌을 교육과정에서 인정하고 포함시키도록 장려함
- (d) 대중매체가 고정관념의 묘사를 극복하고 인류의 모든 다양성을 밝게 비추도록 장려함
- (e) 대중매체가 변화의 선구자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개발전략에서 노인의 역할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함
- (f) 대중매체가 노인들의 활동과 관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 의한 공헌을 촉진함
- (g) 대중매체와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가 직장에서의 연령주의를 피하고 노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장려함
- (h) 여성노인들의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함

III. 이행과 후속조치

114.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은 앞으로 발생할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기술과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 외에 고령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국제적 지원이 중요하며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성이 있다.

115. 행동계획의 이행은 그 중에서도 인간존엄,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종교적, 민족적인 가치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존중에 근거한 노인들의 사회개발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그리고 정신적인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행동

116. 정부는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첫 단계는 고령화와 노인들의 관심사항을 국가적인 발전계획과 빈곤해소전략에서 주류화하는 것이다. 사업혁신, 재정적 자원의 동원, 그리고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동시에 착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국가적 국제적인 모든 수준에서의 선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의 모든 부문사이에 효과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 행동계획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117. 민간단체의 역할은 국제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후속조치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118. 적절한 경우 고령화 관련 기관과 국가위원회의 설치 같은 행동계획의 제도적 후속조치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져야한다. 특히, 노인단체와 같은 관련 시민사회분야의 대표를 포함한 고령화 국가위원회는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고령화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자문과 조정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

119. 기타 이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은 효과적인 노인단체들, 고령화에 대한 훈련과 조사활동, 정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성과 연령에 특수한 정보의 편집과 같은 국가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한다. 이행의 진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또한 소중한데, 자치적인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는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노인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에 의한 자원의 동원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적인 행동

120. 우리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이 무역, 투자, 자본이동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향상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성장과 전 세계에 걸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심각한 금융위기, 불안정, 빈곤, 사회 내부와 사회 사이에 배제와 불평등을 포함한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체제전환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 - 특히 최빈곤국가들 - 이 세계경제에 통합하고 완전히 참여하는데 심각한 장애들이 남아있다. 만약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혜택이 모든 나라들에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들과 전체 지역에서 증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로부터 소외되어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타난 기회의 잠재력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여야 한다.

121. 세계화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과 경제체제전환국들은

그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는 완전히 포괄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국가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책과 조치들이 개발도상국가와 경제체제전환국들이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아래 입안되고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122. 개발도상국, 최빈곤국가, 경제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적인 발전노력을 보충하고 동 국가들이 이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하다. 그 중에서도,

- 국가적인 발전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제적인 통화, 금융 및 무역제도의 조화·관리·일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 발전증진을 위한 유엔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모든 관련 행정부처와 기관들 사이의 협조 증진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유사하게 우리는 새천년선언문의 발전목표인 지속적인 경제 성장, 빈곤해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운영적인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을 조정하는 정책 및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진행중인 중요한 국제금융구조개혁 노력은 더 많은 투명성과 개발도상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지고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 구조의 중요한 구성인자로서 국가발전노력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건전한 국내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 적절한 경우 부채교환사업과 같은 부채감소를 위한 현재의 질서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들의 부채를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국내적인 국제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최빈곤국가, 저소득 개발도상국가 및 중간소득 개발도상국가들의 부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협력된 행동을 요구하면서,
- 개발도상국가들이 새천년선언문의 내용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적개발원조와 여타 자원의 실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직 공적개발원조로서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리고 최빈곤국가들에게는 0.15%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며, 개발도상국가들은 공적개발원조가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발전을 이루도록 장려를 하여야 한다.

123. 향상되고 집중된 국제적인 협력과 선진국과 국제개발기구들의 효과적인 약속이 행동계획의 이행을 높이고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와 지역의 개발은행들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들이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돕는 노력의 일부로서 노인들을 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동 사실을 고려하도록 대출과 원조관행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124. 마찬가지로 고령화를 국가적 수준을 포함하여 각자의 사업에 통합 하려는 유엔의 기금과 사업에 의한 약속도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관련 능력개발과 훈련을 특별히 증진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은 지극히 중요하다.

125. 고령화 관련 국제협력의 기타 우선순위는 적절한 경우 소득창출 사업설립과 정보전과 같은 정책과 사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험, 최선의 사례, 연구자, 연구결과 및 자료수집의 교환을 포함하여야 한다.

126. 유엔최고관리자조정위원회는 그 의제로 유엔기구내 2002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광범위한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령화세계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유엔에 설치된 연락처는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책임을 맡을 유엔내 조직적인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127. 유엔의 고령화 관련 연락처로서 경제사회국의 고령화사업(programme on ageing)이 정책개발과 이행의 지침입안, 발전의제에 고령화의 주류화 주창, 시민사회와 민간분야사이의 대화추진, 정보교환 등을 포함하여 행동계획을 촉진하고 증진할 것이다.

128. 유엔의 지역위원회들은 행동계획을 지역적 차원의 행동계획으로 전환시킬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고령화 관련 행동의 이행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기관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역적 차원의 민간단체들도 행동계획을 증진하려는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조사연구

129. 모든 국가 - 특히 개발도상국가 -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하며 특수화된 조사연구를 장려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령과 성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한 조사연구는 효과적인 정책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행동계획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행동계획에 정의된 권고와 행동의 이행을 적절하게 촉진하는

데 있다.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제공은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행동을 위한 권고를 채택하는데 불가결하다. 또한 적절한 경우 핵심적인 지표와 같은 종합적이고 실제적인평가 도구를 고안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기의 정책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30.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연구는 또한 고령화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그것은 고령화 관련 국제적인 조사연구의 조정을 증진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적인 모니터링, 검토 및 개정

131. 회원국의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성공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 필요하다. 정부들은 여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검토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사이의 정기적인 검토결과의 공유는 귀중하다.

132. 사회개발위원회는 후속조치와 2002 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의 평가를 책임진다. 위원회 인구 고령화의 다른 차원들을 현재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그의 업무에 통합시켜야 한다. 검토와 평가는 세계회의관련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위하여 불가결하며, 그를 위한 방법은 가능한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부록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6. 5.)

1.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2-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학대에방센터 업무지침상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참조.

2-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

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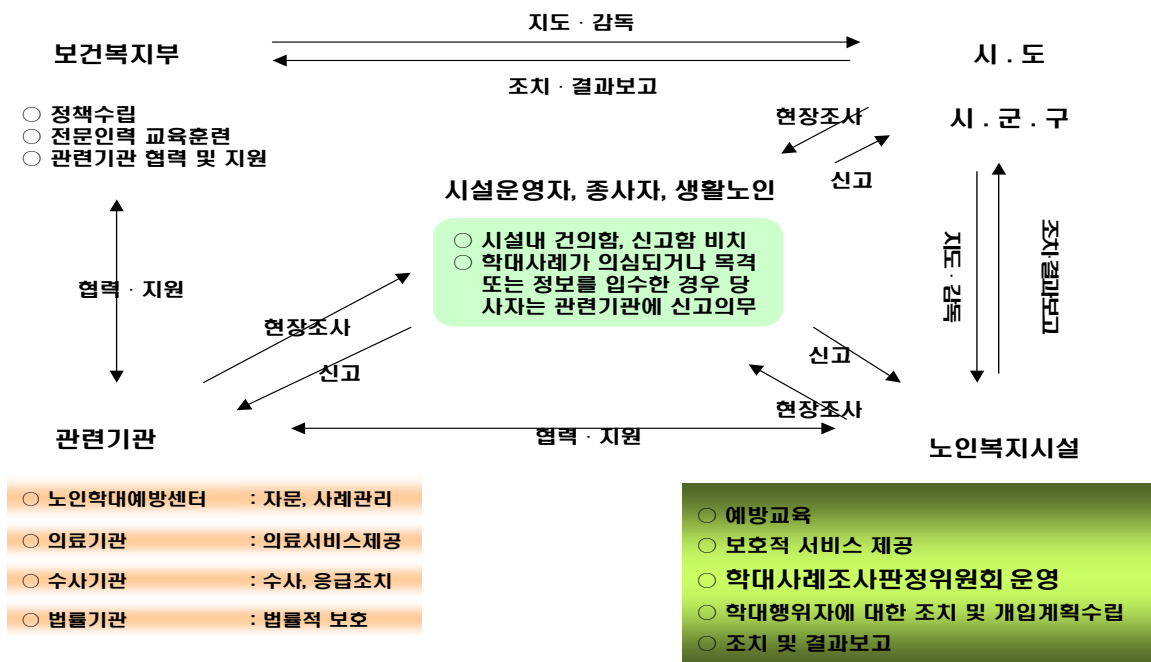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2-3.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뜯,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4.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분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해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차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설 안전관리지침

3-1.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시설 내에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행,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치매 등)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출 · 외박 절차

<p>자립외출이 가능한 어르신</p>	<p>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p>		
<p>♥ 자립으로 보행 가능 (보장구사용하여 자립 보행 가능) ♥ 인지기능상 외출에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p>	<p>♥ 안전하게 자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p>		
<p>본인 · 가족의 의사</p>	<p>본인 · 가족의 의사</p>		
<p>중사자에게 알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행선지 파악</p>	<p>중사자와의 상담 가능한 행선지, 용무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모색</p>		
<p>중사자의 명함, 신상정보 지참 확인</p>	<p>단순외출</p> <p>정기외출 프로그램 활용 / 시장보기등</p>	<p>가족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p> <p>가족상담/어르신 상담 -일정, 차량 등 조정</p>	<p>가족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p> <p>자원봉사자· 중사자연결 -일정, 차량 등 조정</p>
<p>필요시 대중교통편 안내 인근지역 차량 지원</p>	<p>① 1:1 or 다수로 이동 동행 → 완료 ② 용무 대행</p>	<p>외출준비 안내 ① 의복, 약 등 준비 ② 처치 방법 설명 ③ 유의사항 안내</p>	<p>외출준비, 봉사자 교육 ① 의복, 약 등 준비 ② 처치 방법 설명 ③ 유의사항 안내</p>
<p>인 출</p>	<p>구입전달, 업무처리 -영수증 지참</p>	<p>인 출</p>	<p>인 출</p>
<p>귀 원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p>	<p>결과확인 및 교환 -대장에 기록</p>	<p>귀 원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p>	<p>귀 원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p>

2) 실종시 처리 절차(예시)

<p>1. 어르신 이탈 발견</p> <p>→ 어르신 담당종사자에게 비상연락 → 종사자간 역할 분담(3개조) (위급시 곧바로 신고)</p>	<p>➔ ① 원내를 다시 살살이 살펴본다. - 장롱, 창고, 계단아래, 욕실, 기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p> <p>➔ ② 마당,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어르신을 찾는다.</p> <p>➔ ③ 주변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 - 어르신이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 (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p> <p>➔ ④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p>
<p>2. 신고</p>	<p>➔ ①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 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종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p> <p>➔ ② 지역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수집 - EX) 콜택시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비상시 무전을 쳐서 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p>
<p>3. 보고, 종사자 비상연락</p> <p>→ 원장에게 보고</p>	<p>➔ ① 낮에 발생시 -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의 지시 하에 대처.</p> <p>➔ ② 야간에 발생시 -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 함. -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어르신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함. - 인근 지역 거주 종사자의 협조를 구함. ※ 평상시 정확한 연락망을 구비하고, 실제 상황을 예상하여 연습이 필요함.</p>
<p>4. 보호자 연락</p>	<p>➔ ① 어르신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함. - 어르신이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함. - 집으로 도착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어르신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p> <p>➔ ② 평소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종사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 함.</p>

5. 어르신 찾기 재신고 및 확인	<p>①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4~5팀 구성.</p> <p>→ -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핌.</p> <p>- 어르신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p> <p>- 바깥으로 출동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p> <p>→</p> <p>②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함.</p> <p>→ - 콜택시에도 연락하여 무전을 요청 함.</p> <p>③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p>
-------------------------------	---

6.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신고	<p>①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p> <p>→ -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종사자가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조에 전달.</p> <p>-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p> <p>→</p> <p>②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어르신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 구함.</p> <p>→</p> <p>③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게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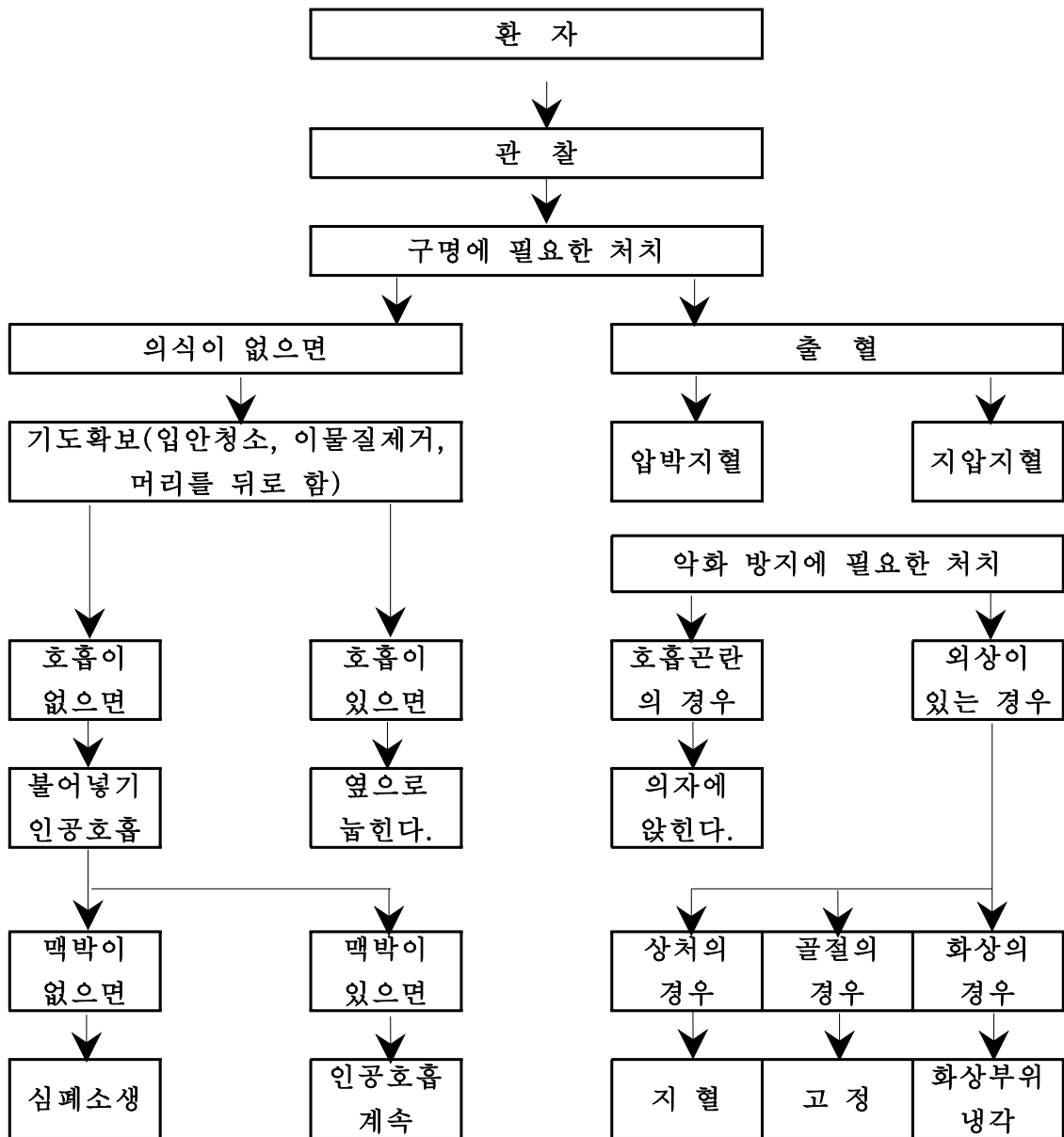
< 결 과 >

찾았을 경우	찾지 못했을 경우
<p>① 각 신고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해야 함.</p> <p>② 가족, 출동 종사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p> <p>③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p> <p>-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p> <p>-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p>	<p>①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 발송.</p> <p>②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 발송, 전단배포</p> <p>③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실종신고</p> <p>- 파출소(지구대)</p>

3-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축탁의사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가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생활노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의식 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함으로 수발 시 이를 유념하여야 하며, 넘어짐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동시에는 가급적 골절 부위를 고정 후 이동하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 순서



3-3.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 시설장은 시설 생활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장례사유 발생 시 시설의 조치
 - ① 장례사유 발생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장례절차는 생활노인의 유지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생활노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생활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종사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종사자를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생활노인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생활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유류금품 처리

- 생활노인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 위 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유류금품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 위 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생활노인 생존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사 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시설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보고 및 퇴소 처리

- 시설은 생활노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3-4.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하고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사자는 화재 발생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한 연소방지시설 설비

- 시설은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여야 한다.

2)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시설은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복도, 직통계단)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전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생활노인의 전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 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체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전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전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전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 개인위생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 용변후 반드시 씻기
 -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기
- 오염예방
 - 화장실, 쓰레기통 등 오염원의 시설개선 및 청결유지
 -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구제
 - 취사, 식사도구 등은 끓는 물에 소독 실시
- 전염경로 차단
 - 날음식, 찬음식의 생식금지
 - 물수건 등의 공동사용금지
 - 오염구역의 소독
- 조리사 등의 위생관리
 - 개인위생관리 철저
 -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 금지
 - 조리기구·시설의 청결유지
 - 음식물의 장기보관 금지
 - 위생교육 철저
- 환자발생시 대처방안
 -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응급조치 및 격리수용 조치